

## 사회적 대화 재개되어야

김 훈\*

금속중앙교섭이 잠정합의에 이르고 보건의료노조가 중노위의 중재제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올해 산별교섭도 큰 고비를 넘긴 듯하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 양대 노총의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전원사퇴 등 중앙차원의 노정관계는 노대통령 집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갈수록 경색되고 있다.

지금은 어디론가 실종되어 버린 감이 없지 않지만 출범초기 참여정부는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체제의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실현을 국정과제이자 목표로 제시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는 가운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개별사업장 단위에서는 풀기 힘든 여러 노동관련 이슈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의 설정은 나름대로 충분히 공감이가는 일이었다.

‘물류를 멈추어 세상을 바꾸자’는 슬로건으로 2003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화물연대 파업사태를 돌이켜보자. 파업당시 경영계는 지입차주들의 운송거부 행위에 대해 정부로 하여금 “불법파업과 불법집단행동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하루빨리 산업현장의 준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지입차주들을 파업으로까지 몰고 간 데는 지입제와 다단계 알선과 같은 낙후된 물류시스템, 나아가 외환위기 이후 외주화에 따른 지입제 확산에도 불구하고 물동량 증가율이 이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수급불일치 등 구조적이며 시장적인 문제가 근본 요인으로 작용했음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다. 이처럼 구조적이고 시장적인 요인으로 비롯된 갈등이 파업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준법질서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해소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화물연대 파업사태는 왜 현 단계에서 우리사회에 사회적 대화체제의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실현이 절실히 요구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그러나 그 이후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정책기조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체제를 구축하여 사회적 갈등을 통합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보다는 유감스럽게도 ‘법과 원칙의 틀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자율’을 강조하는 기존 정부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고위지도자과정 주임교수(hoonkh@kli.re.kr).

에당초 참여정부가 사회적 대화체제의 구축에 과연 얼마만큼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갖고 있었는지 돌이켜보면 의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미온적으로 임하게 된 배경으로부터 노사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적 대화는 어디까지나 노사정 행위 주체간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에 노사정위원회가 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은 있지만 중앙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가 법적으로 상설화되지 이미 오래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동 위원회의 성격을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들러리기구’로 규정하여 참여를 기피한 채 물리력에 기반한 대중동원형의 ‘대결의 정치’를 고집해 왔다.

2004년 초에는 투쟁일변도의 운동노선에 비판적인 민주노총의 신임집행부가 출범하여 ‘사회적 교섭’ 참여방침을 천명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그간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온 노사정위가 이제는 새 틀을 갖추어 사회적 대화의 구심적인 역할을 해내리라는 바람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었다. 그러나 내부조율에 1년여에 걸친 틈을 들이고서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는 반대파들의 폭력을 동원한 조직적인 방해로 올해 초에 소집된 대의원대회가 세 차례나 무산되면서 결국 뒤로 미루어지고 말았다.

사회적 대화 참여를 민주노총의 ‘개량화’로 등치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야 한다는 이념적인 도그마에 사로잡힌 일부 계파들에 의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절차가 무시되고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원천봉쇄’되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누구나가 설령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가 이루어지더라도 과연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가 가능할지 의구심을 품었음직하다. 더구나 민주노총의 현 집행부조차 ‘투쟁에서 교섭’이 아니라 ‘교섭과 투쟁의 병행’을 운동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굳이 ‘사회적 대화’라는 용어 대신 ‘사회적 교섭’이란 용어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만일 ‘힘의 행사’를 배경으로 노동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의 장을 활용하겠다는 뜻이라면 정상적인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형성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주체들간의 일정한 자제와 양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금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기조는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기보다는 노사관계 영역에서의 정부 개입을 극력 자제하는 ‘산업자치’ 내지 ‘노사자율’로 선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노사자율’을 명분으로 현재와 같은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분권화된 노사관계 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소득배분구조의 악화로 계층간 갈등의 골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시스템이 ‘조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층적인 교섭·협약구조의 정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올 하반기에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특수고용직 관련 법안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

이 쌓여 있다. 노동계를 제쳐놓고 정부가 과연 이러한 법 제·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가?

노동계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장외에서 투쟁을 통해 풀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양대 노총은 지금까지 줄곧 사회적 대화의 ‘새 틀짜기’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양대 노총이 진정 고민해야 할 일은 노사정위원회를 어떻게 개편하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이고 도구적인 문제에 한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포괄적 정상조직으로서 양대 노총은 과연 어떠한 의제를 사회적인 의제로 설정하여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기반한 ‘정책대결’을 통해 합의형성의 정치(consensus politics)를 추구해 가야할지를 두고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

# 최근 고용동향 및 2005년 하반기 고용전망

황수경·정성미\*

## I. 머리말

올해에는 우리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지만 산업 생산을 견인하던 수출 증가율이 2004년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05년 상반기에도 경기상황이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였다. 비록 민간소비가 2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수출 증가세의 둔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3.4%보다 낮은 3.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 2005. 7).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5%에서 4%로 하향조정한 가운데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부분 기관에서 3%대의 성장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 하반기에도 경제상황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상반기 고용사정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2005년 상반기 취업자증가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0.9%포인트나 낮은 1.2% 수준에 그쳤고 취업자 중에서도 일용직, 30시간 미만 취업자, 일시휴직자의 증가가 눈에 띄었다. 다만 1/4분기에 비해 2/4분기 들어 취업자 증가가 현저하였는데(1/4분기 0.6%, 2/4분기 1.7%), 이를 고용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전반적 고용불안의 와중에 단기적 수요변동폭이 커진 것에 불과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2005년 상반기 고용동향의 주된 특징들을 살펴보고 올해 경제전망을 토대로 하반기 고용상황을 전망한다. 아울러 향후 고용정책에서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 황수경=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skhwang@kli.re.kr).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연구원(smjung@kli.re.kr).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최근 고용동향 및 주요 특징

### 1. 주요 고용지표<sup>1)</sup> 추이 및 고용상황 개관

2005년에 들어서도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상반기의 고용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하였다.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3% 수준에 불과하여 전년동기 성장률 5.4%에 크게 못미치는 성적을 보였고 이에 따라 취업자증가율도 1.2%에 그쳐 전년동기대비 0.9%포인트 하락하였다. 지난 1/4분기의 경우에는 IMF 외환위기 이후 2003년 경기침체기를 제외하면 경제성장(2.7%)과 고용증가(0.6%)에서 모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그림 1). 2/4분기에 다소 호전되고 있는 듯하지만 이 기간 중 정부의 공공일자리 지원사업과 재정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사업이 병행되었음에 비추어 상반기 고용증가의 일정부분은 우리 경제의 자생적 고용창출능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효과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sup>2)</sup>

노동시장 상황이 뚜렷한 개선조짐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노동공급 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 상반기와 같은 수준인 61.8%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수요증가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실업률은 3.7%로 전년동기대비 0.1%포인트 증가하였고, 노동력 활용정도(=취업자/생산가능인구)를 보여주는 고용률도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0.1%포인트 떨어진 59.5%를 기록하였다.

- 1) 통계청은 2005년 6월부터 공식적으로 ‘지난 4주간 구직경험 여부’를 이용해 실업자를 집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주간 구직경험 여부’를 토대로 실업자를 정의하던 그간의 고용통계 수치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취업자수에는 변동이 없지만 실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이 0.1~0.2%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과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1주간 구직경험’을 이용하는 과거 방식의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 2) 1/4분기 취업자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0.6%에 불과하여 14만2천개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나 2/4분기에는 3% 수준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1.7%나 증가하여 무려 38만2천개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경제의 취업계수가 31~32(명/1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양적인 측면에서 거의 5% 가까운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고용증가가 2/4분기에 시험되었다.

〈표 1〉 2000~2005년 상반기 고용실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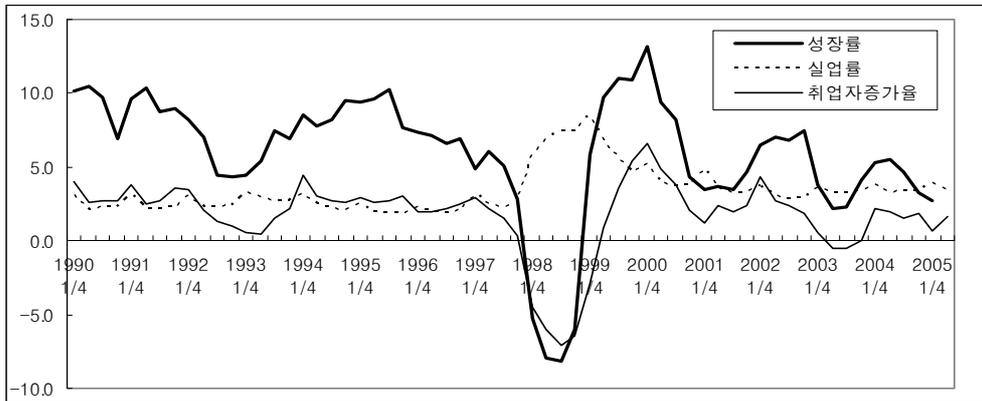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상반기	상반기	1/4	2/4
경제성장률	8.5	3.8	7.0	3.1	4.6	5.4	3.0 <sup>p</sup>	2.7	3.3 <sup>p</sup>
취업자증가율	4.3	2.0	2.8	-0.1	1.9	2.1	1.2	0.6	1.7
경제활동참가율	61.0	61.3	61.9	61.4	62.0	61.8	61.8	60.9	62.6
남 성	74.2	74.2	74.8	74.6	74.8	74.7	74.6	73.9	75.2
여 성	48.6	49.2	49.7	48.9	49.8	49.6	49.7	48.7	50.7
실업률	4.1	3.8	3.1	3.4	3.5	3.6	3.7	3.9	3.5
남 성	4.7	4.3	3.5	3.6	3.7	3.7	3.9	4.1	3.7
여 성	3.3	3.1	2.5	3.1	3.1	3.4	3.4	3.7	3.2
고용률	58.5	59.0	60.0	59.3	59.8	59.6	59.5	58.5	60.4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한국은행, 「2/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2005.7..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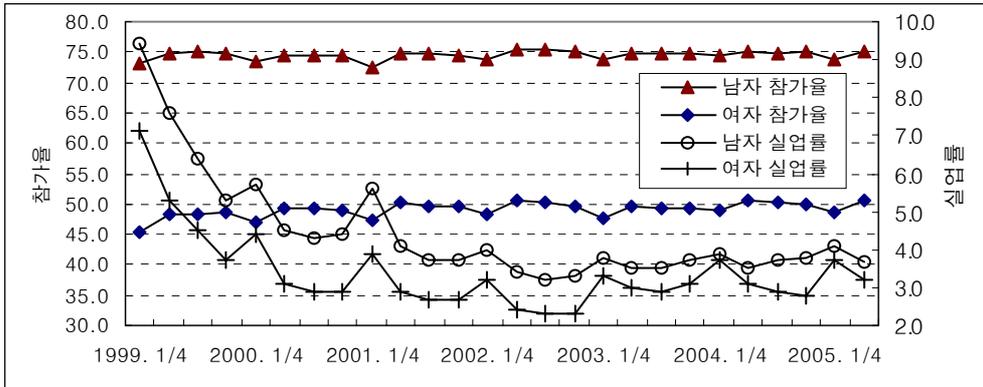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포인트 감소한 48.7%를 기록하였으나 2/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0.2%포인트 상승한 50.7%를 기록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인구수가 5월 이후 1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1/4분기 73.9%로 전년동기대비 0.4%포인트 하락하였으나 2/4분기 75.2%를 기록하여 전년과 같은 수준을 회복하였다.

금년 상반기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에 고용사정이 더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여성 실업률은 3.4%, 남성 실업률은 3.9%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여성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남성은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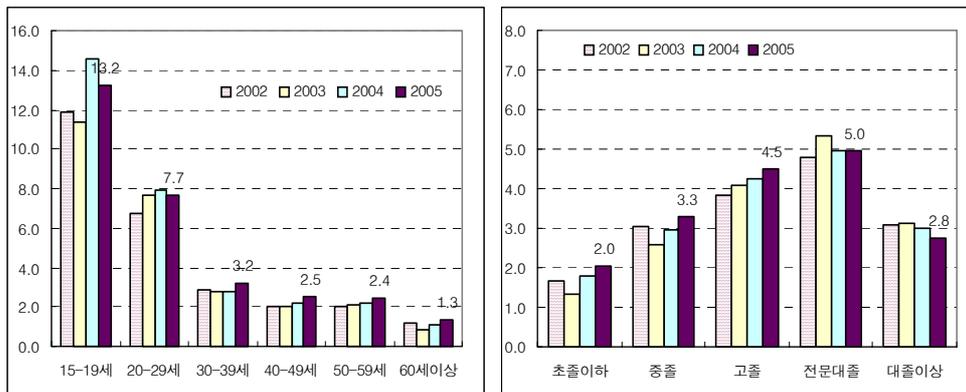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지난해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었던 청년층의 경우는 올해 상반기 중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15~19세 -1.4%포인트, 20~29세 -0.2%포인트). 그러나 30세 이상의 중장년층과 고령층에서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여 가계를 책임져야 할 연령계층에서 고용위기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3 좌). 한편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실업률은 감소한 반면,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실업률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고학력자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저학력자의 고용기회가 점점 더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3 우).

[그림 3] 연령별 및 학력별 실업률 추이

(단위: %)



주: 각년도 상반기(1~6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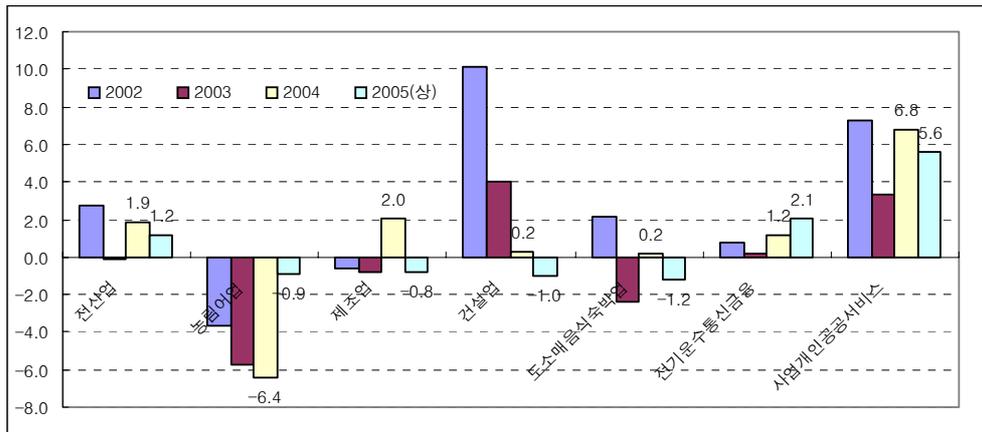
## 2. 산업별 생산과 고용창출 - 생산과 고용의 괴리

최근 성장과 고용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산업별 불균등 성장 및 이로 인한 고용창출능력의 변동일 것이다. 더욱이 고용창출이 어느 산업에 의해 주도되느냐에 따라 고용의 질도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산업별 생산과 고용의 관계를 분석하면 일자리창출의 논점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2005년 상반기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업과 전기·운수 및 통신·금융업을 제외하고 전산업에 걸쳐 고용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용비중이 큰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에서의 고용감소로 서민층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그림 4). 세부 업종별로는 통신업(10.8%)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10.6%)에서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고,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8.7%)과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8.3%)이 그 뒤를 잇고 있다(부표 1). 반면에 취업자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2.6%)이며, 도소매업(-1.8%), 가사서비스업(-1.5%), 금융 및 보험업(-1.3%) 등에서도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였다.

[그림 4] 산업별 취업자증감률

(단위 : %)



주 : 2005년 상반기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그림 5]는 지난 1/4분기까지의 업종별 GDP증가율과 업종별 취업자수 증가율을 통해 주요 업종에서의 생산과 고용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의 약 5분의 1을 고용하고 있고 생산비중이 34%에 달하는 거대

부문인데, 2004년을 제외하면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고용 없는 성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 경쟁,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 등으로 인해 노동절약적 프로세스가 요구되고 이것이 제조업 성장의 고용효과를 급격하게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고용규모(26.2%)로는 제조업 다음으로 비중이 큰 부문이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로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업종에 해당한다. 2003년 내수부진으로 인한 자영업 위축과정에서 가장 피해가 커 생산과 고용에서 급격한 감소를 겪었는데 최근 생산에서는 감소세가 멈췄으나 고용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대형화·전문화하면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도소매업은 영세자영자를 중심으로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그림 하단부의 4개 업종은 2004년 이후 우리 경제에서 고용창출을 주도해온 대표적인 업종들에 해당한다. 우선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여행수요 및 이동통신 수요의 증가로 성장세가 꾸준하게 지속되고 2003년 경기침체기를 제외하면 고용에서도 4~5%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4년 이후 통신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운수창고업에서의 고용증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고용증가가 생산증가를 웃돌게 되었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12.9%)이 제조업 다음으로 높아 고용규모(8.8%)에 비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업 및 정보처리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업종과 부동산업, 인력공급사업과 같은 저부가가치 업종을 함께 포괄하고 있다. 고용이 경기와 순행하는 모습이 뚜렷하지만 업종의 생산은 고용증가 추이와는 반대 경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호경기에 저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부문에서 고용은 경기변동에 의해 기복이 크기는 하지만 증가율이 두 자리수를 기록하는 등 당분간 확대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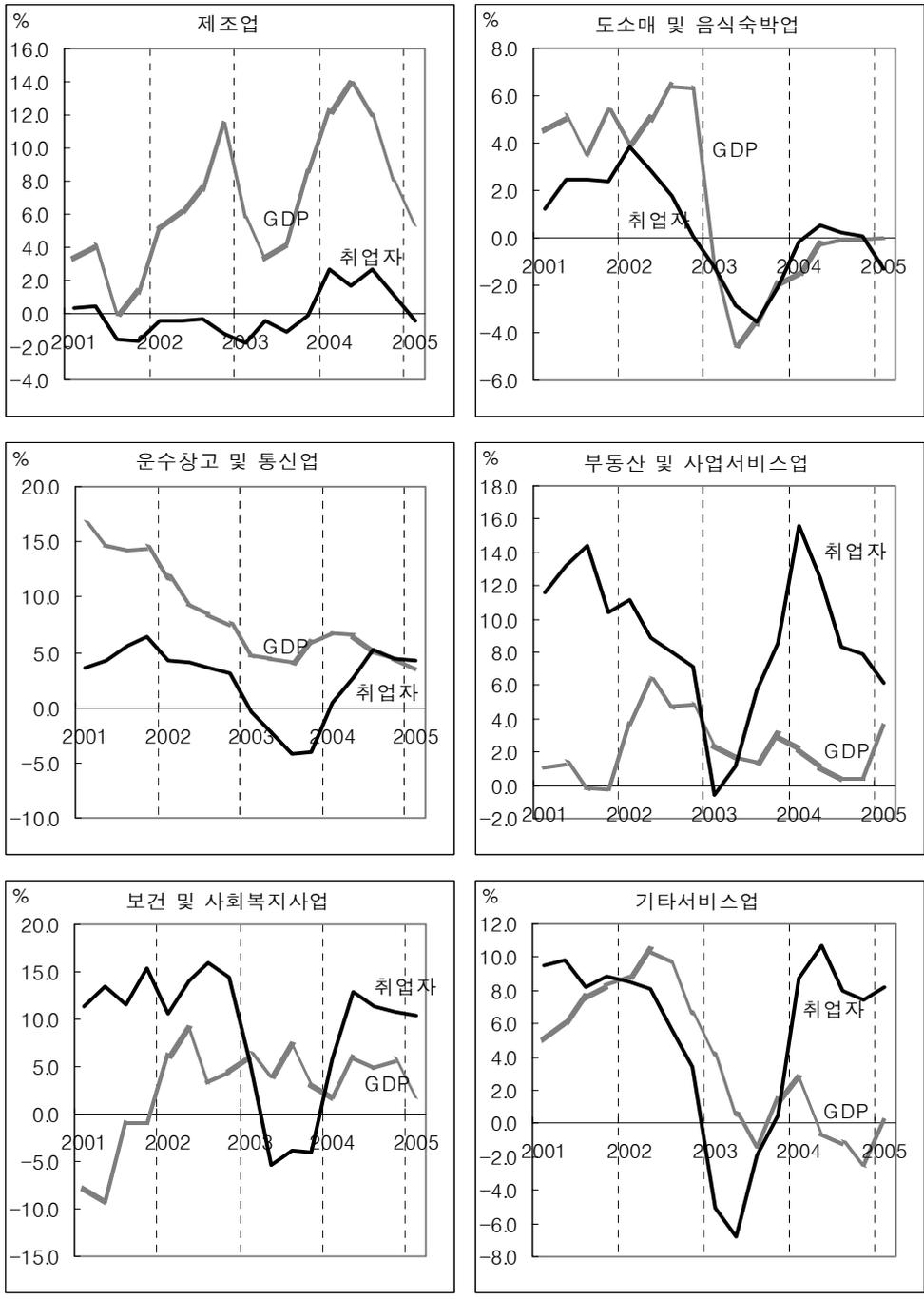
〈표 2〉 대분류 업종별 생산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2005. 1/4)

(단위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고용	6.9	0.1	19.1	0.3	7.6	26.2	6.3	3.3	8.8	3.4	6.7	2.8	8.4
생산	1.5	0.3	33.6	3.5	6.3	9.7	8.6	7.2	12.9	5.6	5.0	2.3	3.5

주 : 생산 구성비는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고, 고용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그림 5] 주요 6개 업종에서의 생산 및 고용변동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 한국은행, 「2005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2005. 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현재 생산에서 2.3%, 고용에서 2.8%의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생산에서 꾸준하게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며 고용에서는 2003년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여온 업종이다. 사회안전망 확충 및 고령화 추세에 따른 보건·의료·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향후에도 고용창출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서비스업<sup>3)</sup>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주로 개인관련 서비스업을 망라하고 있으며 생산과 고용 모두 대체로 경기에 순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이나 고용비중은 8.4%를 차지하여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2004년 중반 이후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최근 이 부문에서 취약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고용성장 업종에서 나타난 특징을 종합하면, 운수창고 및 통신업을 제외하면 생산에서의 증가가 고용증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도 최근 생산과 고용의 관계가 역전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들 부문에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저부가가치 부문으로 집중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장부문의 고용창출 위축, 저생산업종 위주의 고용창출 등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막고 고용증가가 경제성장 동력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다.

### 3. 일용직, 단시간 취업자, 일시휴직자 등 취약고용 증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고용증가는 저부가가치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고부가가치 부문이라 하더라도 취약고용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5년 상반기 중 고용형태별 취업동향을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의 축소가 3년째 계속되고 있고 임금근로자, 특히 상용근로자에 의한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진다(표 3). 여성 노동력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 중 자영자는 2003년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고용주는 지난해까지의 증가세를 뒤집고 2005년 들어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영세자영업자의 퇴출에 이어 영세기업의 퇴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3) 기타서비스업은 산업분류상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87-88),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90-93), S 가사서비스업(95) 등을 포괄한다.

〈표 3〉 종사상지위별 고용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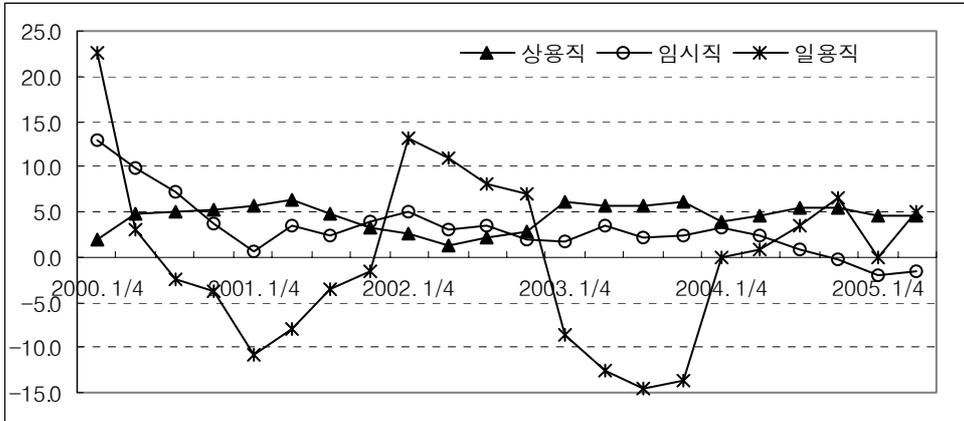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기대비)

	2001	2002	2003	2004	2005(상)		
						1/4	2/4
비임금근로자	1.5	0.9	-3.1	-0.9	-0.6	-1.3	0.1
고용주	6.6	4.0	0.8	3.1	-2.0	-2.6	-1.4
자영자	2.0	1.7	-3.5	0.4	1.9	1.5	2.2
무급가족	-3.5	-3.5	-5.8	-8.3	-5.9	-8.1	-3.9
임금근로자	2.2	3.8	1.6	3.4	2.1	1.7	2.5
상용직	5.0	2.2	5.9	4.9	4.6	4.6	4.6
임시직	2.6	3.4	2.4	1.6	-1.8	-2.0	-1.7
일용직	-5.9	9.7	-12.5	2.7	2.5	-0.1	4.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그림 6〉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증감률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임금근로자 가운데서는 상용근로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5년 상반기 들어 임시직 고용이 지난해까지의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최근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시직 채용을 억제하고 상용직을 채용하는 기업이 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시근로자를 많이 수요하는 영세 기업들이 퇴출하면서 임시직 고용도 함께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2004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2005년 2/4분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SOC 투자와 부동산 경기에 힘입어 4.9%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다(그림 6). 일용직은 고용안정성의 측면에서 임시직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조건과 노동이동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취업자의 취업시간별로 고용증감률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2005년 상반기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6.4%, 18~26시간 취업자는 11.2%가 증가하여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 순수 단시간 근로의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5일제가 확산됨에 따라 2004년에는 45~53시간 취업자가 감소하고 36~44시간 취업자가 증가하였는데 2005년 상반기 중에는 36~44시간 취업자도 근소하게 감소하였다. 한편 올해 2/4분기에는 일용근로자의 증가와 맞물려 53시간 이상 장시간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시휴직자도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12.7%나 증가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계층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취업시간별 고용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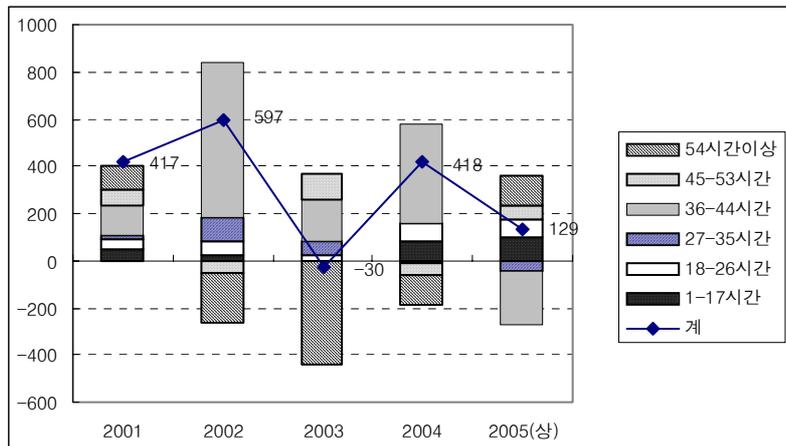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기대비)

	2001	2002	2003	2004	2005(상)	2005(상)	
						1/4	2/4
전 체	2.0	2.8	-0.1	1.9	1.2	0.6	1.7
1~17시간	7.6	3.2	0.2	13.0	16.4	26.3	4.7
18~26시간	6.3	8.3	2.2	9.0	11.2	13.7	8.1
27~35시간	2.1	12.7	7.8	-0.7	-6.4	9.2	-18.4
36~44시간	3.3	16.2	3.7	8.4	-0.5	5.4	-5.4
45~53시간	1.1	-0.9	1.8	-0.9	0.0	-4.5	4.6
54시간 이상	1.1	-2.3	-5.0	-1.5	1.0	-3.9	5.9
일시 휴직자	8.8	6.8	17.6	9.9	12.7	17.5	4.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그림 7〉 취업시간별 취업자의 일자리 변동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 Ⅲ. 2005년 하반기 고용전망

#### 1. 경제전망

내수 침체와 수출 호조의 불균형 속에서 2005년 상반기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하강 국면에 있었지만 최근 2/4분기부터 민간소비와 건설·설비투자가 증가하는 등 2년간 침체되어있던 내수부문이 다소 회복됨에 따라 경기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2005년 하반기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부문의 회복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회복세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고유가를 비롯한 세계경제 불안요인과 위엔화 절상에 따른 원화절상 효과로 인해 경기회복 속도가 다소 늦춰지고 상승세는 둔화될 것이 예상된다. 연초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반기(3.0%)보다는 높은 4% 중반대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연간으로

〈표 5〉 주요 기관의 2005년 경제 전망

(단위: %)

		경제 성장률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	수입	소비자 물가	실업률
한국은행 (2005. 7)	1/4	2.7	1.4	3.1	-2.9	12.7	14.4	3.2	3.9
	2/4	3.2	2.5	2.4	0.0	9.4	15.1	3.0	3.5
	3/4	4.0	3.2	5.6	1.9	11.0	17.9	2.6	3.5
	4/4	4.8	3.8	7.2	3.5	10.0	14.3	3.0	3.4
	상반기	3.0	1.9	2.8	-1.2	11.0	14.7	3.1	3.7
	하반기	4.5	3.5	6.4	2.8	10.4	16.0	2.8	3.4
	연간	3.8	2.7	4.6	1.0	10.7	15.4	3.0	3.6
KDI (2005. 7)	1/4	2.7	1.4	3.1	-2.9	12.9	13.8	3.2	3.9
	2/4	3.4	2.8	5.2	0.2	9.3	14.9	3.0	3.4
	3/4	4.3	3.6	8.1	1.5	12.2	19.8	2.5	3.5
	4/4	4.6	4.3	9.0	4.6	8.9	16.9	3.5	3.5
	연간	3.8	3.0	6.3	1.2	10.7	16.4	3.0	3.6
산업연구원 (2005. 6)	상반기	3.3	1.9	5.1	-0.2	11.2	15.3	-	-
	하반기	4.6	3.9	9.5	3.0	10.0	14.1	-	-
	연간	4.0	2.9	7.3	1.6	10.6	14.7	-	-
한국경제 연구원 (2005. 6)	상반기	3.2	2.3	3.4	-1.4	10.6	13.6	3.2	3.7
	하반기	5.0	4.7	6.7	3.2	5.8	11.1	3.2	3.5
	연간	4.1	3.5	5.0	1.1	8.1	12.3	3.2	3.6
삼성경제 연구소 (2005. 5)	상반기	3.2	1.3	5.8	-2.4	10.5	15.3	3.2	3.7
	하반기	4.2	4.0	8.0	3.6	8.2	14.7	3.1	3.5
	연간	3.7	2.6	6.9	0.5	9.3	15.0	3.2	3.6

주: 수출 및 수입은 통관 기준.

자료: 개별 기관.

는 3% 후반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고용전망 및 과제

2005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고용사정도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참가율 증가에 힘입어 62.4%까지 상승하여 전년동기대비 0.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1.6%, 369천명)는 지난해 수준에 다소 못미쳐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0.2%포인트 증가한 3.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률은 0.2%포인트 상승한 60.2%로 전망되고 있다.

2005년 연간으로는 경제활동참가율 62.1%, 실업률 3.7%, 고용률 59.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 전망이 하향조정된 것을 반영하여 연초 전망치(경제활동참가율 62.2%, 실업률 3.6%, 고용률 60.0%)보다는 참가율과 고용률은 하향조정, 실업률은 근소하게 상향조정된 수치이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40만개 일자리 창출은 어려우며 약 31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5년에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여성고용 확대에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부표 2).

참고로 본원의 고용전망은 실물경제에 대한 경제전망을 기초로 노동공급(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수요(취업자수)를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실업률을 비롯한 노동시장 주요 지표들을 도출하고 있다. 성별로 분리하여 공급과 수요를 전망하였다는 것이 예년과 다른 점이다. 모형추정에 사용된 실적치 자료는 1988년 1/4분기부터 2005년 1/4분기까지의 분기자료이고 전망에는 노동의 공급 및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 건설투자 증가율,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전망치가 고려되었다(부표 3).

〈표 6〉 2005년 주요 고용지표 전망

(단위 : 천명, %)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연간	1/4	2/4	3/4p	4/4p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경제성장률	5.4	3.9	4.6	2.7	3.2	4.0	5.0	3.0	4.5	3.8
경제활동인구	23,256	23,484	23,370	23,159	23,957	23,855	23,992	23,558	23,923	23,741
참가율	61.8	62.1	62.0	60.9	62.6	62.3	62.6	61.8	62.4	62.1
취업자	22,424	22,690	22,557	22,247	23,126	23,014	23,103	22,686	23,058	22,872
(증가율)	(2.1)	(1.7)	(1.9)	(0.6)	(1.7)	(1.6)	(1.6)	(1.2)	(1.6)	(1.4)
(증감수)	(456)	(380)	(418)	(142)	(382)	(367)	(370)	(262)	(369)	(315)
실업률	3.6	3.4	3.5	3.9	3.5	3.5	3.7	3.7	3.6	3.7
고용률	59.6	60.0	59.8	58.5	60.4	60.1	60.2	59.5	60.2	59.8

주 : p는 전망치임.

최근 들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잠재력이 급속히 소진되면서 정부의 고용창출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성장잠재력의 축소,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효과 축소가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창출 지원정책이 일정 정도 양적인 의미에서의 고용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의 질 및 고용안정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의 고용드라이브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민간부문의 성장동력을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수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것 외에도 성장동력이 소진되지 않은 제조업과 잠재적 수요가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생산업종 위주의 고용창출, 취약고용의 증가 등 고용상황을 위협하는 징후들이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정책에서도 성장동력의 복원이나 고용창출구조의 재편과 같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HLI**

〈부표 1〉 산업별 취업동향

(단위 : %, 천명)

	2001	2002	2003	2004	2005(상)		
						1/4	2/4
전 산업	2.0 (417)	2.8 (597)	-0.1 (-30)	1.9 (418)	1.2 (262)	0.6 (142)	1.7 (382)
농림어업	-4.2 (-95)	-3.7 (-79)	-5.8 (-119)	-6.4 (-125)	-0.9 (-17)	-5.2 (-84)	2.6 (50)
광업	7.0 (1)	-0.9 (0)	-4.2 (-1)	-6.5 (-1)	8.2 (1)	-5.3 (-1)	24.8 (4)
제조업	-0.6 (-27)	-0.6 (-26)	-0.9 (-36)	2.0 (85)	-0.8 (-35)	-0.4 (-18)	-1.2 (-5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9.1 (-6)	-10.1 (-6)	44.9 (24)	-4.8 (-4)	-2.6 (-2)	-4.6 (-3)	-0.6 (0)
건설업	0.3 (5)	10.2 (161)	4.0 (69)	0.2 (4)	-1.0 (-18)	-3.9 (-70)	1.8 (33)
도매 및 소매업	2.6 (98)	1.5 (60)	-3.0 (-120)	-1.7 (-66)	-1.8 (-69)	-1.9 (-74)	-1.7 (-63)
숙박 및 음식점업	1.2 (24)	3.3 (64)	-1.3 (-25)	3.8 (76)	-0.2 (-5)	-0.2 (-3)	-0.3 (-6)
운수업	4.3 (46)	2.3 (26)	-4.9 (-55)	4.0 (43)	2.7 (31)	3.4 (37)	2.2 (24)
통신업	8.5 (16)	11.1 (23)	7.6 (18)	-0.2 (-1)	10.8 (26)	8.1 (20)	13.4 (32)
금융 및 보험업	1.1 (8)	-3.4 (-26)	2.3 (17)	-1.7 (-13)	-1.3 (-9)	-1.8 (-14)	-0.7 (-5)
부동산 및 임대업	8.3 (29)	8.5 (32)	2.6 (11)	7.0 (30)	6.0 (27)	4.3 (19)	7.7 (35)
사업서비스업	13.7 (139)	8.9 (102)	4.2 (53)	12.1 (158)	5.7 (81)	6.7 (94)	4.7 (6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5 (-57)	0.1 (1)	7.8 (55)	1.5 (11)	2.7 (21)	0.6 (5)	4.8 (37)
교육서비스업	3.8 (45)	8.0 (99)	11.2 (149)	1.5 (23)	2.3 (35)	2.4 (35)	2.2 (3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3.0 (56)	13.8 (67)	-2.1 (-12)	10.2 (55)	10.6 (62)	10.4 (59)	10.9 (64)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7.7 (28)	6.4 (25)	1.6 (7)	7.8 (33)	8.3 (38)	7.0 (32)	9.5 (44)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0.0 (89)	6.5 (64)	-4.2 (-44)	17.5 (174)	8.7 (99)	11.6 (127)	6.0 (70)
가사서비스업	10.5 (20)	4.5 (9)	-10.7 (-23)	-35.1 (-67)	-1.5 (-2)	-12.4 (-18)	11.8 (14)
국제 및 외국기관	-16.4 (-3)	17.0 (3)	22.4 (4)	8.6 (2)	-1.3 (0)	-4.3 (-1)	1.6 (0)

주: ( )안은 취업자 증감인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부표 2〉 2005년 성별 고용전망

(단위 : 천명, %)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연간	1/4	2/4	3/4p	4/4p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남 자]										
경제활동인구	13,651	13,754	13,702	13,646	13,986	13,880	13,979	13,816	13,929	13,873
참가율	74.7	74.9	74.8	73.9	75.2	74.6	75.0	74.6	74.8	74.7
취업자	13,147	13,240	13,193	13,081	13,475	13,395	13,473	13,278	13,434	13,356
(증가율)	(1.5)	(1.0)	(1.2)	(0.4)	(1.6)	(1.4)	(1.5)	(1.0)	(1.5)	(1.2)
(증감수)	(190)	(136)	(163)	(51)	(211)	(191)	(196)	(131)	(194)	(163)
실업률	3.7	3.7	3.7	4.1	3.7	3.5	3.6	3.9	3.6	3.7
고용률	72.0	72.1	72.0	70.9	72.4	72.0	72.3	71.6	72.1	71.9
[여 자]										
경제활동인구	9,605	9,731	9,668	9,513	9,971	9,975	10,013	9,742	9,994	9,868
참가율	49.6	50.0	49.8	48.7	50.7	50.7	50.8	49.7	50.7	50.2
취업자	9,278	9,450	9,364	9,165	9,651	9,619	9,630	9,408	9,625	9,517
(증가율)	(3.0)	(2.7)	(2.8)	(1.0)	(1.8)	(1.9)	(1.8)	(1.4)	(1.9)	(1.6)
(증감수)	(267)	(245)	(256)	(91)	(170)	(176)	(174)	(131)	(175)	(153)
실업률	3.4	2.9	3.1	3.7	3.2	3.6	3.8	3.4	3.7	3.6
고용률	47.9	48.6	48.3	46.9	49.1	48.9	48.8	48.0	48.9	48.4

주 : p는 전망치임.

〈부표 3〉 고용전망 모형 추정결과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취업자수 (로그값)	여성 취업자수 (로그값)
상수항	24.578( 5.440)***	18.487( 4.760)***	상수항	2.706( 4.850)***	2.484(5.290)***
전년 동분기값	0.674(11.340)***	0.587( 7.180)***	전년 동분기값	0.550( 5.500)***	0.521(6.050)***
경제성장률	0.083( 3.320)***	0.137( 5.550)***	로그 실질GDP	0.331(10.070)***	0.491(8.830)***
건설투자증가율	-0.013(-1.670)	-	로그 실질GDP의 전년 동분기값	-0.200(-3.550)***	-0.334(-4.760)***
수출증가율	0.014( 2.220)**	-0.014(-2.240)**	IMF 가변수	-0.030(-5.830)***	-0.024(-4.130)***
수입증가율	-0.017(-2.610)**	-	IMF 이후 가변수	-0.011(-1.710)*	-
시간항	-	0.187( 4.100)***	1/4분기 가변수	-0.004(-1.430)	-0.022(-3.370)***
IMF 가변수	-0.903(-4.440)***	-1.383(-4.100)***	4/4분기 가변수	-0.014(-2.840)***	-0.021(-3.410)***
IMF 이후 가변수	-0.422(-3.090)***	-0.784(-2.060)**			
1/4분기 가변수	-0.479(-3.130)***	-1.128(-3.680)***			
adj. R <sup>2</sup>	0.908	0.902	adj. R <sup>2</sup>	0.988	0.978

주 : 1) ( )안의 수치는 t값.

2) \*\*\*,\*\*,\*는 각각 유의수준 1%, 5%,10%.

3) 분석자료는 1980년 1/4분기부터 2005년 1/4분기 실적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김 인 재\*

## I. 머리말

산업화 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한 출산을 저하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산업구조의 변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비정규근로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에 대하여 공적제도에 의한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은 불완전하다. 또 1961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짧은 근속기간과 실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대비책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영세사업장의 취약근로자에게는 그나마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사외적립의 미비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실업과 체불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sup>1)</sup>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퇴직금제도의 적용확대와 수급권 보장을 요구하여 왔던 것이다.

한편, 퇴직금제도가 근로자 퇴직시 기업의 일시금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경영계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도입과정에서 퇴직금의 임의제도화 등을 요구하였다.<sup>2)</sup> 또 OECD와 World Bank 등도 우리나라에 대하여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과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권고하여 왔다.<sup>3)</sup>

\* 상지대학교 법학부 교수(ijkim@sangji.ac.kr).

- 1) 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내용」, 2005. 4. 1쪽에 의하면, 2003년 8월 현재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5.8년이며, 전체 근로자의 48%만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고, 2003년도의 체불임금 5,200억원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체불이 전체 체불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 2) 1986년 국민연금 도입시 「퇴직전환금」을 두어 퇴직금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축소하였으나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시 「퇴직전환금」이 폐지되었다. 또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시에도 노동부장관에게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노사개혁위원회 및 노사정위원회 등에서의 퇴직금제도 개선과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를 거쳐<sup>4)</sup> 2005년 1월 2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었다(법률 7379호). 동 법은 2005년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준비되고 있다.

정부는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기업 도산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고 노후소득 보장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각 사업장마다 여건이 다르고 근로자들의 선호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금제도를 존치시키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사가 원하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5)</sup>고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정의 기본배경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중심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II.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내용

### 1. 퇴직급여제도의 적용관계

#### 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를 동법으로 분리·이관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와 함께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로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6호).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s: DB)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s: DC) 퇴

3) World Bank,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Pension System a Crossroads*, Report No.20404-KO, May 10, 2000 참조.

4) 근로자퇴직연금제도 도입의 논의경과 및 쟁점에 대해서는 김인재, 「근로자퇴직연금(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방안」, 『노동법연구』 제14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편, 2003, 29~76쪽; 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실행방안』, 국제노동법연구원, 2002. 12; 노동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0. 12; 노동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1. 12; 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세부 실행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4. 6 등 참조.

5) 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내용」, 2005. 4, 1쪽 참조.

직연금제도의 2종류가 예정되어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서(법 제2조 제7호),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서(법 제2조제8호), 근로자의 급여액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를 말한다.<sup>6)</sup>

####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범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사용인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법 제3조). 따라서 그 동안 근기법상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에도 동 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sup>7)</sup> 다만,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주의 부담능력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적용시기는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부담률 또는 근로자의 급여액도 각 퇴직급여 수준의 50/100 이상 100/100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하였다(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

#### 다.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본문). 사용자가 어떠한 퇴직급여제도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본다(법 제5조). 또 퇴직연금이 폐지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도 동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법 제27조).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법 제4조 제1항 단서). 또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을 동법 제25조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키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개인퇴직계좌(IRA)’제도를 도입하였다(동법 제25조).

7) 2003년 8월 기준으로 신규 적용대상자는 약 96만명으로 추정된다(2003년 8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 참조).

다(법 제26조 제1항).<sup>8)</sup>

#### 라.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변경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DB↔DC↔퇴직금↔DB)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4조 제3항).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장)의 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sup>9)</sup> 어떤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것인가는 각 제도의 본질적 차이로 인하여 노사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또한 근로자에게 있어서 유·불리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선택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 변경시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4조 제4항).

## 2. 퇴직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 등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옮겨 왔다. 따라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그 외에 중간정산, 지급기한, 시효 및 우선변제 등도 종래의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동일하다(법 제8조 내지 제11조).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실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에 의한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신탁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2011년부터 폐지하기로 하였다(법 부칙 제2조).<sup>10)</sup>

8)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노무관리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취업규칙 작성의무도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노사가 원할 경우에는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 사용자가 재직근로자를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키는 것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근로자 개인계좌에 적립시켜 주는 것과 유사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매일 염려가 없어지게 되어 1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노동부, 앞의 자료 참조).

9)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근로자대표’(=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개념과 다름에 유의하여야 한다.

10) 종래의 퇴직보험등은 사외적립 수준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완·발전시킨 형태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한다(노동부, 앞의 자료 참조).

### 3. 퇴직연금제도

#### 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퇴직연금규약의 작성·신고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규약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2조 및 제13조).<sup>11)</sup>

퇴직연금규약의 작성은 개별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제도의 안정과 수급권의 확보를 위하여 법령이 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 또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규약의 내용을 정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핵심사항(부담금, 급여, 수급자격, 적립기준, 자산의 관리운용, 제도종료시의 처리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 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구조와 규약의 기재사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는 급여지급에 대비하여 법정수준 이상의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보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금융기관의 운용상품을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사용자는 운용상품을 선택(운용지시)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자산관리기관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게 한다.

사용자는 임금인상률, 퇴직률, 자금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기초가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과 연금수급자에 대한 최종지급 책임 등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퇴직연금 수급자 관리능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적합하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12조).

①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있어서 퇴직연금사업자

11) 일본의 기업연금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기업연금규약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노사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자산관리업무와 운용관리업무를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② 가입자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제도에의 가입자격, 가입시기, 가입방법 및 자격상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 가입자(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수리상 법정퇴직금제도의 급여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산정된 ‘책임준비금액’<sup>12)</sup>과 ‘최저적립기준액’<sup>13)</sup>의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이 적립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급여지급의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도산 등 사실상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사외에 적립해야 할 기준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⑥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 : 급여의 종류는 ‘퇴직급여’의 하나만을 예정하고 있으며,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은 퇴직하는 근로자(가입자)가 55세 이상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할 수 있으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수급을 원하는 퇴직하는 근로자(가입자)에게 지급한다.

⑦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⑧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2) 책임준비금액 :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시행령안에서는 60%) (동 법 제12조 제5호 가목).

13) 최저적립기준액 :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시행령안에서는 60%) (동 법 제5조 제5호 나목).

- ⑩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 폐지·중단 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⑪ 그 밖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구조와 규약의 기재사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사용자가 일정한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지시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운용방법에 투자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등에게 적합할 것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13조).

①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의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수리상 법정퇴직금제도의 부담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에 추가하여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sup>14)</sup>, 사용자는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매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sup>15)</sup>

④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상이한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또 운용방법별 이익·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어야 한다.

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에 관한 사항의 준용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운용관리업무·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14) 일본의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15) 미국과 일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3월에 1회 이상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해지, 운용현황의 통지, 급여의 지급사유 및 지급절차, 퇴직연금의 폐지·중단 등  
 ⑦ 그 밖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라.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 운영업무의 위탁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sup>16)</sup> 및 자산관리업무<sup>17)</sup>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자를 ‘퇴직연금사업자’라고 한다(법 제2조 제12호 및 제14조). 퇴직연금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으로서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1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을 명할 수 있다(법 제18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일부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법 제15조). 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자산관리계약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법 제16조).

#### 마.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의 운용방법 제시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이 요구하는 방법<sup>18)</sup>으로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법 제17조).

16) 운용관리업무 :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법 제15조 제1항 각호).

17) 자산관리업무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수행, 급여의 지급 등(법 제16조 제1항 각호).

18)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방법 :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운 것,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운 것,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한 것,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1개 이상 포함될 것,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의 운용방법과 기준 등에 따른 것(법 제17조 제2항 각호).

#### 4. 개인퇴직계좌(통산장치)

근로자들의 잦은 직장이동, 퇴직금의 중간정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계약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일시금 등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개인퇴직계좌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의 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만,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퇴직급여 일시금 등이 부담금으로 적립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법 제25조).

#### 5. 퇴직연금제도 운영관계자의 책무와 감독

퇴직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소득 또는 노후소득의 확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 운영관계자인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행정관청에 의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가. 사용자의 책무 및 감독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관한 교육(이른바 ‘투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sup>19)</sup>,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퇴직연금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9조).

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발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법 제22조). 또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실시상황 등에 관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29조).

19)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의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나.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및 감독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1항). 또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법령준수 및 계약준수의무, 충실의무를 다해야 하며,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행위<sup>20)</sup>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취급실적을 사용자, 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매년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법 제20조).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법령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 시정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계약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도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책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23조).

#### 다. 정부의 책무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세제지원방안의 강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 정부는 퇴직연금의 지급보장장치 마련 등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국의 연금급여보증공사(PBGC)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법 제21조).

## 6. 기 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노동부에 노·사·정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는 「퇴직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법 제6조).

20)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자·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행위 : 운용관리업무계약 또는 자산관리업무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및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법 제20조 제2항). 운용관리업무를 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 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을 부담하거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목적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및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법 제20조 제3항).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지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안에서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법 제7조).

### Ⅲ.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쟁점

####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목적

##### 가. 노후소득보장의 지원체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도입 목적을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현행 퇴직금제도의 급여수준을 유지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보장제도를 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동 법은 사용자에게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법 제4조 제1항)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도입목적 또는 ‘일정 연령에 달한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외국의 입법례와는 차이가 있다. 또 일시금의 수급요건에 대한 제한이 없다. 퇴직금이 중도퇴직자의 생활비 및 실업급여로서 기능하였던 우리 현실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지원체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퇴직’뿐만 아니라 ‘일정 연령(예를 들어 55세 등)’의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시 수령하는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법 제25조)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퇴직시 일시금을 수령하여 소진하는 것보다는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여 일정 연령에 달한 때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나. 적용범위의 실질적 확대 :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비록 적용의 시기는 유예하고 있으나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늦어도 2011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최소한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의무화하지 않음으로써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계속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에 두고 있다. 현행 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금 지급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을 계속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오히려 조장할 우려가 있다.

비록 외국에서는 퇴직연금제도가 장기근속 종업원에 대한 보상제도로 도입됨으로써 수급권 부여를 위한 가입기간이 3~5년인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sup>21)</sup>

##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지급보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이 전부 사외에 적립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업의 도산시 지급보장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충분하게 적립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소정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전적인 방법으로 책임준비금액과 최저적립기준액의 검증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1조 제5호 참조),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탁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또 사후적인 방법으로 사용자가 적립부족으로 인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먼저 퇴직금제도에 의해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래도 퇴직금의 체불이 발생할 때에는 퇴직금채권 최우선변제 규정이 적용되며(법 제27조 및 제11조), 사용자에게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일정 한도 내에서 대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부칙 제6조 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2항).

그러나 적립수준 및 수탁자 책임에 의한 사전적 조치와 퇴직금제도 및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한 사후적인 조치만으로는 기업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도산시 수급권 확보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성숙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식의 연금지급보증공사(PBGC)<sup>22)</sup> 또는 지불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21)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은 기대하기 힘들고, 대부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의 가입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담금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들에게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적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법 제13조 제2호 가목 개정).

###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운용의 안정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를 수익자(신탁) 또는 피보험자(보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며, 직장을 옮겨도 적립금을 계속하여 투자·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산(portability)이 가능하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별로 운용방법의 선정에 따라서 추후 급여수준이 달라질 수 있게 되며, 특히 위험자산에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위험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자본시장이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노동계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도입을 극구 반대하여 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의 특징과 관련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퇴직연금사업자에 정보제공 및 교육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자본(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선진적인 금융상품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자금운용 전문가를 양성하고, 근로자에 대한 투자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4. 기 타

#### 가.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근무한 기간 : 퇴직금의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퇴직연금제도 실시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연금 시행 이전의 기간을 합산하는 방안과 근로자 퇴직시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 지급여력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몇 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PBGC(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란 ERISA법에 의해서 1976년에 설립된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연금급여보증공사를 말한다. 모든 DB형제도에 강제적용되며, 모기업의 경영곤란에 의한 종료시에 적용되고, 보증범위는 고정액(2002년 \$ 3,579.55)과 고용기간 중 5년간의 평균보수월액의 최고액 중 작은 것을 상한으로 한다. 일본에서는 후생연금기금의 경우에 후생연금기금연합회에서 지급보증제도 실시하지만, 적격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지급보장 장치가 없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사외적립 유도 및 5년에 1회 재정재계산을 통한 재정검증으로 적정수준의 적립을 유도하고 있다.

#### 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차등체도로 보지 않으며, 퇴직연금의 실시 여부와 그 형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설정하여 근로자(집단)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IV. 평가 및 정책제언

주지하다시피 2005년 12월부터 시행될 퇴직연금제도는 종래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지원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노후소득보장 지원체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퇴직금의 사외적립 강제제도」와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그 중간정산금을 금융기관에 강제로 적립하는 것에 다르다. 세제정책을 통해서 일정 연령 이후의 연금수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개인퇴직계좌의 활용과 더불어 「업종별 퇴직연금제도」(법인형)를 도입하는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아직도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자금운용 현황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다양한 금융상품(운용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특히 자본시장의 안정성 부문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적인 금융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한다.

또 상급 노사단체가 공동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연금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며,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관 외에 퇴직연금감독기구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KLI**

<참고문헌>

- 김인재, 「근로자퇴직연금(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방안」, 『노동법연구』 제14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편, 2003. 6.
- 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내용」, 국제노동법연구원, 2005. 4.
- \_\_\_\_\_, 『퇴직연금제도 실행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2. 12.
- \_\_\_\_\_,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0. 12.
- \_\_\_\_\_,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1. 12.
- \_\_\_\_\_, 『퇴직연금제도 세부실행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4. 6.
- 방하남·신기철·김인재·우재룡·김호경·박성재,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Ⅱ)』,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지역별 격차

반 정 호\*

## I. 머리말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경제사회 구조로 인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여건에 있었고, 특히 경제위기를 지나오면서 지역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역간 격차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①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하달되는 형태를 취해왔던 중앙집권적 노동행정, ② 경제의 글로벌화 과정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처가 지역단위에서 매우 미흡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그 주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개념은 OECD 국가들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면서부터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보다는 지역단위의 실정에 맞는 탈중앙화된 노동시장정책으로 그 관심이 전환되었다(정인수 외, 2002). 우리나라의 노동시장도 점차 지역단위로 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지역단위의 노동시장 및 지역 특성이 반영된 실질적인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역단위의 노동시장을 산업, 고용, 임금, 생산의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탐색적인 차원에서 개관하고 각 차원에서 발견되는 지역단위의 특성과 차이를 평가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연구원(jhban@kli.re.kr).

1) 지역노동시장의 중요성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전과도 관련되는데, 인터넷이나 교통의 발달은 상품 및 요소시장의 지역간 연결을 강화시키고 지역시장의 상대적 우의와 특색이 보다 중요해짐으로써 지역노동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게 되었다.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지역단위별로 이미 시행단계에 있거나 설계되고 있는 노동 시장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 지역노동시장의 구분 기준 및 한계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개관에 앞서 본 장에서는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정의와 경계, 그 존재여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만나는 시장으로, 시장이 작동하는 장소의 범위에 의해서 그 경계가 설정된다. 흔히 지역노동시장은 출퇴근 가능 지역(TTWA's : Travel to Work Areas)으로 행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실제로 작동하는 지역으로 조작화된다.<sup>2)</sup> 이러한 점을 감안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단위 혹은 시·도 단위 차원의 광역자료를 수집·배포되는 등의 우리나라의 지역노동시장 정보는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실증분석에 적지 않은 한계로 작용한다. 본고 역시 행정구역을 지역노동시장의 범위를 구분하는 분석단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분석의 결과는 실제로 지역단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의 특성과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한계를 가진다.<sup>3)</sup>

전술한 것처럼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범위를 어떠한 정의에 의해 구분하느냐에 따라 지역단위의 노동시장의 존재 양상은 매우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노동정책과 고용정책의 내용과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지역노동시장의 경계는 지역노동시장의 존재여부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정보나 통계가 갖는 한계로 인해 일부에서는 지역노동시장의 존재여부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나 연구들에서는 지역간 고용성과와 성장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역의 정책담당자들도 이와 같은 지역별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격차를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2) 영국의 경우, TTWA의 구체적 정의는 어느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75%가 그 지역 내에 있는 사업장에 출퇴근할 경우 이 지역을 하나의 지역노동시장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영국은 이러한 정의로 조정된 지역노동시장은 322개이며, 지역노동시장 정책의 집행 역시 이 단위에 의해 이루어진다(정인수 외, 2002).

3)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정보나 자료의 수준은 지역단위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구역별 지역경계에 의한 분석은 지역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성을 평가하는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노동시장의 존재를 일정 정도 인정한 상태에서 지역단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별 노동시장 격차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 III. 행정구역별 지역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성

#### 1. 지역 경제개관 : 지역내총생산의 규모와 특성

지역노동시장의 수요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의 지역별 규모와 증감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내총생산이란 일정기간 동안에 일정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 가치의 합, 즉 부가가치를 말한다. 최종생산물에는 쌀, 의복, 자동차, 건물처럼 물질적 형태를 가진 재화는 물론 의료, 교육, 문화활동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용역)까지 포함된다. 여기서 지역의 범위를 국가 전체로 확장하면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의미가 된다. 따라서 지역내총생산은 시·도 단위별 생산,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부가가치를 추계한 지표로서 지역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지역경제분석 등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추계방식은 통계청(2005)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2003년 16개 시·도의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731조 6,26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5조 6,804억원(6.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의 시·도별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24.0%), 경기(19.4%), 경북(6.8%) 지역이 높고 제주(0.9%), 광주(2.1%), 대전(2.4%)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내총생산이 높은 상위 3개 지역의 그 규모가 전국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생산측면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그림 1]에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규모의 변화정도를 살펴보면 충남(13.1%), 경북(12.6%), 강원(10.9)이 변화가 크고, 인천(3.5%), 울산(3.7%), 광주(4.1%)는 변화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내총생산의 규모를 비교하면,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규모가 48.1%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수도권 지역의 생산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7개 대도시(1개 특별시, 6개 광역시)와 9개 도 단위로 지역을 구분한 비교에서 역시 7개 대도시의 생산규모가 전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1%로 높게 나타난다.

〈표 1〉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구성비(1996~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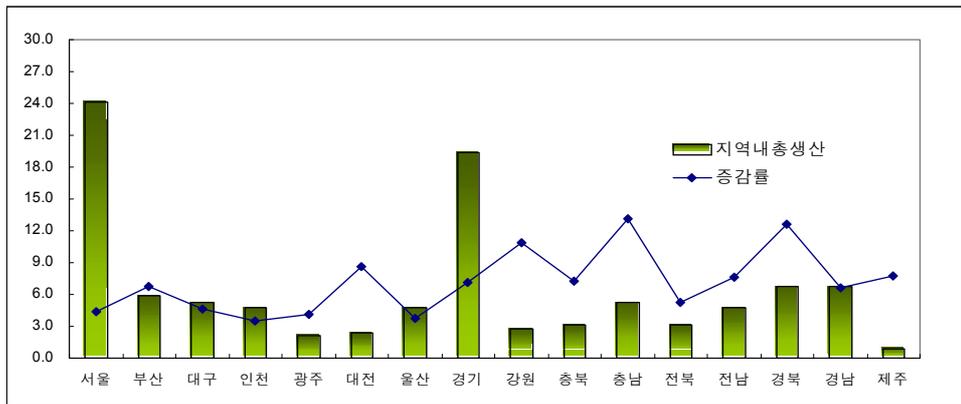
(단위: %, %포인트)

	지역내총생산 규모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감률 (02-03년)
서울	24.9	24.3	24.1	23.9	23.7	24.0	24.1	24.5	24.1	4.4(-0.4)
부산	6.4	6.3	6.1	6.2	6.1	5.9	6.1	5.9	5.9	6.8( 0.0)
대구	3.8	3.8	3.8	3.7	3.6	3.6	3.5	3.4	3.3	4.6(-0.1)
인천	5.1	5.2	5.1	4.8	4.6	4.5	4.7	4.9	4.7	3.5(-0.2)
광주	2.3	2.3	2.3	2.2	2.1	2.2	2.2	2.2	2.1	4.1(-0.1)
대전	2.3	2.3	2.4	2.4	2.3	2.3	2.3	2.3	2.4	8.6( 0.0)
울산	-	-	-	5.0	5.0	4.9	4.8	4.8	4.7	3.7( 0.0)
경기	17.7	17.7	17.2	17.5	18.7	19.3	19.4	19.3	19.4	7.1(-0.1)
강원	2.9	3.0	3.0	3.0	2.9	2.8	2.8	2.7	2.8	10.9(-0.1)
충북	3.4	3.5	3.3	3.3	3.4	3.4	3.2	3.1	3.1	7.2(-0.1)
충남	4.2	4.5	4.7	4.7	4.9	5.0	4.9	5.0	5.3	13.1( 0.1)
전북	3.4	3.5	3.5	3.4	3.3	3.3	3.2	3.1	3.1	5.2(-0.10)
전남	5.1	5.1	5.3	5.3	5.0	4.7	4.6	4.7	4.7	7.6( 0.1)
경북	6.3	6.3	6.8	6.6	6.6	6.7	6.6	6.4	6.8	12.6(-0.2)
경남	10.9	11.2	11.3	7.0	6.8	6.5	6.7	6.7	6.7	6.6( 0.0)
제주	1.0	1.0	1.0	1.0	0.9	0.9	0.9	0.9	0.9	7.7( 0.0)
수도권	47.7	47.2	46.5	46.2	47.1	47.8	48.2	48.7	48.1	5.4(-0.6)
비수도권	52.3	52.8	53.5	53.8	52.9	52.2	51.8	51.3	51.9	7.9( 0.6)
7대 도시	45.2	44.2	43.8	48.2	47.5	47.4	47.7	48.0	47.1	4.7(-0.9)
9개 도	55.0	55.8	56.2	51.8	52.5	52.6	52.3	52.0	52.9	8.4( 0.9)

주: 지역내총생산은 당해년 가격 기준. ( )안은 지역내총생산 구성비의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www.kosis.nso.go.kr).  
 통계청(2005),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추계 방식 해설자료.

〔그림 1〕 2003년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구성비와 증감률

(단위: %)



## 2. 지역노동시장의 산업구조

일반적으로 산업구조는 일정 국가나 지역의 총산출액이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각 산업부문별 구성비를 계산해 봄으로써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를 살펴보고 아울러 주요 산업의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 생산액 구성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림 2]는 통계청(2005)에서 발표한 2003년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역내총생산 중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주(16.1%), 전남(13.4%), 전북(11.1%)이 가장 높고 동시에 이들 지역의 제조업 비중은 각각 3.0%, 27.9%, 21.9%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서울(0.2%), 울산·대전(각각0.4%), 대구(0.6%)는 지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의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 및 제조업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자동차·조선·중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울산이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43.7%)과 충남(40.1%)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업 및 제조업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이 낮은 하위 3개 지역은 제주(3.05%), 서울(6.3%), 강원(11.6%)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 3개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서비스 및 기타부문의 산업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이 80%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서비스 및 기타부문의 산업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이 무려 93.4%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서울 지역의 생산이 거의 대부분 서비스 및 기타부문의 산업생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비스 및 기타산업의 생산집약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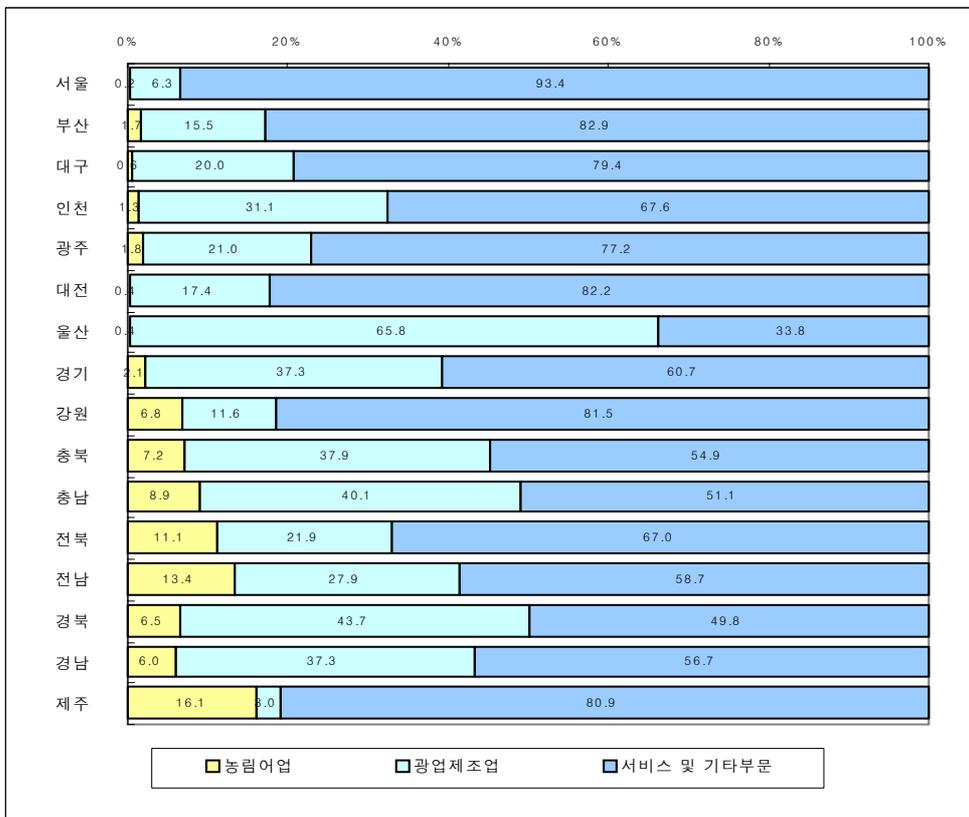
지역총생산의 서비스 및 기타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과 함께 부산(82.9%), 대전(82.2%)이 상위 3개 지역으로 분석되었고 이 밖에도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제주(80.9%), 강원(81.5%) 지역 역시 서비스 및 기타 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33.8%), 경북(49.8%), 충남(51.1%) 지역은 서비스 및 기타산업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이 낮은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전술한 것처럼 이들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림 3]은 2003년 지역내총생산의 광업제조업 비중과 서비스 및 기타부문의 비중을 각 산업의 평균값(광업제조업 27.4%, 서비스 및 기타부문 67.4%)을 기준으로 지역을 횡축과 종축에 배치시켜 본 그림으로 지역별 산업의 집약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에서도 확인되듯이, 서울 지역은 서비스 산업 생산이 집약되어 있고 광업 및 제

조업 생산은 매우 낮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와 유사하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제주 지역은 서비스업 생산이 집약되어 있는 반면, 광업 및 제조업 생산은 낮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또한 인천, 전북, 전남 지역은 두 산업의 평균값 부근에 배치되는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지역 중 전북과 전남 지역은 농림어업의 비중이 다른 13개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지역은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타지역에 비해 서비스 및 기타부문의 생산규모가 낮은 반면, 광업 및 제조업 생산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울산 지역은 광업 및 제조업 생산이 매우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서비스 및 기타부문의 생산비중이 낮은 지역으로 대표된다.

<표 2>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을 중심으로 지역별 구성비를 시계열로 구성해 본 것이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제조업 사업체의 지역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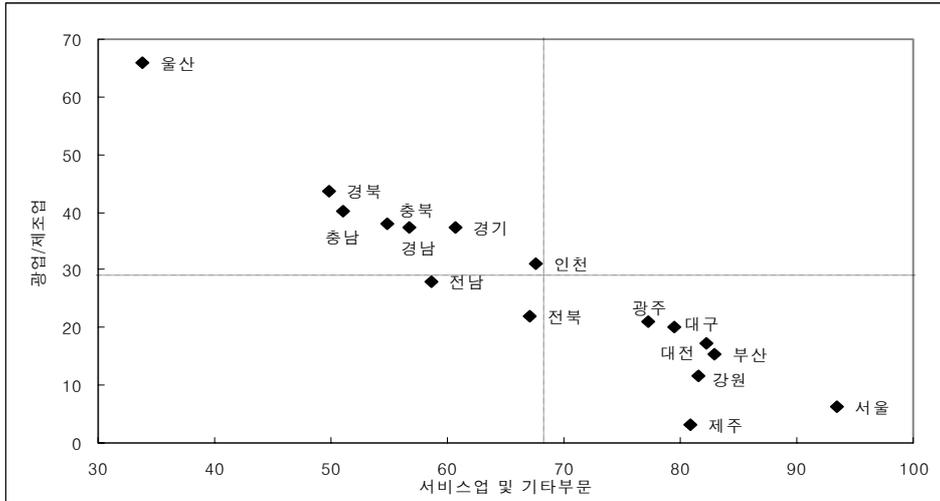
[그림 2] 2003년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



자료 : 통계청(www.kosis.nso.go.kr).  
 통계청(2005),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추계 방식 해설자료.

[그림 3] 2003년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

(단위 : %)



비의 경우,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사업체 비중이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역의 구성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제조업 사업체의 수도권 집중경향은 서울과 경기(2003년 기준 17.7%와 30.0%) 지역의 비중이 높다는 데서 기인한다. 또한 7개 대도시(1개 특별시 및 6개 광역시)와 9개 도 지역을 비교해 보면 9개 도 지역의 제조업 사업체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종사자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사업체의 비중은 경제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위기 시기를 정점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제조업의 생산액 비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구분에서는 25~30%포인트대로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7개 대도시와 9개 도 지역 구분에서 역시 이와 같은 현상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와 생산액의 규모는 권역별로 상당한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와 같은 지역간 격차는 경제위기 이후 좀더 심화된다.

제조업 부문의 지역간 격차는 <표 1>의 16개 시·도의 구성비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업체 및 종사자의 수, 생산액의 세 가지 차원에서 모두 극명하게 드러난다. 물론 울산, 인천, 경남, 경북 지역은 조선이나 자동차, 철강, 전자 산업 등의 제조업 위주의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채택하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이고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이 용이한 제조업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노동시장 정책수립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서비스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업체나 종사자수, 생산액의 지역별 비중은 전반적으로 제조업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수도권의 서비스업 사업체수 비중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낮은 반면, 종사자수와 생산액의 비중은 비수도권에 비해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서비스업과 관련된 사업체는 수도권에 비해 수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나 생산규모는 낮게 나타나는 두 지역의 서비스 산업의 격차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전국을 7개 대도시와 9개 도 지역으로 비교해 보면 권역별 사업체수의 비중을 제외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다음으로, 16개 시·도별 서비스 사업체수의 비중은 전국 서비스업 사업체 중 24.7%(2003년 기준)가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경기(18.9%), 부산(8.3%)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업종의 서울 지역 집약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비스업 종사자수와 생산성의 비중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 생산액의 비중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지역의 서비스 생산액의 44.8%(2003년 기준) 정도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 지역을 합한 생산액 비중(36.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서울 지역의 서비스 산업의 집중 정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3. 지역노동시장의 고용과 임금

우리나라의 지역별 고용현황과 특성은 행정구역별·권역별 경제활동상태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특성은 노동시장 공급측면에서의 지역별 격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지역분포를 통해 매우 탐색적인 수준에서 지역노동시장의 공급현황과 고용안정성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임금의 경우는 매월노동통계조사(1996년-2003년)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구역별 임금수준과 전년대비 증가율을 통해 파악한다.

지역별 경제활동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추이 역시 유사하다. 2005년 2/4분기 현재 제주, 충남, 경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부산, 광주, 대전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3개 지역으로 나타난다. 고용률의 경우는 제주, 충남, 경남 지역이 상위 3개 지역으로 나타나고 부산, 광주, 인천이 하위 3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나타난다. 또한 권역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2005년 2/4분기 수도권 지역의 고용률은 60.1%, 비수도권 지역은 60.7%로 비수도권 지역의 고용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개 대도시(1개 특별

〈표 2〉 주요 산업의 지역별 구성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단위: %)

제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1995	1998	2000	2003	1995	1998	2000	2003	1995	1998	2000	2003
서울	20.9	18.5	18.6	17.7	12.4	10.3	10.5	10.3	7.9	6.3	5.8	6.2
부산	9.8	10.2	9.1	8.4	7.8	7.4	6.9	6.2	4.8	4.1	3.4	3.5
대구	7.4	7.2	6.1	6.1	5.6	5.2	4.8	4.5	3.7	3.0	2.7	2.5
인천	7.9	7.6	8.7	8.9	8.2	7.9	7.8	7.7	7.9	6.9	6.1	5.7
광주	1.3	1.4	1.5	1.7	1.8	1.8	1.8	1.9	1.8	1.5	1.6	1.5
대전	1.5	1.3	1.3	1.1	1.5	1.5	1.4	1.2	1.3	1.4	1.3	1.2
울산	0.0	1.1	1.3	1.4	0.0	5.2	4.9	4.7	0.0	12.4	12.2	11.6
경기	26.4	27.2	29.4	30.0	25.8	25.8	28.0	28.9	25.6	22.8	26.1	24.7
강원	1.6	2.6	2.6	2.6	3.7	4.0	3.9	3.9	4.3	4.0	4.0	3.9
충북	2.3	2.6	2.6	2.6	3.7	4.0	3.9	3.9	4.3	4.0	4.0	3.9
충남	2.9	3.1	3.0	3.3	3.8	4.7	4.9	5.2	4.1	5.8	6.9	8.0
전북	2.5	2.5	2.2	2.1	2.8	2.9	2.8	2.6	2.5	2.8	2.8	2.6
전남	2.8	2.9	2.5	2.3	2.7	2.9	2.6	2.5	4.9	6.4	6.0	6.1
경북	5.1	5.4	5.0	5.2	7.6	8.1	7.8	8.0	8.9	11.3	10.6	11.5
경남	7.3	7.0	7.2	7.5	14.4	10.5	10.2	10.7	20.9	9.6	9.2	10.0
제주	0.3	0.3	0.3	0.3	0.2	0.2	0.2	0.2	0.1	0.1	0.1	0.1
수도권	55.2	53.3	55.5	56.6	44.4	43.0	44.7	45.0	40.0	35.0	36.8	35.5
비수도권	44.8	47.7	44.5	43.4	55.6	57.0	55.3	55.0	60.0	65.0	63.2	64.5
7개 도시	48.8	47.4	46.4	45.0	36.3	39.7	37.0	35.6	25.5	34.2	32.2	30.2
9개 도	51.2	53.6	53.6	55.0	63.7	61.3	63.0	64.4	75.5	64.8	67.8	70.8
서비스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2001	2002	2003	2001	2002	2003	2001	2002	2003			
서울	24.8	24.7	24.7	34.7	34.2	34.9	46.2	45.5	44.8			
부산	8.5	8.4	8.3	7.7	7.8	7.6	5.3	5.6	6.2			
대구	5.8	5.8	5.7	4.9	4.9	4.8	3.4	3.8	3.6			
인천	4.9	4.9	4.8	4.1	4.1	4.0	3.2	3.5	3.5			
광주	3.3	3.3	3.3	3.0	3.1	3.0	2.8	2.5	2.3			
대전	3.1	3.2	3.1	3.1	3.1	2.9	2.5	2.7	2.5			
울산	2.1	2.1	2.1	2.1	2.2	2.2	1.4	1.4	1.5			
경기	17.5	18.3	18.9	16.4	17.1	17.4	18.6	17.9	18.7			
강원	3.3	3.2	3.2	2.8	2.7	2.7	2.1	2.3	2.4			
충북	2.9	2.9	2.9	2.5	2.4	2.4	1.4	1.7	1.6			
충남	3.6	3.5	3.5	2.6	2.7	2.7	1.7	1.7	1.8			
전북	3.8	3.7	3.6	3.0	2.9	2.9	2.0	2.0	2.1			
전남	3.8	3.7	3.5	3.0	2.9	2.7	1.9	2.0	1.8			
경북	5.3	5.2	5.1	4.1	3.9	3.9	2.7	2.5	2.6			
경남	6.1	6.0	6.0	4.8	4.8	4.7	3.4	3.6	3.5			
제주	1.2	1.2	1.2	1.1	1.1	1.1	1.3	1.3	1.2			
수도권	47.2	47.8	48.4	55.2	55.4	56.3	68.0	66.8	67.0			
비수도권	52.8	52.2	51.6	44.8	44.6	43.7	32.0	33.2	33.0			
7개 도시	52.5	52.3	52.1	59.6	59.4	59.5	64.7	65.0	64.4			
9개 도	47.5	47.7	47.9	40.4	40.6	40.5	35.3	35.0	35.6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통계청, 「서비스업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시, 6개 광역시) 지역의 고용률은 58.0%로 나타나는데, 이는 9개 도 단위 지역의 62.7%에 비해 약 4.7%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 실업률은 경제활동률과 고용률과는 다르게 16개 시·도별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역별 실업률은 경제위기 시기였던 1999년 이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개별 지역별 실업률은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5년 2/4분기의 경우, 서울, 부산, 인천 지역은 4% 중반대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강원과 충북 지역은 1% 중반에서 2% 초반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권역별 구분에 의한 실업률은 수도권 지역의 평균 실업률이 4.2%로 비수도권 지역의 평균 실업률(3.0%)에 비해 1.2%포인트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7개 대도시 지역의 실업률(4.3%)은 9개 도 단위 지역의 실업률(2.4%)에 두 배 정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별 실업률의 경우에서 16개 시·도 지역은 물론 권역별 지역 구분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되는데, 이는 대부분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표 3> 지역별 경제활동(1999~2005)

(단위: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999	2001	2003	2005	1999	2001	2003	2005	1999	2001	2003	2005
전 국	61.5	62.1	61.9	62.7	58.4	59.8	59.8	60.4	5.0	3.8	3.4	3.7
서울	61.6	62.0	62.0	63.5	58.1	59.1	59.3	60.6	5.7	4.6	4.4	4.7
부산	59.7	59.3	57.7	58.2	55.4	56.0	55.5	55.5	7.2	5.5	3.9	4.6
대구	59.4	59.8	60.5	61.3	56.0	57.0	57.8	58.7	5.6	4.7	4.4	4.2
인천	61.6	62.5	62.2	62.0	57.8	59.7	59.6	59.2	6.2	4.4	4.2	4.5
광주	57.1	58.4	57.8	58.8	53.3	55.5	55.0	56.3	6.7	4.9	4.8	4.4
대전	57.0	59.1	59.9	58.9	54.5	56.8	57.8	56.4	4.4	3.9	3.5	4.2
울산	59.6	60.0	61.2	61.3	56.9	58.1	59.2	59.1	4.5	3.2	3.3	3.6
경기	62.8	62.9	62.0	63.4	59.5	60.8	60.0	61.0	5.3	3.3	3.2	3.8
강원	58.9	59.6	60.7	60.6	57.2	58.3	59.6	59.6	3.1	2.3	1.7	1.6
충북	60.0	61.9	60.6	61.2	57.7	59.8	58.9	59.9	3.8	3.2	2.9	2.1
충남	63.5	65.9	65.6	66.5	61.8	64.2	63.7	64.9	2.6	2.5	2.8	2.5
전북	58.7	61.1	60.8	60.5	56.5	59.3	59.2	59.1	3.5	3.0	2.5	2.3
전남	65.2	65.5	65.6	65.9	62.9	63.4	64.0	64.4	3.6	3.0	2.5	2.3
경북	65.1	66.2	65.2	66.3	59.5	60.7	61.7	61.5	3.7	2.7	2.0	2.3
경남	61.8	62.5	63.4	63.1	62.7	64.4	63.9	64.7	3.8	2.9	2.5	2.5
제주	67.7	67.8	70.5	71.1	65.9	65.7	69.2	69.3	2.6	3.0	2.0	2.5
수도권	61.3	61.6	61.5	62.7	57.9	59.0	59.1	60.1	5.5	4.2	4.0	4.2
비수도권	61.1	62.1	62.3	62.6	58.5	59.9	60.4	60.7	4.2	3.4	3.0	3.0
7개 도시	59.4	60.2	60.2	60.6	56.0	57.5	57.7	58.0	5.8	4.5	4.1	4.3
9개 도	62.6	63.7	63.8	64.3	60.4	61.8	62.2	62.7	3.6	2.9	2.5	2.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구직기간 4주 기준).

<표 4>는 지역별로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주나 무급가족 종사자 등의 비임금근로자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 준다. 그러나 지역별로 비임금근로자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24.5%), 경기(29.9%), 서울(30.1%) 지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남 지역의 경우는 비임금근로자의 규모가 거의 60%에 이르는 수치를 보여주어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낮은 울산 지역과 비교해 보면 그 규모에 있어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지역간의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보이지만, 2004년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낮은 울산(21.0%)과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전남(53.9%) 지역만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그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역별 비임금근로자의 규모를 비교하면, 2004년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7.3%인데 반해 비수도권 지역의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8.2%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7개 도시의 경우는 전체 근로자의 28.5%가 비임금근로자로 구성되는데 비해 9개 도 지역은 전체 근로자의 42.1%가 비임금근로자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권역별로 고용의 구조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비임금근로자의 지역별 구성비(2000~2004)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전 국	36.1	35.5	35.0	33.5	32.7
서 울	30.1	30.1	30.0	29.9	29.0
부 산	31.9	32.0	31.3	30.3	30.2
대 구	36.6	35.8	34.5	35.0	34.7
인 천	29.3	29.2	28.2	28.0	26.5
광 주	35.5	34.5	33.5	30.7	30.3
대 전	31.8	33.3	32.7	28.7	28.0
울 산	24.5	23.8	24.3	21.5	21.0
경 기	29.9	31.2	30.9	30.0	29.5
강 원	46.9	46.2	44.4	42.9	40.6
충 북	45.0	43.3	42.7	42.1	39.8
충 남	51.5	49.4	49.0	47.0	45.6
전 북	48.3	49.0	50.7	45.0	44.2
전 남	58.0	57.0	55.5	54.1	53.9
경 북	51.4	50.0	48.5	47.8	47.0
경 남	42.9	42.4	41.7	40.2	38.4
제 주	43.3	42.8	42.8	42.8	42.6
수도권	29.6	29.5	28.8	28.6	27.3
비수도권	42.1	41.5	40.9	39.1	38.2
7개 도시	31.4	31.2	30.6	29.2	28.5
9개 도	46.3	45.5	44.8	43.3	42.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5>는 지역별로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구성비를 나타내주고 있다. 임금근로자는 그 고용형태에 따라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되는데, 각 지역별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는 그 지역의 고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규모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상용직 근로자의 규모가 감소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들 지역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지난 5년 동안 대구와 전북 지역은 임시직 근로자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울산이나 제주 지역의 경우는 일용직 근로자의 규모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 근로자의 규모만을 고려해 보면,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제주(25.2%), 강원(20.9%), 충남(19.5%) 지역으로 이는 전국의 평균 일용직 근로자 규모(14.7%)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반면, 일용직 근로자의 규모가 낮은 지역은 울산(10.8%), 경기(11.8%), 광주(12.7%) 지역으로 상위 3개 지역과는 상당한 비중의

<표 5> 지역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구성비(2000~2004)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상용	임시	일용												
전국	47.9	34.5	17.6	49.2	34.6	16.2	48.4	34.5	17.2	50.5	34.7	14.8	51.2	34.1	14.7
서울	41.1	41.3	17.6	42.7	40.6	16.7	42.2	39.9	17.9	47.2	38.4	14.4	47.1	37.9	15.0
부산	40.4	44.3	15.2	41.1	42.6	16.3	41.1	40.0	19.0	42.4	42.4	15.2	43.7	40.7	15.6
대구	47.6	35.1	17.2	45.8	37.7	16.6	42.4	39.6	17.8	44.6	36.5	18.9	46.3	36.0	17.7
인천	49.0	32.3	18.6	49.8	33.1	17.0	49.5	33.1	17.4	47.5	37.7	14.8	48.6	36.9	14.5
광주	46.8	37.0	16.4	46.3	40.5	13.2	45.4	39.7	15.0	50.4	37.0	12.6	51.2	36.1	12.7
대전	51.9	30.4	17.7	50.6	31.9	17.5	48.6	32.6	18.8	54.7	30.7	14.6	53.0	30.9	16.0
울산	65.5	25.2	9.4	65.1	26.4	8.8	64.2	27.7	8.1	61.4	29.4	9.2	62.5	26.6	10.8
경기	51.0	31.2	17.8	53.4	31.3	15.4	52.6	31.2	16.1	55.0	32.3	12.7	55.3	32.9	11.8
강원	55.3	21.6	23.0	53.9	25.3	20.8	50.8	27.9	21.3	53.5	25.9	20.6	51.8	27.3	20.9
충북	57.1	26.8	15.8	58.5	27.5	14.3	55.0	28.9	15.9	50.3	32.6	17.2	51.3	32.8	15.9
충남	54.6	22.7	22.7	54.7	23.0	22.1	55.2	23.4	21.6	55.1	25.7	19.1	57.1	23.4	19.5
전북	51.3	28.0	20.7	54.5	28.2	17.3	54.9	27.7	17.3	48.6	35.6	15.8	49.7	34.1	16.3
전남	43.9	37.1	18.9	45.4	37.1	17.3	44.7	37.9	17.4	47.3	35.4	17.3	49.1	34.1	16.8
경북	49.4	33.9	16.7	51.0	34.7	14.3	50.1	35.1	14.8	50.7	34.4	14.8	53.8	32.0	14.2
경남	53.9	29.1	17.0	57.7	26.7	15.6	58.3	26.2	15.5	58.4	27.4	14.2	58.9	27.4	13.7
제주	41.9	34.5	23.6	38.4	39.7	21.2	37.2	39.7	23.1	39.9	37.0	23.1	40.9	33.9	25.2
수도권	47.0	35.0	18.0	48.6	35.0	16.4	48.1	34.7	17.1	49.9	36.1	14.0	50.3	35.9	13.8
비수도권	50.7	31.2	18.0	51.0	32.4	16.6	49.8	32.8	17.4	50.6	33.1	16.4	51.5	31.9	16.6
7개 도시	48.9	35.1	16.0	48.8	36.1	15.2	47.6	36.1	16.3	49.7	36.0	14.2	50.4	35.0	14.6
9개 도	50.9	29.4	19.6	51.9	30.4	17.6	51.0	30.9	18.1	51.0	31.8	17.2	52.0	30.9	17.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역별로 지역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 지역의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비수도권 지역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7개 대도시 지역과 9개 도 단위 지역을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규모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는 7개 도시 지역이 9개 도 단위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일용직 근로자의 규모는 9개 도 단위 지역이 7개 대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그 고용상 지위에 있어서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제조업 생산이나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경기, 울산, 경남, 경북 지역은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일용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제주나 부산, 서울 등의 지역은 지역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제주나 강원 지역의 경우는 지역내 전체 임금근로자의 20% 이상이 일용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 고용이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6>은 지역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과 전년대비 증감률을 경제위기 이전부터 2003년까지 시계열로 구성해본 것이다. <표 5>에서는 지역별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있어서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서울 지역의 임금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가 나타나 2003년의 월평균 임금이 193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울산(174만원)과 대전(169만원) 지역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141만원)과 제주(142만원), 광주(144만원) 지역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낮은 하위 3개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지역의 평균임금은 전국 평균 163만원을 크게 밑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울산, 대전 지역과도 30만원 이상의 임금격차가 발생되고 있다. 월평균 임금이 높은 상위 3개 지역과 전남(16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 지역의 임금수준이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임금수준 역시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권역별 지역 구분에 의한 임금수준의 격차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168만원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임금수준(153만원) 15만원 정도의 임금격차가 권역별로 발생되고 있으며, 7대 도시 지역(160만원)과 9개 도 단위 지역(153만원)간에는 7만원 정도의 임금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지역별 임금수준의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임금의 변화에 있어서도 지역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97년과 1998년은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위기를 겪고 이 여파로 인해 지역경제나 지역의 노동시장이 매우 악화되었던 시기였다.

〈표 6〉 지역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과 증감률(1996~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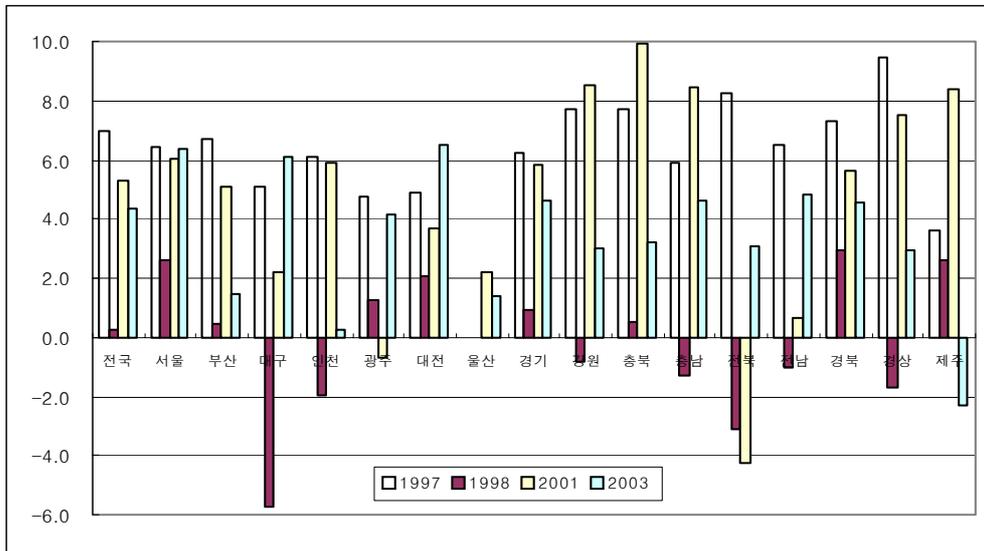
(단위 : 만원,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국	106	114( 7.5)	115( 0.9)	120( 4.3)	133(10.8)	140( 5.3)	156(11.4)	163( 4.5)
서울	116	124( 6.9)	128( 3.2)	134( 4.7)	149(11.2)	158( 6.0)	181(14.5)	193( 6.4)
부산	101	109( 7.9)	109( 0.0)	113( 3.7)	123( 8.8)	129( 4.9)	146(13.2)	148( 1.4)
대구	101	106( 5.0)	101(-4.7)	121(19.8)	120(-0.8)	122( 1.7)	137(12.3)	146( 6.6)
인천	102	109( 6.9)	107(-1.8)	115( 7.5)	127(10.4)	135( 6.3)	148( 9.6)	148( 0.0)
광주	105	110( 4.8)	112( 1.8)	113( 0.9)	127(12.4)	126(-0.8)	138( 9.5)	144( 4.3)
대전	106	112( 5.7)	114( 1.8)	119( 4.4)	128( 7.6)	133( 3.9)	158(18.8)	169( 7.0)
울산	-	-	123( -)	142(15.4)	150( 5.6)	154( 2.7)	171(11.0)	174( 1.8)
경기	103	110( 6.8)	111( 0.9)	121( 9.0)	129( 6.6)	137( 6.2)	154(12.4)	161( 4.5)
강원	106	115( 8.5)	114(-0.9)	118( 3.5)	126( 6.8)	137( 8.7)	147( 7.3)	152( 3.4)
충북	96	105( 9.4)	105( 0.0)	113( 7.6)	123( 8.8)	137(11.4)	142( 3.6)	146( 2.8)
충남	104	110( 5.8)	109(-0.9)	117( 7.3)	127( 8.5)	138( 8.7)	151( 9.4)	159( 5.3)
전북	98	107( 9.2)	104(-2.8)	113( 8.7)	132(16.8)	126(-4.5)	137( 8.7)	141( 2.9)
전남	113	121( 7.1)	120(-0.8)	117(-2.5)	137(17.1)	137( 0.0)	157(14.6)	165( 5.1)
경북	103	112( 8.7)	115( 2.7)	116( 0.9)	126( 8.6)	133( 5.6)	144( 8.3)	151( 4.9)
경남	105	116(10.5)	114(-1.7)	119( 4.4)	128( 7.6)	139( 8.6)	150( 7.9)	155( 3.3)
제주	106	110( 3.8)	113( 2.7)	123( 8.8)	122(-0.8)	133( 9.0)	145( 9.0)	142(-2.1)
수도권	107	114( 6.5)	115( 0.9)	123( 7.0)	135( 9.8)	144( 6.7)	161(11.8)	168( 4.3)
비수도권	104	111( 6.7)	112( 0.9)	119( 6.3)	128( 7.6)	134( 4.7)	148(10.4)	153( 3.4)
7개 도시	105	112( 6.7)	113( 0.9)	122( 8.0)	132( 8.2)	137( 3.8)	154(12.4)	160( 3.9)
9개 도	104	112( 7.7)	112( 0.0)	117( 4.5)	128( 9.4)	135( 5.5)	148( 9.6)	153( 3.4)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4〉 지역별 근로자의 임금증가율(2000~2004)

(단위 : %)



이 시기의 지역노동시장의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7개 대도시 지역 중에서 서울과 광주, 대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임금수준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9개 도 단위 지역에서는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임금수준이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 전북, 제주 지역의 임금수준은 경제위기를 벗어난 시기에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울이나 부산, 대전, 경기 지역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임금수준의 하락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대조된다.

#### IV. 결론

본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지역별 분화와 이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정책의 선행단계에서 요구되는 노동시장의 지역별 격차를 탐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발했다. 지역 노동시장의 생산, 산업, 고용, 임금의 네 차원으로 16개 시·도 지역과 권역별로 격차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지역내총생산을 토대로 지역노동시장의 수요특성을 파악해 보면 일부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의 규모가 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별로 그 구성비 역시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사업체 및 종사자, 생산액의 규모에서 역시 지역간 격차를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별로 발달되어 있는 산업과 전략산업으로 채택하고 있는 산업이 지역마다 서로 상이함에서 기인하는 결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지역별 고용과 임금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그 특성을 파악해 본 결과, 노동의 총공급은 물론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도 시·도별, 권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지역별 임금수준의 경우 역시 지역별로 그 수준과 변화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역별 노동시장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일치된 합의가 부재하며, 현존하는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고의 지역 구분은 행정구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나타난 노동시장 요소들의 지역간 격차는 실제로 지역 내에서 작동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그것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글은 (비록 행정구역별 지역구분에 의한 구분일지라도) 우리나라의 지역노동시장의 불균형적인 양상을 개관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역별로 균형적인 노동시장 정책수립에 있어서 주는 함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보다 바람직한 지역노동시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정보와 자료를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글**

<참고문헌>

- 정인수·전병유·임상훈, 『지역노동시장 연구 : 실증분석과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3.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추계방식 해설자료」, 2005.

# IMD 세계경쟁력보고서와 한국의 노동시장

김정우·곽난희\*

## I. 머리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이하 IMD)에서는 지난 1989년부터 매년 5월 60여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세계경쟁력보고서(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를 발표한다.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 세계경쟁력 순위는 29위로 2004년보다 6단계 상승했다.<sup>1)</sup> 순위상승에는 과학 및 기술경쟁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글은 IMD 세계경쟁력보고서의 노동시장 관련항목들의 경쟁력을 살펴보면서 다른 시사점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IMD 보고서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점 및 측정오류로 인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과소평가 여부, 그리고 경쟁력 미진분야에 대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항목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김정우=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kjw@kli.re.kr).

곽난희=한국노동연구원 객원연구원(nhkwak@kli.re.kr).

1) IMD 이외에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에서는 2000년부터 약 100여개 국가에 대해 국가경쟁력을 조사하여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2003년 GCI(Growth Competitiveness Index)에서 18위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에는 29위로 순위가 많이 하락하였다. 10위권 이내 국가로는 핀란드, 미국, 스웨덴, 덴마크, 대만, 싱가포르,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 입장에서 분석하는 IMD와는 달리 WEF에서는 경제성장론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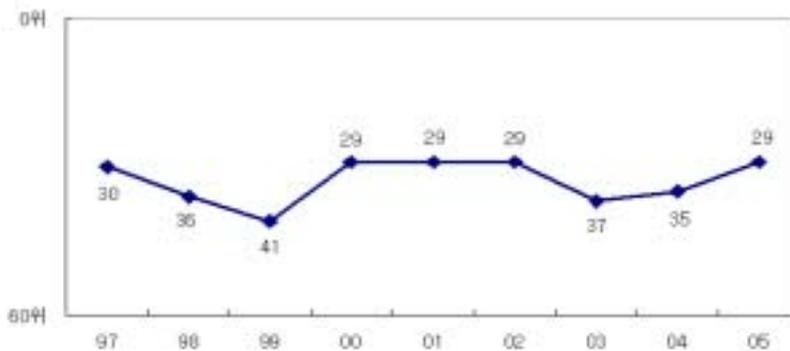
## II. IMD의 세계경쟁력 평가개요 및 평가방법

### 1. IMD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의 세계경쟁력 순위

IMD 보고서에서 세계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적 여건들을 창출,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국가별 기업경영환경과 기술 혁신 등을 통한 경쟁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51개국, 9개 대상 지역<sup>2)</sup>에 대해 경제운영 성과(77), 정부행정 효율성(73), 기업경영 효율성(69), 발전인프라(95)의 4개 분야를 대상으로 각각 314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순위로 발표하고 있다.

2005년도의 순위를 살펴보면, 2004년에 이어 미국이 종합 세계경쟁력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콩, 싱가포르가 각각 2, 3위의 세계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sup>3)</sup>. 특히,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과 경쟁관계를 갖고 있는 아시아권 국가로서 한국의 잠재적인 국가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림 1] 연도별 한국의 세계경쟁력 변화 추이



주: 김대욱(2005), 「IMD의 2005년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산업연구원.

2) Bavaria(Germany), Catalonia(Spain), Ile-de-France(France), Lombardy(Italy), Maharashtra(India), Rhone-Alps (France), State of Sao Paulo(Brazil), Zhejiang(China), Scotland(United Kingdom).

3) 상위 10위권 세계경쟁력을 가진 국가는 미국(1), 홍콩(6), 싱가포르(2), 아이슬란드(5), 캐나다(3), 핀란드(8), 덴마크(7), 스위스(14), 호주(4), 룩셈부르크(9)이며, ( )안은 전년도 순위를 나타낸다.

한국의 경우 2005년 종합 세계경쟁력 순위는 전년도에 비해 6단계 상승한 29위를 차지하여 2002년도의 순위를 회복하였다. 1997년 이후 중국보다 뒤쳐져 있던 국가경쟁력을 회복한 것은 특징적이다. 한국의 세계경쟁력 변화 추이는 앞의 [그림 1]과 같다.

다음으로 한국의 4개 분야별 세부항목 순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우리나라 4개 분야별 세부항목의 세계경쟁력 순위

(단위 : 순위)

항 목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제운영 성과	국내경제	8	18	9	35	32
	국제무역	33	37	10	32	34
	국제투자	37	34	30	54	51
	<b>고용</b>	<b>9</b>	<b>10</b>	<b>4</b>	<b>18</b>	<b>8</b>
	가격	60	25	26	56	56
	<b>소 계</b>	<b>15</b>	<b>32</b>	<b>40</b>	<b>49</b>	<b>43</b>
정부행정 효율성	공공재정	9	3	1	2	14
	재정정책	15	17	15	22	15
	제도적 여건	34	29	14	37	30
	<b>기업관련법</b>	<b>44</b>	<b>40</b>	<b>24</b>	<b>45</b>	<b>34</b>
	사회적 여건	32	31	28	59	58
	<b>소 계</b>	<b>28</b>	<b>26</b>	<b>37</b>	<b>36</b>	<b>31</b>
기업경영 효율성	<b>생산성·효율성</b>	<b>30</b>	<b>29</b>	<b>15</b>	<b>32</b>	<b>42</b>
	<b>노동시장</b>	<b>35</b>	<b>27</b>	<b>19</b>	<b>36</b>	<b>26</b>
	금융	35	29	14	40	38
	경영활동	39	29	25	39	26
	행태·가치	23	24	14	19	25
	<b>소 계</b>	<b>35</b>	<b>27</b>	<b>45</b>	<b>29</b>	<b>30</b>
발전인프라	기본인프라	35	33	16	33	23
	기술인프라	25	19	10	8	2
	과학인프라	21	10	10	19	15
	보건·확충	30	29	12	32	33
	<b>교육</b>	<b>40</b>	<b>47</b>	<b>18</b>	<b>44</b>	<b>40</b>
	<b>소 계</b>	<b>26</b>	<b>23</b>	<b>30</b>	<b>27</b>	<b>23</b>

주: 굵게 표시된 부분은 주요 노동관련 분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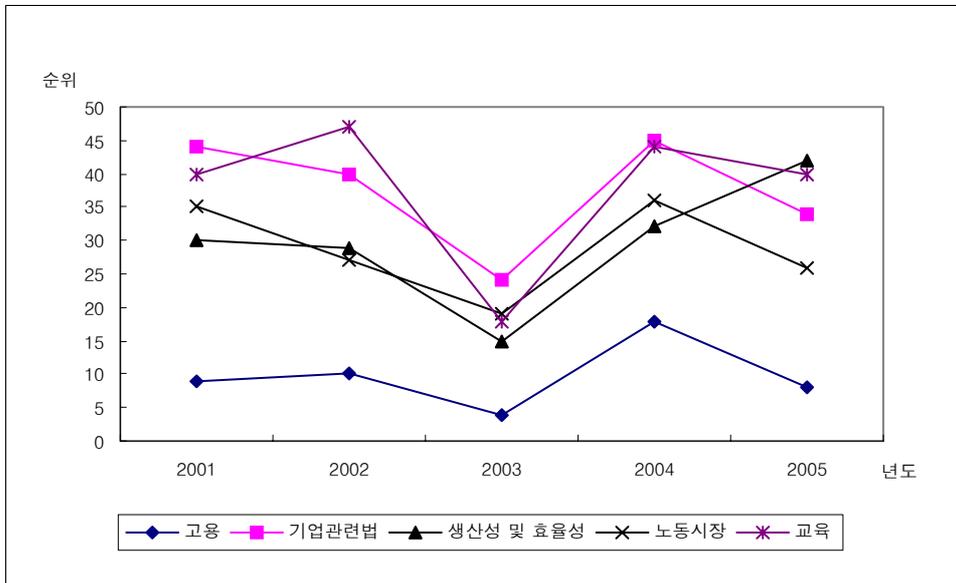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2005.

전년과 비교하여 경제운영 성과분야는 6단계(49위→43위), 정부행정 효율분야는 5단계(36위→31위), 발전인프라 분야는 4단계(27위→23위) 순위가 상승한 반면, 기업경영 효율성분야는 1단계(29위→30위) 하락하였다.

진하게 나타낸 항목들은 앞으로 살펴볼 노동시장관련 항목들로서 최근 5년간의 순위

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노동시장관련 항목들의 세계경쟁력 순위



## 2. IMD의 세계경쟁력 평가방법

IMD의 세계경쟁력 평가는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앞의 314개 평가항목에서 나타나는 세계경쟁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57개 IMD 파트너기관(한국의 경우 산업연구원)에 의한 201개 경성자료(Hard Data)와 60여개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4,000여명의 설문조사를 통한 113개의 연성자료(Survey Data)를 이용하여 국제경쟁력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경성자료 중 128개 항목이 주된 지표로 사용되고, 나머지 73개 항목은 보조지표로 이용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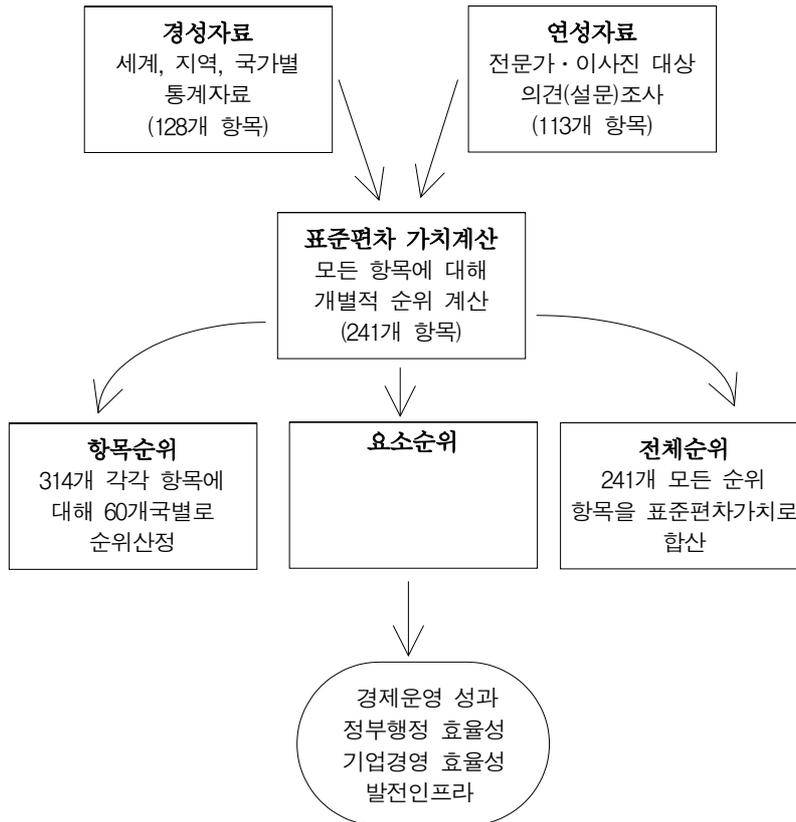
이러한 경성 및 연성자료를 이용해 241개 세부항목의 국가별 순위를 산출하고,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개 부문별로 해당 세부항목들을 표준화하여 합산함으로써 국가별 순위를 산출한다. 또한 부문별 점수를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4대 분야별 및 종합적 국가순위를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음 [그림 3]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성자료 형성을 위한 설문대상은 IMD의 한국파트너인 산업연구원이 선정한 400개 기업(전경련 CEO포럼 소속기업)과 IMD가 이미 조사한 바 있는 400여개 기업 등 총 800여개 기업의 경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 회수는 산업연구원측이 설문대상에 우편안내를 하고 IMD 웹사이트에서 직접 응답을 기입하는 형태

로 진행된다.)

따라서 경쟁력 순위는 주관적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하므로 반드시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정정도 해당 시기 국가경제 운용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경쟁력 평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열등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선·극복한다면 더 높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IMD의 세계경쟁력 순위산정 과정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

4) 언론지상에 자주 기사화되는 노사관계 관련 경쟁력에 대한 항목은 “노사관계가 일반적으로 생산적입니까 아니면 적대적입니까?”(Are labor relations generally productive or hostile?)라는 질문에 대해 1~6 단계의 척도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Ⅲ. 노동시장과 관련된 항목의 세계경쟁력 순위

노동시장과 관련된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면, 경제운영 성과부문의 고용(8항목), 정부 행정 효율성부문의 기업관련법(3항목), 기업경영 효율성부문의 생산성(4항목), 노동시장(21항목), 발전인프라 부문의 교육수준(2항목) 항목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각 항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와 선진국의 순위 및 내용과의 비료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경제운영 성과부문의 '고용'

경제운영 성과부문 중 고용에 대한 경쟁력 순위는 전년도 대비 10단계 상승한 8위를 차지하였다(표 1 참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절대적 고용자수는 중국, 인도, 미국이 단연 1~3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의 고용자(취업자)수는 약 2,256만명으로 세계 1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대비로 보면 중국이 58.1%로 3위, 일본이 49.57%로 9위, 미국이 46.84%로 22위이며, 한국의 참가율은 46.80%(23위)로 절대적 고용자 규모가 비슷한 프랑스(15위), 이탈리아(17위)의 40.45%(41위), 38.93%(48위)와 비교해 볼 때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은 편이다.

고용률 증가항목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도 0.14%의 감소와 대비 금년도에는 1.89%의 증가로 21위의 순위로 평가되었다. 부문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이 8.1%, 산업이 27.5%, 서비스업이 64.4%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고,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의 비중이 3.25%로 세계 2위의 경쟁력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실업률 항목을 비교해 보면, 전체 실업률이 1.98%에 달하는 태국이 경쟁력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3.60%로 4위의 높은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적 국가 중 미국은 21위(5.5%), 일본은 17위(4.20%), 중국은 10위(4.20%), 싱가포르 7위(4.00%)의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청년실업률 항목에서 한국은 13위(10%)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실업률 항목에 있어서 한국은 0.02%의 장기실업률로 세계 경쟁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실업상태에 머무르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다른 직업으로의 재취업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운영 성과부문의 세부항목별 우리나라 세계경쟁력 순위는 <표 2>와 같다.

〈표 2〉 경제운영 성과부문의 세부항목별 세계경쟁력 순위

		1위권 국가	2005
고 용		중국 (75,412만명)	16위 (2,256만명)
고용률		룩셈부르크 (67.00%)	23위 (46.70%)
고용성장률		아르헨티나 (5.61%)	21위 (1.89%)
부문별 고용	농 업	-	8.1%
	산 업	-	27.5%
	서비스	-	64.4%
공공부문 고용		싱가포르 (2.99%)	공동 2위 (3.25%)
실업률		태국 (1.98%)	4위 (3.60%)
장기실업률		한국 (0.02%)	1위 (0.02%)
청년실업률		태국 (5.83%)	13위 (10.00%)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

## 2. 정부행정 효율성부문의‘기업관련법’

정부행정 효율성부문의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은 전년도 대비 11단계 상승한 34위를 차지하였다(표 1 참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고용·해고 및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노동 규제부문에 있어서 홍콩, 싱가포르, 덴마크 및 스위스가 1~4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우리나라는 44위의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보다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채취업을 위한 인센티브 및 제반조건과 관련하여 실업법률 항목에서는 <표 2>에서 제시된 낮은 실업률과 관련 20위의 경쟁력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외국 노동력의 고용과 관련한 이주법률 항목에서는 53위로 낮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국제적 개방이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칠레, 싱가포르, 영국이 각각 1, 3, 6위의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노동시장의 개방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3. 기업경영 효율성부문의‘생산성’및‘노동시장’

기업경영 효율성 부문은 생산성과 노동시장에 대한 항목으로 나누어 비교해 본다.

우선 생산성부문에 있어 고용자 기준 1인당 GDP 기여도(PPP 기준) 항목의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35위를 차지했다. 노동생산성(PPP 기준) 항목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가 각각 2, 3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싱가포르, 홍콩, 대만이 각각 28위, 30위, 31위인데 반해, 한국은 41위로 생산성 경쟁력이 낮게 나타났다. 대기업의 국제표준화 정도를 나타내는 항목에서는 중소기업(50위)보다 높은 30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을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이 더욱 요구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부문을 보면, 전년도 대비 10단계 상승한 26위의 세계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시장 부문의 세부항목은 크게 임금, 노사관계, 생산력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임금분야 중 총근로시간 대비 임금 및 기타 급여의 수준(제조업 기준)은 32위로서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26위, 27위, 30위와 비슷한 수준이나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단위노동당 비용변화는 싱가포르, 대만, 홍콩, 한국이 각각 -9.10%(2위), -4.26%(5위), -1.20%(20위), -0.07%(27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임금수준은 39위로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이며, 기업체 경영진들의 임금수준은 16위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분야 중 근로시간은 연 2,270시간으로 세계 7위의 수준이며, 홍콩, 대만, 싱가포르가 각각 1위, 4위, 15위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시간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줄어들어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 고용자(취업자)들이 근로시간 분야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주5일제 근무 실시 등으로 인해 앞으로 근무시간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관계의 적대성 정도를 나타내는 항목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이 각각 1위, 2위, 6위, 9위를 차지한 반면, 한국의 경우 전년도에 이어 최하위인 60위의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의 약점 중 하나로 주요하게 지적되고 있으며, 노사관계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을 함의한다. 하지만 각주 4)에서 제시한 설문 문항과 같이 단순한 한 문장만으로 노사관계의 적대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2004년도에 IMD가 400개 기업, 그리고 당시 한국파트너인 (주)경쟁력 평가원이 250개 기업에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나 그 응답률이 13%)에 그친 것에 비하면 순위의 신뢰도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자들의 노동참가 동기수준 항목에서는 홍콩이 1위, 덴마크가 2위를 차지, 강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이 10~13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한국은 37위를 나타내고 있어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보상 등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동기부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사분규 수준은 45위를 나타내 경쟁력이 낮은 만큼 노사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반면, 근로자 훈련분야에 있어서는 25위로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자 및 실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경제활동인구 항목에서는 전체 고용자수 항목과 같이 중국, 인도, 미국이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7위, 프랑스, 이탈리아가 각

5) 특히, 노사관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용자가 더 잘 응답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 표본상의 문제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각 15위, 16위의 순위를 보인 반면, 한국은 2,337만명으로 18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인구대비 경제활동인구 수준이 중국은 60.45%(3위), 일본은 52.02%(11위), 미국은 49.47%(26위)인데 반해, 한국은 48.49%로 32위를 차지함으로써 경쟁력이 약간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참가율의 증가수준이 1.98%로 16위를 차지 향후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조건으로는 임시직 고용자의 비중이 일본이 4위(26%), 영국이 8위(23.29%), 미국이 23위(13.20%)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7.72%로 37위를 차지하여 경쟁력 수준은 떨어지나 비교적 안정된 고용조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핀란드,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의 높은 경쟁력 수준에 비해 한국의 경우, 싱가포르(24위, 44.93%), 홍콩(31위, 44.38%), 대만(39위, 41.72%)에 이어 40위(41.37%)로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숙련된 노동시장에 대한 항목평가는 필리핀, 네덜란드, 덴마크가 각각 2위, 4위,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9위, 싱가포르, 대만, 홍콩이 각각 11위, 16위, 17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32위 수준으로 약간 낮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고학력·숙련된 근로자 항목에서는 25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시아권 국가 중 홍콩과 싱가포르는 외국에 대한 개방을 나타낼 수 있는 외국 숙련근로자 및 자국내 경영진들의 해외경험 수준이 6위권 이내에 들어 높은 경쟁력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7

〈표 3〉 기업경영 효율성부문의 세부항목별 세계경쟁력 순위

(단위 : 순위)

		2004	2005
임금	임금수준	32	32
	단위노동 임금변화	34	27
	서비스전문가 임금수준	39	39
	경영진 임금수준	16	16
노동사관	근로시간	7	7
	노사관계 적대성 수준	60	60
	근로자 참가유인	42	37
	노사분규	44	45
생산부문	근로자훈련	30	25
	노동력	18	18
	노동력 비중	34	32
	노동력 성장률	47	16
	임시직 근로자	29	37
	여성노동력	40	40
	외국노동력	32	34
	숙련근로자	41	32
	Finance skills	45	46
	고학력·숙련근로자	44	25
	외국 숙련근로자 참가	42	27
국제적 경험(고위 경영자)	5	18	
유능한 경영자 수준	45	32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2005.

위, 18위에 머무르고 있다. 유능한 경영자의 수준은 32위로 중간 정도를 차지하였다.

기업경영 효율성부문 중 노동시장에 대한 세부항목별 세계경쟁력 순위는 <표 3>과 같다.

#### 4. 발전인프라 부문의‘교육수준’

고용자의 교육을 통한 노동시장 투입과 관련이 있는 항목 중 노동시장에서 유용한 자질을 갖춘 기술자 정도는 인도, 핀란드, 칠레가 1~3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미국, 일본은 각각 16위, 29위, 싱가포르, 대만, 홍콩이 각각 9위, 21위, 30위를 차지한 데 비해 한국은 45위의 낮은 경쟁력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간 지식 및 정보의 이동은 미국이 3위, 싱가포르, 대만, 홍콩이 각각 8위, 9위, 17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은 전년도 42위보다 21단계 상승한 21위를 차지해 긍정적인 국제경쟁력 향상이 예상된다.

하지만,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인적자원뿐이라는 믿음과는 다르게 이 부문에서 경쟁력이 기대보다 낮게 평가되었고, 특히, 우리나라 대학교육 및 교육체제가 경쟁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안겨준다. 즉, 정부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직업 인력의 양성을 위한 평생직업 교육체제의 마련과 기업차원에서 사내 교육훈련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항목 중 노동시장과 관련된 4분야 5가지 항목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치를 살펴보았다. 전체 종합적 세계경쟁력이 29위인데 반하여, 고용부문 및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항목을 제외한 기업관련법, 생산성, 교육부문의 경쟁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과 관련된 규제가 비교적 많으며, 경직적인 노동시장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노사간의 적대성 정도는 최하위 수준인데, 설문조사 분석상의 오차를 감안하여 WEF에서 발표한 순위(2004년 102국가 중 92위)와 비교해 보아도 역시 하위권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중장기적 노사관계법·제도 및 의식·관행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IMD 조사대상인 기업의 경영담당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높은 교육열과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항목

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낮게 나온 결과로 볼 때, 산·학간 지식 및 정보의 효율적인 이동이 시급히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매년 순위로 평가하는데 있어 그 한계를 감안하여 매년 발표되는 세계경쟁력 순위의 변화에 민감하게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위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요인에 대한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

# 교육훈련 기회와 노동시장 성과

이 상 호\*

## I. 들어가며

흔히들 지식 혹은 인적자본 증대를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언급한다. 전 지구적 경쟁과 기술변화 속에서 저숙련노동보다는 고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과 숙련을 향상시킴으로써 더 많은 혁신과 더 높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사회적 계층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은 사회 양극화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숙련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사회보장, 고령화, 빈곤문제 등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의 해법으로 교육훈련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나 정부의 훈련 프로그램이 가져다주는 노동시장 효과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선 정부나 기업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훈련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근로자 측에서도 일자리를 얻거나 임금을 높이기에는커녕 시간만 낭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교육훈련의 효과를 둘러싼 이론적·실증적 연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숙련향상 정책들은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고용상황을 개선해 주는 것일까.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임금이나 생산성, 직무만족도 등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들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만일 숙련향상 정책의 성과가 존재한다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을까.

이 글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질문의 답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 연구원(shlee@kli.re.kr).

자 한다. 본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시에 거주하는 5,000가구 및 가구원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1998년부터 동일한 표본을 반복해 추적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교육훈련과 관련된 내용은 3차년도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도에 조사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으로 취업, 창업 또는 업무능력 향상과 같은 직업훈련의 내용, 시기, 분야, 방법, 지원주체, 목적, 비용부담 주체 등이 다루어졌다<sup>1)</sup>. 따라서 본 자료를 이용하여 훈련을 제공받는 수요자, 즉 근로자의 입장에서 숙련향상의 다양한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하는데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횡단면 분석에서 발생하는 ‘관측되지 않은 개인 효과’(unobserved individual effect)를 통제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sup>2)</sup>. 주된 분석대상은 가장 최근(2004년)에 조사된 응답자로 하였으며,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 임금근로인 자에 대한 비교통계도 함께 제시하였다<sup>3)</sup>.

글의 구성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제Ⅱ장에서는 교육훈련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기업체 구조상의 차이를 다룬다. 제Ⅲ장에서는 교육훈련을 받은 응답자에 대해 훈련 목적과 분야, 비용부담 주체 등과 같은 세부적 특성을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이 임금과 직무만족도, 직장몰입 등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에는 어떤 효과를 주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맺음말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Ⅱ. 훈련기회의 불평등

어떤 개인이 현재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훈련에 대한 수요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자신이 소속된 기업의 기술 환경이 매우 급속하게 변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직무 역시도 숙련향상을 더 많이 필요로 할 수 있다. 또

- 1) 실제로는 4차년도 조사에서 조사가 누락된 연도에 대한 훈련관련 항목들을 조사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조사연도에 대한 교육훈련 정보의 구성이 가능하다.
- 2) 여기서 말하는 교육훈련이란 정규교육 이후에 취업이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 및 훈련활동을 의미한다.
- 3) 교육훈련의 이슈는 훈련의 목적(임금근로자의 기업내 숙련향상, 자영업자의 창업, 실업자의 취업 등)에 따라 포괄되는 논의가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노동패널에서 나타나는 훈련의 패턴이 주로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숙련 획득이라기보다는 취업후 기업 내에서 숙련향상이나 재숙련을 위해 받는 훈련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사례를 갖추기 위해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통계를 함께 제시하였다.

한 기업이나 직무의 성격에 따른 숙련요구가 크지 않더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훈련을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은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훈련에 대한 희망정도(잠재적 수요)를 고려하여 실제 훈련수행여부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본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훈련에 대한 희망수준이 높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직무상의 필요나 개인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정집단의 희망수준이 높은데도 실제 받은 훈련이 못미친다면 이는 훈련기회의 불평등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여기서는 훈련참가자 및 희망자의 비중을 몇 가지 차원에서 비교함으로써 훈련수요에 대한 대략적인 특성 및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sup>4)</sup>.

노동패널 7차(2004)년도 조사에서 ‘지난 조사 이후 훈련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고 응답한 개인은 전체 표본 11,661명 중 약 5.5%, ‘앞으로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희망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6.2%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절반을 밑도는 수준의 훈련혜택을 받고 있으나 훈련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남성보다 그리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훈련참가자의 비중이 30대>40대>20대 이하>50대 이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대의 경우에는 잠재적 훈련수요 또한 1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대 이하의 연령층 또한 훈련희망자의 비중에서는 40대보다 오히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훈련수요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교육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적자본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가 된다. 고학력자일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일자리를 선호하며 따라서 이런 일자리를 갖기 위해, 혹은 하고 있는 업무에 필요한 숙련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훈련기회를 갖게 되며, 이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는 것이다. 즉, 기업에서 고숙련에 대해 더 많은 숙련향상을 필요로 하고, 이미 획득한 인적자본의 수준이 더 높은 개인일수록 많은 숙련향상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훈련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했던 숙련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훈련기회의 불평등은 고용형태에 따라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경우에 훈련참가자의 비중이 14.1%로 가장 높았으나, 임시일용직(2.7%, 1.4%)

4) 엄밀히 말해서 훈련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이미 필요한 숙련을 충분히 습득했기 때문에 그다지 훈련을 희망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훈련을 많이 받았던 사람일수록 훈련의 필요성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많은 훈련을 희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다는 것과 희망한다는 것을 비교하는데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가정을 단순화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데 의미를 두기로 하였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훈련제공 및 잠재적 훈련수요

(단위: %, 명)

		훈련 받음	훈련 희망	전 체
전 체		5.5 (645)	6.2 (724)	100.0 (11,661)
성 별	남 성	7.6 (426)	6.9 (390)	100.0 ( 6,027)
	여 성	3.6 (219)	5.5 (334)	100.0 ( 5,634)
연령별	15~29세	5.4 (163)	7.2 (217)	100.0 ( 3,026)
	30~39세	9.3 (239)	12.1 (310)	100.0 ( 2,561)
	40~49세	7.0 (163)	6.1 (141)	100.0 ( 2,328)
	50~59세	3.8 ( 63)	2.6 ( 42)	100.0 ( 1,641)
	60세 이상	0.8 ( 17)	0.7 ( 14)	100.0 ( 2,105)
교 육 수준별	고졸 미만	1.2 ( 51)	1.5 ( 64)	100.0 ( 4,236)
	고 졸	5.8 (207)	6.4 (227)	100.0 ( 3,559)
	대재 및 중퇴	4.0 ( 40)	9.1 ( 90)	100.0 ( 989)
	전문대졸	10.3 (100)	11.5 (112)	100.0 ( 971)
	대졸 이상	13.0 (247)	12.2 (231)	100.0 ( 1,899)

주: 교육수준별 분포는 교육수준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7명을 제외한 결과임.

이나 실업자(4.0%)와 같이 노동시장 지위가 낮은 계층들에서는 현격하게 낮았다. 이에 반해 훈련을 희망하는 임시직 근로자는 5.8%, 실업자의 훈련희망 수준은 15.8%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즉, 훈련수요 측에서 볼 때 취업자 중에서도 상용직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업 내 직업훈련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2차 노동시장에 소속되었거나,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실망된 사람들에게는 훈련기회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임시직 근로자와 실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제공되는 훈련수준보다 희망하는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이 갖는 잠재적 수요와 이에 대응하는 훈련의 공급을 사회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하는 여지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취업을 돕고 더 나은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 근로자의 필요에는 훨씬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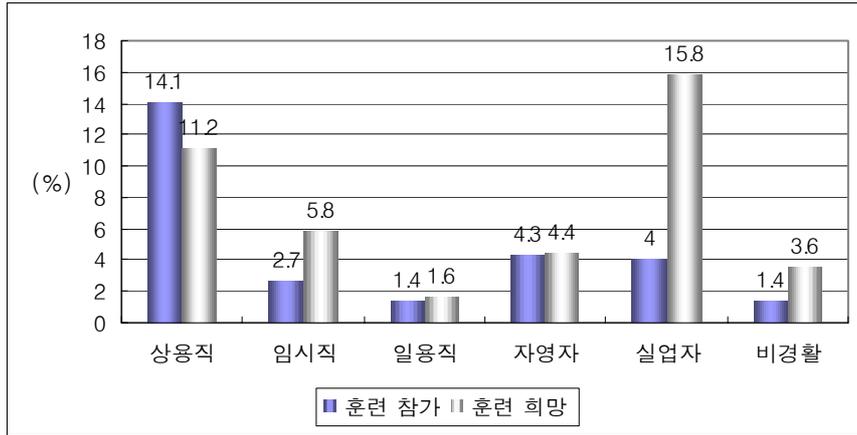
이제 상용직 임금근로자 내에서 교육훈련 참가의 패턴을 살펴보자(표 2). 우선 「표준 직업분류」 대분류에 기초하여 직종을 구분하였다. 직업분류 자체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규교육 수준 및 경력을 고려하여 구성되므로 전문가에서 단순노무직에 이르는 이러한 직업분류는 숙련의 복잡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분석결과도 학력에 따른 훈련참가의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고숙련 정신노동을 수행하는 (준)전문가의 19%가 훈련혜택을 누리는 반면,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생산기능직은 11.3%만이 훈련혜택을 받았으며, 훈련에 대한 희망도 역시 고숙련 직종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훈련참가의 분포는 기업규모와도 정비례하였다. 종업원수 1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6%만이 훈련을 받은 반면에 5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31.8%가 훈련을 받음으로써 9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훈련에 대한 희망수준은 그 격차가 3배 정

도로 줄어든 것을 볼 때 기업규모에 따른 훈련기회의 불평등이 무시 못할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는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의 훈련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나 노조의 존재가 숙련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훈련의 목적이 유사하면서도 비교적 고용조건이 안정된 상용직 근로자 내에서도 직종별, 기업체 특성별로 상당한 수준의 훈련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그림 1] 고용상태별 훈련 참가 여부



<표 2>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직종 및 기업체 특성별 훈련여부 분포

(단위: %, 명)

		훈련 참가	훈련 희망	전 체
전 체		14.1 (466)	6.2 (370)	100.0 (3,309)
직종별	(준)전문가	19.0 (169)	15.0 (133)	100.0 (888)
	사무직	14.3 (78)	15.1 (82)	100.0 (545)
	서비스직	14.5 (52)	7.8 (28)	100.0 (358)
	생산기능직	11.3 (79)	8.0 (56)	100.0 (699)
	농업, 단순노무	10.7 (88)	8.7 (71)	100.0 (819)
기업규모별	10인 미만	3.6 (27)	6.3 (47)	100.0 (741)
	10~29인	6.0 (27)	8.0 (36)	100.0 (452)
	30~99인	10.0 (45)	10.6 (48)	100.0 (451)
	100~299인	18.6 (51)	11.3 (31)	100.0 (274)
	300~399인	19.1 (20)	16.2 (17)	100.0 (105)
	500인 이상	31.8 (182)	19.1 (109)	100.0 (572)
노조유무	유노조	27.5 (214)	17.6 (137)	100.0 (2,530)
	무노조	10.0 (252)	9.2 (233)	100.0 (779)

주: 기업규모별 분포는 기업규모를 조사하지 않는 정부기관, 공무원, 특정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 무응답자 등을 제외한 2,595명이 분석에 포함됨.

보인다. 특히 상용직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훈련기회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좋은 일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할 때 대기업일수록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상용직 내에서도 숙련향상의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III. 교육훈련의 목적과 내용

지금까지 누가 훈련받기를 원하며 실제로 받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훈련을 왜, 어떻게 받는 것일까. 우선 훈련을 받는 목적을 살펴보면, 전체 표본의 79.4%,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92.7%가 업무능력 향상이라는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그러나, 훈련을 희망하는 이유에서는 이러한 목적이 현저하게 감소한 한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희망한다는 비중은 전체 표본에서 27.1%, 상용직 임금근로자 중에서 19.5%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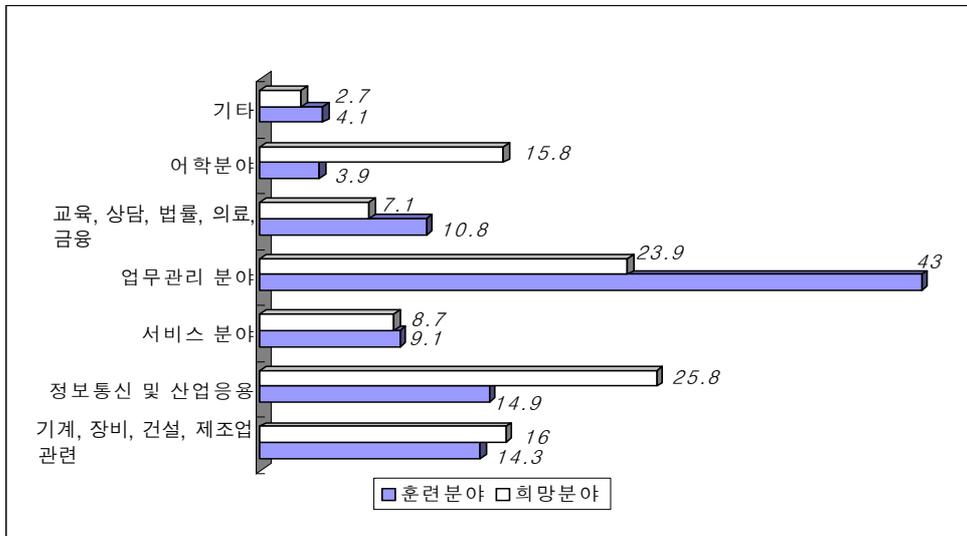
이러한 훈련목적의 차이는 훈련을 받는 분야와 희망하는 분야에서도 상당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는 노동부의 「직업훈련직종코드」 대분류를 기초로 조사한 훈련분야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근로자가 실제 받고 있는 훈련분야로는 업무관리(43.0%)나 현장숙련과 관련된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훈련을 희망하는 분야로는 업무관리 분야의 비중(23.9%)이 현격하게 감소한데 반해, 어학(11.9%p ↑)이나 정보통신 및 산업응용분야(10.9%p ↑)와 같이 성장산업이나 당장의 업무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한 훈련의 희망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언급할 사실은 훈련분야에 대한 실제 응답에서는 ‘기타’가 매우 많이 관찰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기타항목 중에서 응답항목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잘못 분류된 것들도 있었지만, 현행 훈련코드 내에 포함시키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들도 많았다. 현재의 훈련코드 자체가 전통제조업 분야의 기술자격과 관련된 항목들은 매우 상세하게 분류가 이루어진 반면, 실제 응답자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관련 훈련들을 받고 있고 또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향후 정보통신산업 및 서비스업의 확대와 같은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확한 훈련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이러한 통계적 분류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5)</sup>.

〈표 3〉 훈련을 받은 목적 및 희망하는 이유

(단위: %)

	현재 받게 된 목적		훈련을 희망하는 이유	
	전 체	상용직 임금근로자	전 체	상용직 임금근로자
전 체(명)	645	466	724	370
창업을 위해	3.4	0.2	6.2	4.1
(재)취업을 위해	9.6	2.8	15.1	2.2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79.4	92.7	43.2	67.3
자격증 취득을 위해	5.1	2.2	5.4	3.2
미래를 위한 준비로	-	-	27.1	19.5
기 타	2.5	2.1	3.0	3.8

〔그림 2〕 훈련을 받은 분야 및 희망하는 분야(상용직 임금근로자)



훈련지원 주체를 살펴보면 회사의 업무능력 향상훈련이 74.7%(348명)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정부지원훈련 15.0%(70명), 개인선택의 교육훈련이 8.4%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회사와 정부에서 시행하는 훈련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회사에서 시행하는 업무능력 향상훈련을 받는 근로자들의 경우 현장훈련(OJT, 48.6%)과 다른 교육기관에서 받는 훈련(44.5%)이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훈련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재직자훈련이 70%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기능사 양성훈련 또는 정

5) 현재 서비스 분야의 분류항목으로는 음식서비스, 관광 및 숙박 서비스, 기타 서비스 분야 등과 같은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유아 교육, 직업상담사 교육 등을 미용, 이용, 안마 세탁, 빌딩관리 등과 같이 동일한 기타 서비스 분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점이다.

부위탁훈련 순이었다. 훈련비용을 부담한 주체가 현재 ‘다니는 회사’라고 응답한 비중은 71.9%(335명)였으며, 정부부담은 약 16.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훈련을 시행하는 주체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훈련을 받는 분야와 희망하는 분야 사이에는 잠재적 성장가능성에 따라 수요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훈련의 내용 면에서는 대부분 기업에서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업무관련 교육이었으며,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훈련시행기관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 중 훈련비용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같은 제도를 통한 정부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참가하는 개별 근로자는 이를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 혹은 분담한 훈련의 비중이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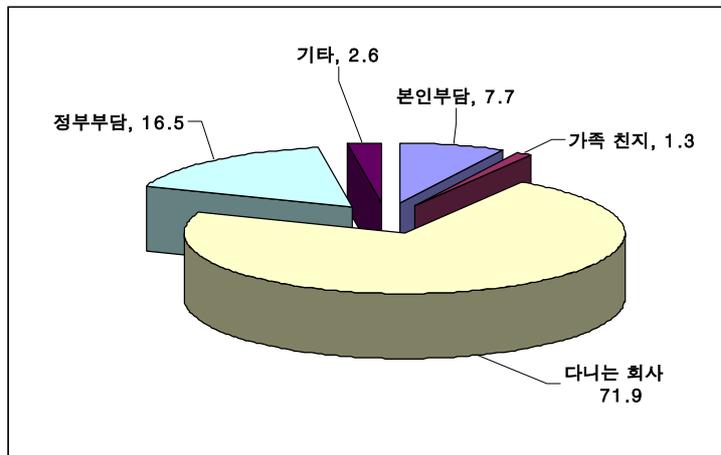
〈표 4〉 훈련지원 주체(기업/정부)별 훈련내용

(단위: 명, %)

회사가 시행하는 업무능력 향상훈련			정부지원훈련 프로그램		
사례수	전 체	상용직	사례수	전 체	상용직
	382	348		124	70
현장훈련(OJT)	48.7	48.6	기능사 양성 훈련 또는 정부 위탁훈련	21.8	14.3
다른 교육기관에서 받는 훈련(OFF-JT)	44.2	44.5	실업자 재취직훈련	9.8	2.9
통신강좌 청취(인터넷 등)	3.9	4.0	고용촉진훈련	6.8	1.4
기 타	3.1	2.9	재직자훈련	47.4	70.0
			취업훈련(신규학교 졸업자)	4.5	5.7
			기타	3.0	1.4

〔그림 3〕 훈련비용 부담 주체

(단위: %)



#### IV. 교육훈련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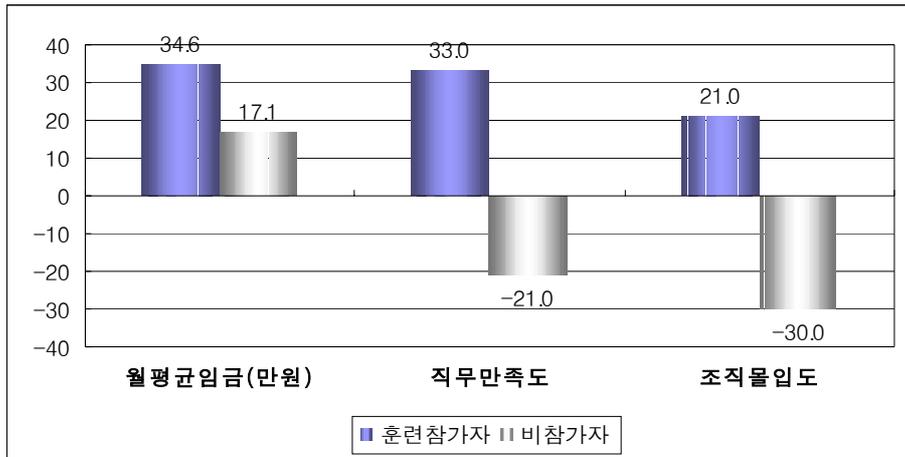
지금까지 직업훈련을 누가 왜 어떻게 받는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업훈련은 노동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는 직업훈련으로 인해 숙련이 향상되면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높아진 기업성과는 근로자에게 임금이란 형태로 보상될 것이다. 다른 한편, 사회적·심리적 측면에서는 업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일에 대한 만족감과 조직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비경제적 성과들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sup>6)</sup>

가장 간단하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직업훈련에 참가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등을 나타내는 표준화된 지표들<sup>7)</sup>과 임금의 평균치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림 4]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훈련참여 여부에 따라 2003년 조사에서 파악된 이상의 노동시장 성과지표가 2004년 조사에서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새로운 분석대상은 2,607명으로 이 중에서 직업훈련참가자는 14.6%(380명)였다<sup>8)</sup>.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집단은 1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17.1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직업훈련에 참가한 집단은 평균적으로 34.6만원이 증가하였다. 직무만족도의 경우에는 훈련참가자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평균 33점 증가했으나, 비참가자는 오히려 21점이 감소하였다. 조직몰입도의 경우에도 훈련참가자는 21점이 증가했지만, 비참가자는 오히려 30점이 감소했다. 요컨대, 직업훈련 실시는 근로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주관적 만족감에도 뚜렷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 
- 6) 임금, 직무만족도나 조직몰입도 등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측정가능한 변수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변수들은 경제학, 사회학, 경영학 등의 분야에서 각각 많이 사용되는 성과변수들이며 노동패널조사에서도 해마다 반복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변수들이므로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한다.
  - 7) 직무만족도 지표로는 Brayfield & Rothe(1951)의 척도에서 5개 문항을 선별한 ‘전반적 직무만족도’ 지표를 사용하였다. 조직몰입도는 Porter et al.(1974)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s)에 기초하여 선별한 5개 항목을 추출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를 구성하는 각 연도별 5개 항목의 척도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평균은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단일항목의 요인점수로 표준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표준점수에 100을 곱하였다.
  - 8) 만일 직업훈련 참가자나 비참가자가 체계적으로 많이 줄어든다면, 앞서의 분석과 매우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앞의 비중(14.1%)과 크게 차이나지 않으므로 이런 문제는 없다고 본다.

〔그림 4〕 훈련참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

(단위 : 만원, 점)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직업훈련이 노동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위에서 살펴본 성과가 순수하게 직업훈련에 의한 성과라고 할 수 없다. 첫째,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개인의 능력이나 특성으로 인해 이들이 더 많은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면 이는 이러한 능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효과가 혼재된 것일 수 있다. 둘째,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집단들은 이미 높은 교육수준을 갖고 노조가 있는 더 큰 기업에 들어가서 더 높은 숙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다. 즉,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해야 보다 순수한 훈련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개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속년수 등과 같은 인적특성과 기업규모, 노조유무와 같은 사업체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비관측된 이질성(unobserved individual effect)’을 통제한 후 교육훈련의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sup>9)</sup>. <표 5>는 이상의 전제하에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한 분석결과이다. 우선, 임금직업훈련

9) 첫번째로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추정한 결과 임금모형과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모두에서 훈련참가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왔다. 임의효과모형은 추정의 효율성이 높으면서 성별과 같은 시간에 변하지 않는 변수들의 효과를 함께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효과와 다른 설명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매우 강한 가정을 갖고 있으므로, 실제로 그러한지를 검증해야 했다. 그러나 ‘개인효과’와 설명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여부를 검증하는 Hausman Specification Test를 실시한 결과, 이들 변수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가설을 기각하였다(부표 참조). 이는 임의효과모형의 추정치가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의효과모형보다 효율성은 낮지만 일치추정량을 도출할 수 있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표 5>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으로 인한 임금상승 효과는 1.4% 정도로 이마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 효과가 객관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time-lag)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양자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sup>10)</sup>.

어쨌든 직업훈련이 주관적 지표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훈련참가자의 직무만족도는 34.2점이 높은데다가 조직몰입도의 경우에도 26.6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직무만족도나 조직몰입도와 같은 주관적·심리적 평가에는 훈련참가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교육훈련의 순효과 추정결과

변 수	모형 4		모형 5		모형 6	
	로그 임금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로그임금(t-1) <sup>11)</sup>	-0.342 **	0.021				
만나이	0.091 *	0.043	0.044	0.118	0.012	0.113
만나이 제곱	-0.002 **	0.000	0.000	0.001	0.001	0.001
<b>훈련참가 더미(참가=1)</b>	<b>0.014</b>	<b>0.015</b>	<b>0.342 **</b>	<b>0.120</b>	<b>0.266 *</b>	<b>0.115</b>
종업원 10~29인	-0.046 *	0.023	0.122	0.171	-0.281 +	0.164
종업원 30~99인	-0.039 +	0.023	0.031	0.165	-0.269 +	0.159
종업원 100~299인	0.001	0.021	0.141	0.158	0.013	0.152
종업원 300~399인	-0.017	0.023	0.060	0.181	-0.099	0.174
종업원 500인 이상	-0.021	0.030	0.074	0.243	0.019	0.233
정부기관, 법인단체 등	-0.021	0.019	0.203	0.154	0.009	0.148
노조더미(노조=1)	0.016	0.016	0.191	0.128	0.180	0.123
근속기간	0.010	0.007	-0.015	0.034	0.017	0.032
근속기간제곱	0.001	0.000				
연도더미	0.154 **	0.034	-0.290 **	0.092	-0.257 **	0.088
상수항	5.389 **	1.387	-1.500	2.579	-1.730	2.481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10) 국내외의 여러 연구결과들은 직업훈련이 임금을 인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패널 자료를 이용한 외국의 결과로는 OECD(2004), 국내의 연구로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김안국(2002)을 참조하기 바란다.
- 11) 임금모형에서는 t-1기의 임금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더 좋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직업훈련 또한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무만족도나 조직몰입도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므로 반드시 좋은 일자리에 있다고 해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교육훈련 실태와 노동성과를 주로 상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근로자의 학력, 직업, 고용형태, 기업의 특성에 따라 훈련기회에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과 같은 계층의 훈련에 대한 잠재적 수요와 실제 참여수준에는 높은 괴리가 존재한다.
- 교육훈련의 내용은 주로 회사에서 실시하는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훈련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해 훈련참가자 중에서 정부지원훈련 참가자의 비중은 약 15%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교육훈련의 임금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직장만족도나 조직몰입도와 같은 사회·심리적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직업훈련 그 자체가 개인의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에 그다지 기여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직업훈련과 자격제도에 기인한 문제일 수도 있고, 분석상의 한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sup>1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됨으로써 생산성 및 임금 향상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더욱 심화되는 경쟁과 기술변화 속에서 교육훈련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기업과 정부 모두에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같은 정책적 노력들은 이런 배경하에서 고무적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훈련기회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들, (실망)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과 같은 이들의 훈련 수요에 훨씬 못미친다는 점이다. 교육훈련이 정책적 관심을 불렀던 이유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실업자들과 사양산업 종사자들을 재교육시켜 성장부문에 투입했던 것임을 상기할 때, 이러한 실태는 현존하는 인적자본 격차가 훈련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12) 근본적인 한계는 개인수준의 자료에서 오는 정보의 누락일 것이다. 특히 교육훈련프로그램과 다른 혁신적 작업장 관행들간의 보완성 효과, 기업외부의 제도적 환경과의 보완성 효과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

## &lt;참고문헌&gt;

- 김안국(2002), 「교육훈련의 경제적 성과」, 『한국노동경제논집』, 제25권, 131~160쪽.
- 김안국 외(2004), 『직업훈련정책평가 계량모형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김주섭(2002), 「직업훈련 참가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연구』, 2002-04.
- Acemoglu, D. & Pischke, J.S.(1998) "Why Do Firms Train? Theory and Evidenc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13, No,1, pp.79~119.
- Gatti(2000), *Competence, Knowledge, and the Labour Market*, Working Paper.
- Hausman, J. A.(1978), "Specification Tests in Econometrics," *Econometrica*, 46, pp.1251~1271.
- OECD(2004), *Employment Outlook*, Paris.
- Wooldridge, J. M.(2001),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The MIT Press.

〈부표〉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추정결과

변 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로그임금		직무만족도		조직 몰입도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로그임금(t-1)	0.596 **	0.012				
성별더미(남성=1)	0.126 **	0.011	-0.379 **	0.074	-0.471 **	0.071
만나이	0.020 **	0.004	-0.057 *	0.023	-0.047 *	0.022
만나이 제곱	0.000 **	0.000	0.001 **	0.000	0.001 *	0.000
<b>훈련참가 더미(참가=1)</b>	<b>0.037 **</b>	<b>0.013</b>	<b>0.640 **</b>	<b>0.110</b>	<b>0.583 **</b>	<b>0.105</b>
종업원 10~29인	-0.077 **	0.015	-0.526 **	0.107	-0.756 **	0.103
종업원 30~99인	-0.038 *	0.016	-0.258 *	0.120	-0.608 **	0.116
종업원 100~299인	-0.012	0.016	-0.316 **	0.121	-0.351 **	0.116
종업원 300~399인	-0.014	0.018	-0.274 +	0.144	-0.452 **	0.138
종업원 500인 이상	0.006	0.025	0.018	0.208	0.063	0.200
정부기관, 법인단체 등	0.029 *	0.014	0.177 +	0.118	0.252 *	0.114
고졸 미만	0.105 +	0.061	0.001	0.398	0.258	0.386
고졸	0.206 **	0.062	0.712 *	0.405	0.903 **	0.392
대재 및 중퇴	0.190 **	0.066	0.980 *	0.437	1.071 **	0.424
전문대졸	0.253 **	0.063	1.398 **	0.419	1.589 **	0.406
4년제 대졸 이상	0.356 **	0.063	2.077 **	0.411	2.366 **	0.398
노조더미(노조=1)	0.041 **	0.012	0.321 **	0.102	0.474 **	0.098
근속기간	0.011 **	0.002	0.071 **	0.007	0.089 **	0.007
근속기간제곱	0.000	0.000				
연도더미	0.025 **	0.007	-0.313 **	0.056	-0.254 **	0.054
상수항	1.342 **	0.095	0.560	0.593	0.179	0.574
Hausman Test(Chi-2)	224.1 **	0.000	59.0 **	0.000	50.6 **	0.000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재정지출 수준 국제비교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지난 6월, 소속 국가들의 고용현황 등을 다루는 「Employment Outlook, 2005」를 발표
  - 이에 따르면 2004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노동시장 재정지출 비중은 0.36%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2년 및 2003년과 비교하여 소폭 증가한 수치임.
  - 노동시장 재정지출을 세부내역별로 보면, 실직보조금의 비중이 0.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공공 고용지원서비스 등 나머지 분야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한국의 GDP대비 노동시장 재정지출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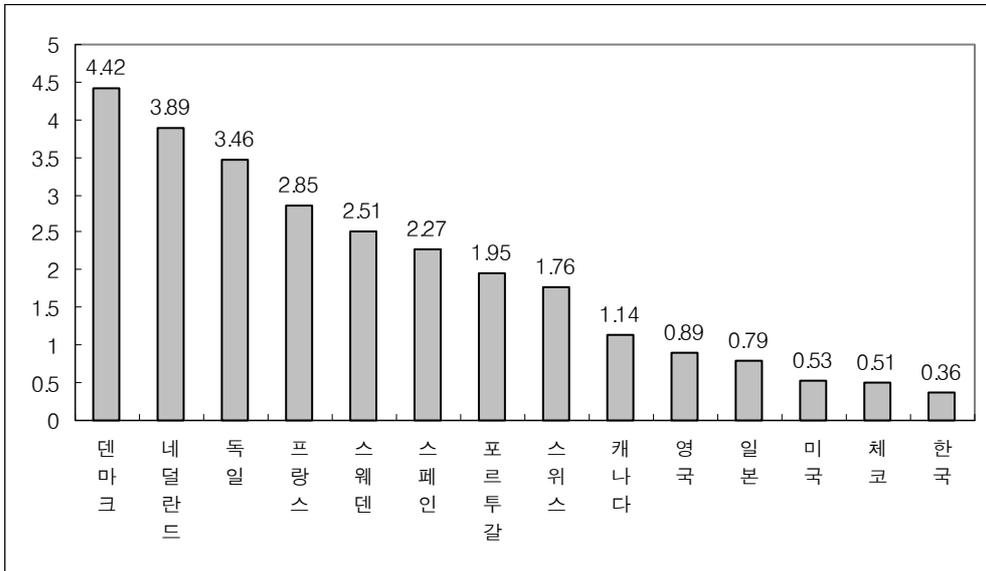
	2002	2003	2004
전 체	0.34	0.30	0.36
공공 고용지원서비스(PES and administration)	0.04	0.05	0.05
직업훈련(Training)	0.05	0.05	0.06
고용 인센티브(Employment incentives)	0.01	0.01	0.01
장애인 고용촉진(Integration of the disabled)	0.02	0.03	0.03
직접적 고용창출(Direct job creation)	0.08	0.01	0.01
창업 인센티브(Start-up incentives)	0.01	0.01	0.01
실직보조금(Out-of-work income maintenance and support)	0.12	0.14	0.19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 한국의 GDP대비 노동시장 재정지출 비중, OECD국가들 중 가장 낮아
  - GDP대비 노동시장 재정지출의 비중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은 비교대상 26개 국가들 중 가장 낮은 0.36%를 기록
  - 노동시장 재정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국가들은 덴마크,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로 나타났으며, 미국 및 일본은 우리나라와 더불어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OECD 주요국가들의 GDP대비 노동시장 재정지출 비중(2004년)〉

(단위 : %)



주 : 덴마크, 독일,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은 2003년도 수치임.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동향

#### ◆ 노사분규 전년동기대비 대폭 감소

○ 2005년 7월 20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함(표 1 참조).

- 분규발생건수는 198건, 분규참가자수는 31,668명, 근로손실일수는 224,993일로 각각 전년동기 수치인 371건, 148,561명, 700,629일보다 크게 감소
- 이러한 감소는 임·단협 시기가 뒤로 늦춰지면서 생긴 현상임.

〈표 1〉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단위: 개소, 명, 일)

	2003. 7. 20	2004. 7. 20	2005. 7. 20
노사분규발생건수(개소)	237	371	198
분규참가자수(명)	96,450	148,561	31,668
근로손실일수(일)	566,494	700,629	224,993

주: 당해년도의 누적치이며, 분규발생건수는 사업장 기준임.  
자료: 노동부.

### 노동정책 동향

#### ◆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노동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기반 조성 등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용정책 대상인 ‘근로자’ 개념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포함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시책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 고용촉진 등 시책 강구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노사단체 등 고용촉진 등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인력수급 전망을 공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부장관과 협의토록 함.
  - 국가가 사회적 일자리(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고용정보 수집·제공, 직업조사연구, 인력의 수급동향 작성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함.
  - 사업주 및 노동조합 등의 책무에 ‘고용평등 촉진 노력의무’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능력발휘에 장애가 되는 기업 등의 차별적 고용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명확히 하며,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 직업훈련 대상자 모집 등의 분야에서도 성별 등을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토록 함.

###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 임단협 교섭 본격 돌입

- 양대노총 산하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본격적 임단협 교섭 및 투쟁에 돌입
  - 한국노총은 연일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노동정책기조를 비판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비정규보호입법 쟁취, 노동부장관 퇴진을 위해 민주노총과 연대할 것을 천명하면서 7월 7일 대규모 총파업 집회 개최.
  - 민주노총은 산하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임단협 투쟁에 돌입함.
    - 금속노조는 지난 3개월간의 중앙교섭 끝에 지난 7월 19일,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과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 금속산업 최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

- 활동 보장, 우리쌀 사용 등 큰 틀에서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
  - 보건의료노조는 주5일제 전면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보장, 보건의료 산업 최저임금, 보건수당, 임금인상률 등의 쟁점을 놓고 7월 20일부터 전면파업 돌입, 7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결정으로 산별파업 종료됨.
  - 한편 양대노총은 정부의 반노동자적 노동정책 전면수정과 노동부장관 퇴진, 노동위원회 전면개편 등을 요구하며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직을 동반 사퇴함.
- 경총, 양대노총에 총파업 중단 요구
  - 경총은 성명을 통해 양대노총에게 불법정치총파업의 중단을 주장하며 정부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의 표출을 요구함.
  - 특히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었음에도 파업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의 행위는 그 불법성이 명확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을 주장

◆ 최저임금 재심의 관련, 노동부-양대노총 공방

- 양대노총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 양대노총은 지난 6월 3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노동자위원 9명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노사단체의 최종안을 놓고 표결하여 사측 최종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불법임을 선언
  - 한편 내용적으로도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기존의 저임금 구조를 온존시킬 뿐이라며 재심의를 촉구함.
- 노동부 재심의 요청 거부
  - 노동부는 근로자위원 등이 사퇴서를 제출했어도 후임자 위촉 때까지는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고 표결 선포 당시 이들이 출석하고 있었던 만큼 기권처리된 것이 절차상 적법하다고 반박
  -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중 주40시간 단축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1.4%에 불과하고 종전 임금수준은 보전되므로 삭감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힘.

주요노동일지

(2005. 6. 21~7. 20)

년·월·일	노동정책	노사단체	기업 및 노동조합
2005. 6. 21		· 양대노총: 한국노총 총주지부장 사망관련 결의대회 개최	· 민주당시노조: 서울지역 13개사 대상 쟁의행위 신고
6. 22		· 금속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6. 22~6. 24)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6. 23		· 양대노총: 비정규직법안 국회 강행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 공공연맹: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노·정 협약서 체결	· 언론노조 일간스포츠지부: 정리하고 철회 등 요구, 파업 계속(6. 22~)
6. 24		· 중앙노동위원회: 금속노조 중앙교섭 조정중지 결정	· 금융노조 한미은행지부: 총파업 1주년 기념 및 4.20 인사테러 규탄대회 개최
6. 27		· 충북시민사회단체 공대위: 하이닉스-매그나칩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 및 천막단식농성 돌입	· 충남공공환경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 전면파업 돌입
6. 29		· 금속노조: 100개소 12,000명 1차 4시간 시한부파업 돌입	· 현대자동차노조: 불법파견 관련 특별교섭요구, 무산
6. 30		· 양대노총: 요구사항 및 투쟁계획 발표 공동기자회견 개최	· 대우자동차노조: 대의원대회 개최, 노동쟁의 조정신청(7. 1) 결의
7. 5		· 민주노총: 7.20 이후 대화중단 및 전면투쟁 돌입 기자회견 개최	· 전국항운노련: 전국하역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개최
7. 6		· 금속노조: 79개소 10,600명 2차 4시간 시한부파업 돌입	
7. 7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 1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7. 8)	· 한국노총: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7. 8		· 금속노조: 96개소 12,600명 3차 4시간 시한부파업 돌입	·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 임단협 잠정합의
7. 12		· 금속노조: 76개소 10,800명 4차 4시간 시한부파업 돌입	·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임단협 관련 전면파업 돌입
7. 13		· 금속노조: 66개소, 10,600명 5차 6시간 파업 돌입	· 고려시멘트노조: 임단협 관련 시한부(~7. 14) 전면파업 돌입
7. 15		· 금속노조: 55개소, 9,900명 6차 4시간 파업 돌입	· 대우자동차노조: 임금교섭 관련 쟁의행위 결의
7. 19		· 금속노조: 산별중앙교섭, 쟁점사항 잠정합의	
7. 20		· 보건의료노조: 파업돌입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전면파업 계속(7. 18~)

〈표 1-1〉 주요 거시경제지표(2000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십억원, 전년동기대비 %)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최종 소비지출	총 고 정 자본형성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서비스업 <sup>1)</sup>			
실 질 미 액	1997	523,034.7	544,131.5	115,274.3	53,667.3	10,778.6	257,324.0	363,911.2	192,033.8	
	1998	487,183.5	499,004.0	106,173.0	48,295.2	10,742.0	247,182.1	325,361.8	147,991.7	
	1999	533,399.3	545,970.1	129,287.5	44,458.6	11,708.4	263,424.6	357,016.3	160,336.3	
	2000	578,664.5	576,160.0	151,243.0	42,926.7	13,212.5	279,605.0	382,398.2	179,907.7	
	2001	600,865.9	592,408.5	154,503.3	45,279.0	14,169.1	293,128.9	401,191.4	179,576.3	
	2002	642,748.1	633,842.1	166,242.9	46,529.4	15,258.0	316,104.8	431,484.2	191,464.6	
	2003	662,654.8	645,787.6	175,417.0	50,548.7	15,981.3	321,011.9	430,077.0	199,047.9	
	2004	693,424.0	670,056.8	195,410.4	51,410.5	16,954.4	325,120.4	430,769.0	202,927.5	
	2000.	2/4	144,171.4	142,942.8	37,838.2	11,681.4	3,200.3	69,542.9	93,900.6	47,819.5
		3/4	144,350.1	143,441.3	38,088.3	11,338.5	3,320.7	69,825.0	94,829.4	46,053.3
		4/4	156,759.7	155,274.2	39,207.9	12,238.6	3,222.7	72,334.8	99,709.9	47,895.1
	2001.	1/4	138,047.3	136,026.1	37,329.3	7,800.4	4,000.4	70,831.8	96,068.8	36,714.4
		2/4	149,503.6	146,555.5	39,382.8	11,828.2	3,326.2	72,580.0	97,856.4	46,148.2
		3/4	149,311.5	147,117.0	38,085.9	12,316.5	3,437.0	73,284.1	100,245.4	45,842.2
	2002.	4/4	164,003.6	162,710.0	39,705.2	13,333.9	3,405.5	76,432.9	107,020.9	50,871.6
		1/4	147,076.1	145,751.7	39,253.9	8,360.7	4,190.9	75,744.3	105,129.6	39,528.2
		2/4	159,990.3	156,554.3	41,828.8	12,145.1	3,567.2	78,628.4	106,140.3	49,501.8
	2003.	3/4	159,407.1	157,215.8	40,909.0	11,724.1	3,771.1	79,708.3	107,562.3	46,947.6
		4/4	176,274.6	174,320.2	44,251.1	14,299.5	3,728.8	82,023.9	112,652.0	55,487.0
		1/4	152,625.0	147,451.2	41,523.2	9,055.0	4,490.1	77,205.0	106,432.5	41,374.9
2004.	2/4	163,536.1	158,724.4	43,222.9	13,214.4	3,868.7	79,210.4	105,490.4	51,558.9	
	3/4	163,003.9	159,972.0	42,624.0	12,652.3	3,790.7	80,622.2	106,526.2	48,225.6	
	4/4	183,489.9	179,640.0	48,046.9	15,627.1	3,831.9	83,974.3	111,627.9	57,888.6	
2005.	1/4	160,658.2	154,399.5	46,585.1	9,501.5	4,773.0	78,372.3	105,849.7	42,283.4	
	2/4	172,588.5	166,220.0	49,155.5	13,699.3	4,123.7	80,565.9	105,877.1	53,792.9	
	3/4	170,629.1	165,752.0	47,757.9	12,926.9	4,070.9	81,674.4	106,437.4	49,680.1	
4/4	189,548.2	183,685.2	51,911.8	15,282.8	3,997.8	84,508.1	112,604.7	57,171.1		
1/4	164,987.7	155,145.2	49,064.4	9,213.3	5,075.6	80,103.7	107,655.2	42,305.4		
성 장 률	1997	4.7	2.7	4.9	2.8	10.0	5.1	3.2	-2.3	
	1998	-6.9	-8.3	-7.9	-10.0	-0.3	-3.9	-10.6	-22.9	
	1999	9.5	9.4	21.8	-7.9	9.0	6.6	9.7	8.3	
	2000	8.5	5.5	17.0	-3.4	12.8	6.1	7.1	12.2	
	2001	3.8	2.8	2.2	5.5	7.2	4.8	4.9	-0.2	
	2002	7.0	7.0	7.6	2.8	7.7	7.8	7.6	6.6	
	2003	3.1	1.9	5.5	8.6	4.7	1.6	-0.3	4.0	
	2004	4.6	3.8	11.4	1.7	6.2	1.3	0.2	1.9	
	2000.	2/4	9.4	6.1	17.7	-3.1	14.3	6.7	8.7	14.8
		3/4	8.2	6.1	19.2	-2.2	11.8	4.4	5.8	10.8
		4/4	4.3	1.0	8.1	-2.7	7.6	4.5	4.0	3.5
	2001.	1/4	3.5	1.1	3.4	1.7	15.3	4.3	2.2	-3.7
		2/4	3.7	2.5	4.1	1.3	3.9	4.4	4.2	-3.5
		3/4	3.4	2.6	0.0	8.6	3.5	5.0	5.7	-0.5
	2002.	4/4	4.6	4.8	1.3	8.9	5.7	5.7	7.3	6.2
		1/4	6.5	7.1	5.2	7.2	4.8	6.9	9.4	7.7
		2/4	7.0	6.8	6.2	2.7	7.2	8.3	8.5	7.3
	2003.	3/4	6.8	6.9	7.4	-4.8	9.7	8.8	7.3	2.4
		4/4	7.5	7.1	11.4	7.2	9.5	7.3	5.3	9.1
		1/4	3.8	1.2	5.8	8.3	7.1	1.9	1.2	4.7
2004.	2/4	2.2	1.4	3.3	8.8	8.5	0.7	-0.6	4.2	
	3/4	2.3	1.8	4.2	7.9	0.5	1.1	-1.0	2.7	
	4/4	4.1	3.1	8.6	9.3	2.8	2.4	-0.9	4.3	
2005.	1/4	5.3	4.7	12.2	4.9	6.3	1.5	-0.5	2.2	
	2/4	5.5	4.7	13.7	3.7	6.6	1.7	0.4	4.3	
	3/4	4.7	3.6	12.0	2.2	7.4	1.3	-0.1	3.0	
4/4	3.3	2.3	8.0	-2.2	4.3	0.6	0.9	-1.2		
1/4	2.7	0.5	5.3	-3.0	6.3	2.2	1.7	0.1		

주 : 1) 서비스업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포함.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표 1-2〉 생산지수, 대외거래, 환율 및 물가지수

(2000=100.0)

(단위 : 백만달러, 원)

	생산지수		국제수지			대미 기준환율	물가지수	
	산업	서비스	경상수지	수출(FOB)	수입(CIF)	평균자료	생산자	소비자
1999	85.6	91.9	24,521.9	143,685	119,752	1,189.5	98.0	97.8
2000	100.0	100.0	12,250.8	172,268	160,481	1,130.6	100.0	100.0
2001	100.7	106.1	8,032.6	150,439	141,098	1,290.8	99.5	104.1
2002	108.8	116.1	5,393.9	162,471	152,126	1,251.2	99.2	106.9
2003	114.2	117.2	11,949.5	193,817	178,827	1,191.9	101.4	110.7
2004	126.1	117.9	27,612.8	253,845	224,463	1,144.9	107.6	114.7
2001. 4/4	104.4	111.4	442.2	36,349	34,342	1,291.8	98.1	104.5
2002. 1/4	103.6	111.2	1,400.6	35,656	33,788	1,319.6	98.3	105.5
2/4	109.0	116.9	1,569.7	40,252	37,192	1,270.7	99.7	106.9
3/4	106.2	115.9	547.2	41,255	38,884	1,196.3	99.2	107.4
4/4	116.1	120.3	1,876.4	45,307	42,262	1,221.0	99.7	107.9
2003. 1/4	109.9	113.3	-1,556.4	43,036	44,223	1,201.1	101.2	109.8
2/4	112.4	118.0	2,572.9	46,053	41,711	1,209.8	101.0	110.5
3/4	109.4	116.5	3,669.7	47,828	42,971	1,175.8	101.1	110.8
4/4	125.0	121.0	7,263.3	56,900	49,922	1,181.3	102.3	111.7
2004. 1/4	122.3	115.7	6,130.5	59,299	52,798	1,171.9	105.5	113.4
2/4	126.7	119.1	7,030.4	63,975	55,270	1,161.9	107.3	114.2
3/4	121.9	115.9	7,098.4	61,634	54,709	1,155.2	108.5	115.6
4/4	133.4	120.8	7,353.5	68,937	61,688	1,094.0	108.9	115.5
2005. 1/4	127.0	116.3	5,950.1	66,790	60,414	1,022.5	109.0	117.0
2002. 9	105.0	117.4	315.4	13,901	12,992	1,208.5	99.4	108.0
10	116.9	118.9	1,470.9	15,085	13,817	1,241.1	99.6	107.7
11	116.5	118.4	1,137.8	15,197	13,993	1,211.9	99.8	107.8
12	115.0	123.6	-732.3	15,026	14,452	1,208.9	99.8	108.3
2003. 1	109.9	113.7	-467.8	14,320	14,495	1,179.3	100.5	109.0
2	103.3	107.5	32.2	13,337	13,858	1,191.2	101.1	109.6
3	116.4	118.7	-1,120.8	15,379	15,870	1,232.4	102.1	110.9
4	113.6	118.4	-209.4	15,721	14,759	1,232.8	101.5	110.7
5	111.4	118.0	1,184.1	14,676	13,524	1,199.8	101.0	110.5
6	112.2	117.7	1,598.2	15,656	13,428	1,194.0	100.5	110.2
7	108.1	116.9	345.7	15,432	14,898	1,181.6	100.7	110.1
8	108.0	115.1	1,231.6	15,375	13,541	1,178.4	101.1	110.6
9	112.0	117.6	2,092.4	17,021	14,531	1,166.2	101.5	111.6
10	125.8	119.0	2,518.9	18,930	16,537	1,166.3	101.8	111.7
11	122.0	118.8	2,858.3	18,242	15,761	1,184.9	102.2	111.5
12	127.3	125.3	1,886.1	19,729	17,625	1,193.0	102.9	112.0
2004. 1	115.1	113.7	2,338.4	18,987	16,209	1,184.3	104.3	112.7
2	121.3	111.7	2,881.4	19,137	17,469	1,166.7	105.6	113.2
3	130.5	121.7	910.7	21,175	19,120	1,166.3	106.6	114.3
4	126.5	118.9	1,142.5	21,483	18,830	1,150.9	107.1	114.3
5	126.9	118.7	3,708.4	20,834	17,895	1,177.4	107.4	114.2
6	126.7	119.6	2,179.5	21,657	18,544	1,158.7	107.3	114.2
7	122.7	116.2	3,246.6	21,004	18,390	1,157.7	107.7	114.9
8	119.8	114.3	1,039.0	19,799	18,124	1,159.0	108.7	115.9
9	123.2	117.3	2,812.8	20,831	18,193	1,148.0	109.1	115.9
10	133.1	118.1	2,418.6	22,663	20,408	1,144.0	109.2	115.9
11	134.1	118.3	2,939.7	23,077	20,312	1,091.2	109.2	115.2
12	133.1	126.1	1,995.2	23,197	20,968	1,050.9	108.4	115.4
2005. 1	131.4	114.6	3,866.2	22,448	19,409	1,038.2	108.6	116.2
2	112.4	111.0	969.3	20,398	18,348	1,022.4	109.0	116.9
3	136.9	123.6	1,114.6	23,944	23,657	1,007.5	109.5	117.8
4	131.3	121.0	-975.7	22,922	21,199	1,010.9	110.2	117.9
5	132.3	121.6	1,424.4	23,175	21,171	1,002.2	109.6	117.7
6	-	-	-	23,910	21,188	1,010.9	109.0	117.3

주 : 1) 경상수지는 한국은행 집계(소유권 이전기준), 수출·수입은 통관기준(한국무역협회 집계).

2) 대미 기준환율은 평균자료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생산자물가 동향」.

통계청 KOSIS, 산업활동 DB, 「소비자물가 동향」.

〈표 1-3〉 주요기관의 2005년 하반기 경제전망

1. 한국은행(2005.7)

(단위 : %, 원/달러)

주요지표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연간	1/4분기	2/4분기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5.4	3.9	4.6	2.7	3.2	3.0	4.5	3.8
민간소비	-0.9	-0.1	-0.5	1.4	2.5	1.9	3.5	2.7
설비투자	3.0	4.6	3.8	3.1	2.4	2.8	6.4	4.6
건설투자	4.1	-1.3	1.1	-2.9	0.0	-1.2	2.8	1.0
수 출	38.4	24.7	31.0	12.7	9.4	11.0	10.4	10.7
수 입	25.8	25.3	25.5	14.4	15.1	14.7	16.0	15.4
소비자물가	3.3	3.8	3.6	3.2	3.0	3.1	2.8	3.0

주 : 수출 및 수입은 집계기준의 차이로 일치하지 않음

2. 한국개발연구원(2005.7)

(단위 : %, 원/달러)

주요지표	2004	2005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경제성장률	4.6	2.7	3.4	4.3	4.6	3.8
민간소비	-0.5	1.4	2.8	3.6	4.3	3.0
설비투자	3.8	3.1	5.2	8.1	9.0	6.3
건설투자	1.1	-2.9	0.2	1.5	4.6	1.2
수 출	30.6	12.9	9.3	12.2	8.9	10.7
수 입	25.2	13.8	14.9	19.8	16.9	16.4
소비자물가	3.6	3.2	3.0	2.5	3.5	3.0
실업률	3.5	3.9	3.4	3.5	3.5	3.6

3. 현대경제연구원(2005.6)

(단위 : %, 원/달러)

주요지표	2004	2005	
	상반기	1/4분기	연간
경제성장률	4.6	2.7	3.6~4.0
민간소비	-0.5	1.4	2.5
설비투자	3.8	3.1	4.3
건설투자	1.1	-2.9	2.0
수 출	31.0	12.8	9.5
수 입	25.5	14.1	15.5
소비자물가	3.6	3.2	3.4
대미환율	1,145	1,022	1,010~1,020
실업률	3.5	3.9	4.0

〈표 2-1〉 주요 노동시장 지표

(단위 : 천명, 천원, 시간, %)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고용률	임금근로자비율
1998	35,347	21,428	60.6	19,938	1,490	7.0	56.4	61.7
1999	35,757	21,666	60.6	20,291	1,374	6.3	56.7	62.4
2000	36,186	22,134(22,069)	61.2(61.0)	21,156	979(913)	4.4(4.1)	58.5(58.5)	63.2
2001	36,579	22,471(22,417)	61.4(61.3)	21,572	899(845)	4.0(3.8)	59.0(59.0)	63.3
2002	36,963	22,921(22,877)	62.0(61.9)	22,169	752(708)	3.3(3.1)	60.0(60.0)	64.0
2003	37,3403	22,957(22,916)	61.5(61.4)	22,139	818(777)	3.6(3.4)	59.3(59.3)	65.1
2004	7,717	23,417(23,370)	62.1(62.0)	22,557	860(813)	3.7(3.5)	59.8(59.8)	66.0
2002.2/4	36,919	22,923(23,112)	62.1(62.6)	22,423	746(689)	3.3(3.0)	60.1(60.7)	63.6
3/4	37,012	22,961(23,067)	62.0(62.3)	22,416	731(652)	3.2(2.8)	60.1(60.6)	63.5
4/4	37,097	22,936(22,989)	61.8(62.0)	22,326	716(663)	3.1(2.9)	59.9(60.2)	64.4
2003.1/4	37,193	22,913(22,439)	61.6(60.3)	21,633	757(806)	3.3(3.6)	59.6(58.2)	65.5
2/4	37,297	22,868(23,055)	61.3(61.8)	22,303	805(751)	3.5(3.3)	59.2(59.8)	65.1
3/4	37,391	22,971(23,050)	61.4(61.6)	22,295	846(756)	3.7(3.3)	59.2(59.6)	64.4
4/4	37,476	23,096(23,119)	61.6(61.7)	22,325	876(794)	3.8(3.4)	59.3(59.6)	65.3
2004.1/4	37,577	23,439(22,982)	62.4(61.2)	22,104	832(878)	3.5(3.8)	60.2(58.8)	66.1
2/4	37,672	23,354(23,531)	62.0(62.5)	22,744	845(787)	3.6(3.3)	59.7(60.4)	65.9
3/4	37,7713	23,369(23,434)	61.9(62.0)	22,647	880(787)	3.8(3.4)	59.5(60.0)	65.7
4/4	7,848	23,512(23,534)	62.1(62.2)	22,733	884(802)	3.8(3.4)	59.8(60.1)	66.4
2005.1/4	38,010	23,614(23,159)	62.1(60.9)	22,247	876(912)	3.7(3.9)	59.8(58.5)	66.8
2/4	38,275	23,778(23,957)	62.1(62.6)	23,126	890(831)	3.7(3.5)	59.8(60.4)	66.4
2003. 1	37,161	22,952(22,352)	61.8(60.1)	21,562	765(789)	3.3(3.5)	59.7(58.0)	65.6
2	37,193	22,907(22,320)	61.6(60.1)	21,498	747(822)	3.3(3.7)	59.6(57.8)	65.3
3	37,226	22,880(22,644)	61.5(60.8)	21,837	758(807)	3.3(3.6)	59.4(58.7)	65.6
4	37,262	22,798(22,912)	61.2(61.5)	22,156	771(756)	3.4(3.3)	59.1(59.5)	65.4
5	37,300	22,890(23,114)	61.4(62.0)	22,370	807(744)	3.5(3.2)	59.2(60.0)	64.9
6	37,330	22,916(23,138)	61.4(62.0)	22,383	837(755)	3.7(3.3)	59.1(60.0)	64.9
7	37,366	23,008(23,238)	61.6(62.2)	22,456	850(781)	3.7(3.4)	59.3(60.1)	65.0
8	37,390	22,982(22,883)	61.5(61.2)	22,126	845(756)	3.7(3.3)	59.2(59.2)	63.9
9	37,418	22,923(23,031)	61.3(61.6)	22,301	843(730)	3.7(3.2)	59.0(59.6)	64.2
10	37,448	23,026(23,218)	61.5(62.0)	22,452	875(765)	3.8(3.3)	59.2(60.0)	64.5
11	37,475	23,133(23,218)	61.7(62.0)	22,425	896(792)	3.9(3.4)	59.3(59.8)	65.2
12	37,506	23,130(22,922)	61.7(61.1)	22,096	857(825)	3.7(3.5)	59.4(58.9)	66.2
2004. 1	37,546	23,370(22,790)	62.2(60.7)	21,936	828(854)	3.5(3.7)	60.0(58.4)	66.1
2	37,577	23,476(22,906)	62.5(61.0)	22,005	833(900)	3.5(3.9)	60.3(58.6)	66.1
3	37,608	23,470(23,249)	62.4(61.8)	22,371	833(879)	3.5(3.8)	60.2(59.5)	66.1
4	37,639	23,385(23,482)	62.1(62.4)	22,673	840(809)	3.6(3.4)	59.9(60.2)	65.9
5	37,670	23,314(23,527)	61.9(62.5)	22,738	855(788)	3.7(3.3)	59.6(60.4)	65.7
6	37,707	23,364(23,585)	62.0(62.5)	22,822	840(763)	3.6(3.2)	59.7(60.5)	66.0
7	37,744	23,349(23,564)	61.9(62.4)	22,750	890(814)	3.8(3.5)	59.5(60.3)	66.2
8	37,771	23,290(23,182)	61.7(61.4)	22,382	881(801)	3.8(3.5)	59.3(59.3)	65.2
9	37,798	23,467(23,556)	62.1(62.3)	22,809	870(747)	3.7(3.2)	59.8(60.3)	65.7
10	37,825	23,491(23,673)	62.1(62.6)	22,901	880(772)	3.7(3.3)	59.8(60.5)	65.8
11	37,848	23,501(23,581)	62.1(62.3)	22,802	883(779)	3.8(3.3)	59.8(60.3)	66.3
12	37,870	23,545(23,349)	62.2(61.7)	22,495	889(855)	3.8(3.7)	59.8(59.4)	67.2
2005. 1	37,923	23,572(22,982)	62.2(60.6)	22,078	898(904)	3.8(3.9)	59.8(58.2)	67.0
2	38,011	23,579(23,011)	62.0(60.5)	22,086	867(925)	3.7(4.0)	59.7(58.1)	66.7
3	38,097	23,692(23,483)	62.2(61.6)	22,576	863(907)	3.6(3.9)	59.9(59.2)	66.6
4	38,184	23,689(23,791)	62.0(62.3)	22,934	880(857)	3.7(3.6)	59.7(60.1)	66.5
5	38,274	23,773(24,009)	62.1(62.7)	23,199	870(811)	3.7(3.4)	59.8(60.8)	66.4
6	38,368	23,870(24,071)	62.2(62.7)	23,246	919(825)	3.8(3.4)	59.8(60.6)	66.3

주 : 1)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2)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임금근로자 비율=임금근로자/취업자×100.

3) 2000년부터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바뀜, ( )안은 '구직기간 1주'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2〉 경제활동참가율(성별·연령대별)

(단위 : %)

	남 자						여 자					
	전 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 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99	74.4	50.5	95.7	93.9	85.8	50.7	47.6	41.7	53.7	63.0	53.9	29.5
2000	74.2	50.5	95.5	93.6	84.0	49.6	48.6	43.6	53.9	64.1	53.3	30.1
2001	74.3	50.3	95.1	93.6	83.6	50.5	49.3	45.4	54.4	64.0	53.9	30.0
2002	75.0	50.5	95.1	93.7	84.8	51.7	49.8	46.6	54.6	64.0	54.3	30.1
2003	74.7	49.7	95.0	94.0	85.6	48.6	49.0	47.0	53.9	63.0	52.6	27.8
2004	75.0	49.9	94.6	93.8	85.6	49.7	49.9	48.5	54.5	64.2	53.2	28.3
2001.3/4	74.9	50.4	95.2	94.0	84.4	52.6	49.9	45.3	54.0	64.1	55.1	32.7
4/4	74.7	49.9	95.2	94.2	84.2	51.5	49.8	45.8	54.8	64.1	55.0	30.5
2002.1/4	73.9	51.3	94.5	92.9	82.1	47.9	48.5	46.9	53.7	63.1	51.8	26.1
2/4	75.4	50.5	95.4	94.1	85.4	53.3	50.8	46.5	55.8	64.7	56.0	32.4
3/4	75.4	50.4	95.2	93.6	85.8	53.6	50.2	46.5	54.6	64.0	55.1	32.1
4/4	75.1	49.7	95.3	93.9	85.9	52.1	49.7	46.4	54.1	64.2	54.1	29.9
2003.1/4	74.0	50.1	94.8	93.6	84.3	45.8	47.6	47.2	53.8	61.4	49.4	24.0
2/4	75.0	49.1	95.4	94.5	86.4	49.6	49.6	46.5	54.7	63.7	54.0	29.3
3/4	74.8	49.6	94.8	94.0	85.7	49.6	49.5	47.4	53.5	62.7	53.6	29.8
4/4	75.0	50.0	95.1	93.9	85.8	49.4	49.3	46.9	53.7	63.9	53.4	28.2
2004.1/4	74.5	50.7	94.7	93.1	84.1	47.2	48.9	48.5	53.9	63.3	51.6	25.2
2/4	75.3	49.7	94.8	94.1	86.1	51.1	50.6	48.4	55.3	64.8	53.9	30.0
3/4	74.9	49.3	94.4	93.8	85.7	50.4	50.2	48.8	54.3	64.0	53.2	29.6
4/4	75.2	50.0	94.4	94.2	86.5	50.0	50.1	48.3	54.5	64.6	54.0	28.3
2005.1/4	74.1	49.8	94.2	92.8	84.3	47.1	48.8	49.3	53.5	63.1	51.9	24.5
2/4	75.3	48.7	94.8	94.3	86.5	51.8	50.8	49.1	54.6	65.0	55.0	30.4
2002. 11	75.3	49.7	95.3	94.0	86.2	52.6	49.8	46.3	54.1	64.2	54.7	30.6
12	74.8	50.4	95.2	93.7	84.6	49.9	48.6	47.0	53.2	63.6	51.8	26.6
2003. 1	73.9	50.5	94.7	93.3	84.1	45.0	47.4	47.5	53.7	60.9	48.9	23.3
2	73.9	50.4	94.6	93.5	83.6	45.2	47.1	47.5	53.2	60.8	48.3	22.8
3	74.3	49.3	95.1	93.9	85.2	47.2	48.3	46.5	54.4	62.5	51.0	25.7
4	74.8	49.2	95.3	94.2	86.1	48.9	49.2	46.1	54.5	63.5	53.5	28.2
5	75.1	49.1	95.5	94.5	86.7	49.9	49.8	46.3	54.9	64.1	54.4	29.7
6	75.1	49.0	95.4	94.6	86.5	50.1	49.9	47.0	54.7	63.6	54.3	29.9
7	75.4	51.3	95.1	94.2	85.8	49.6	50.0	48.7	54.1	62.9	54.0	29.7
8	74.5	49.3	94.5	93.7	85.3	49.0	49.0	47.4	52.7	62.0	53.1	29.3
9	74.6	48.1	94.8	94.2	86.0	50.2	49.4	46.0	53.9	63.4	53.8	30.6
10	75.1	49.1	95.2	94.2	86.3	51.1	49.8	46.3	54.0	64.3	54.5	30.6
11	75.2	49.9	95.0	94.2	86.0	50.4	49.6	46.7	54.2	64.3	53.9	29.3
12	74.8	51.1	95.1	93.5	85.1	46.9	48.4	47.9	52.9	63.3	51.8	24.7
2004. 1	74.2	51.7	94.5	92.7	83.4	45.4	48.2	48.7	53.1	62.7	51.0	23.5
2	74.2	50.6	94.6	92.9	83.4	46.8	48.7	48.8	54.1	63.0	51.4	24.2
3	75.0	49.8	95.1	93.8	85.4	49.5	49.7	48.1	54.5	64.3	52.5	27.8
4	75.2	49.4	95.0	94.1	86.1	51.0	50.6	48.0	55.6	65.1	53.8	29.8
5	75.3	49.9	94.8	94.0	85.8	51.2	50.6	48.7	55.0	64.8	53.8	29.9
6	75.4	49.8	94.7	94.2	86.4	51.2	50.6	48.6	55.4	64.4	54.0	30.3
7	75.4	51.0	94.5	94.2	85.3	50.4	50.5	50.1	54.5	64.0	53.3	29.2
8	74.4	48.2	94.3	93.4	85.5	49.9	49.3	47.8	53.3	63.1	52.3	29.4
9	74.9	48.7	94.5	93.9	86.2	50.9	50.7	48.6	55.1	65.0	53.9	30.2
10	75.4	49.8	94.3	94.4	86.7	51.5	50.7	48.0	54.8	65.0	54.7	30.7
11	75.4	50.0	94.4	94.3	86.9	50.6	50.2	48.1	54.5	64.8	54.3	29.1
12	74.9	50.2	94.5	93.9	86.1	47.8	49.4	49.0	54.3	64.1	53.0	25.3
2005. 1	73.9	50.4	94.1	92.5	83.5	46.0	48.4	49.6	53.3	62.4	51.2	23.4
2	73.8	49.9	93.9	92.5	83.7	46.3	48.3	49.4	53.2	62.8	50.6	23.6
3	74.6	49.1	94.6	93.6	85.6	48.8	49.6	49.0	53.9	64.0	53.7	26.6
4	75.2	48.7	94.7	94.0	86.7	51.1	50.4	48.9	54.4	64.7	54.5	29.3
5	75.3	48.6	94.8	94.4	86.4	52.0	51.0	49.2	54.8	65.3	55.1	30.7
6	75.4	48.9	94.7	94.5	86.4	52.3	51.0	49.0	54.5	65.2	55.4	31.1

주 : 2000년부터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바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3〉 경제활동참가율(성별·교육수준별)

(단위: %)

	남 자				여 자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1999	57.3	79.0	93.0	88.5	42.9	48.7	64.1	56.9
2000	57.4	78.4	91.1	87.8	42.9	49.5	64.6	56.9
2001	57.1	77.9	91.7	88.3	43.4	50.7	66.0	58.5
2002	57.4	78.3	92.7	88.6	43.2	51.5	66.6	59.2
2003	55.4	77.5	92.3	89.1	40.4	51.5	67.7	58.3
2004	55.2	77.9	91.3	88.8	40.1	53.1	67.0	60.1
2001. 4/4	56.8	78.6	92.7	88.7	43.7	51.6	67.1	58.2
2002. 1/4	55.2	78.0	91.5	88.5	40.8	51.4	66.1	58.5
2/4	59.0	78.1	92.8	88.5	45.1	51.7	67.4	59.4
3/4	58.2	78.7	92.6	88.4	44.2	51.5	66.0	59.3
4/4	57.2	78.5	94.0	88.9	42.5	51.6	66.6	59.7
2003. 1/4	53.8	77.0	92.6	89.2	37.7	51.0	68.5	57.8
2/4	56.9	76.9	92.3	89.2	42.0	51.1	68.4	58.4
3/4	55.8	77.5	91.7	88.8	41.4	51.6	66.8	58.5
4/4	55.0	78.4	92.4	89.1	40.4	52.4	67.0	58.4
2004. 1/4	53.9	77.6	91.6	88.7	38.5	52.8	66.8	58.8
2/4	56.4	77.7	91.8	88.5	41.5	53.0	67.6	60.9
3/4	55.3	77.7	90.7	88.6	40.6	53.2	66.9	60.2
4/4	55.1	78.5	90.9	89.3	40.0	53.6	66.6	60.7
2005. 1/4	52.9	77.0	90.3	89.0	37.6	52.8	65.9	59.8
2/4	56.0	77.4	91.0	89.5	41.5	53.3	68.1	60.1
2002. 11	57.6	78.5	93.9	88.8	42.9	51.6	66.5	59.6
12	55.7	78.7	94.1	89.0	40.2	51.5	67.1	59.3
2003. 1	52.3	78.1	92.9	89.4	37.0	51.7	68.2	57.7
2	53.6	76.8	92.4	89.0	36.9	50.7	67.9	57.6
3	55.6	76.2	92.5	89.1	39.4	50.5	69.5	58.0
4	56.5	76.6	92.1	89.2	41.5	50.7	68.5	57.8
5	57.1	77.1	92.4	89.1	42.4	51.1	68.7	58.6
6	57.0	76.9	92.5	89.3	42.2	51.5	68.0	58.9
7	56.3	78.4	92.2	88.9	41.7	52.4	67.6	58.8
8	55.4	77.2	91.4	88.6	40.8	51.3	66.1	57.9
9	55.8	77.1	91.6	88.8	41.7	51.2	66.8	58.8
10	56.1	77.9	92.4	89.1	41.9	52.0	67.1	58.6
11	55.3	78.6	92.5	89.1	41.1	52.5	67.5	58.4
12	53.5	78.8	92.3	89.3	38.3	52.6	66.6	58.2
2004. 1	52.0	78.6	92.2	89.0	37.2	53.4	65.7	58.1
2	54.1	76.8	91.2	88.4	38.2	52.5	66.6	58.8
3	55.8	77.3	91.4	88.6	40.2	52.5	68.0	59.4
4	56.4	77.5	91.9	88.4	41.5	52.9	67.7	60.9
5	56.3	77.7	92.0	88.5	41.5	52.9	67.8	60.9
6	56.5	78.0	91.4	88.5	41.5	53.1	67.3	61.0
7	55.6	78.6	91.1	88.6	40.7	53.8	67.2	60.2
8	54.8	77.1	90.4	88.4	40.1	52.1	66.2	59.4
9	55.6	77.5	90.7	88.9	41.1	53.7	67.2	60.9
10	56.0	78.4	90.9	89.1	41.5	53.5	66.6	60.6
11	55.4	78.6	90.8	89.3	40.4	53.5	66.3	60.9
12	53.9	78.4	91.2	89.4	38.1	53.8	66.8	60.5
2005. 1	51.2	78.2	90.3	89.2	36.5	53.4	65.7	59.6
2	52.9	76.1	89.8	88.7	36.9	52.1	65.5	59.9
3	54.8	76.7	90.7	89.1	39.4	52.8	66.4	59.8
4	55.9	77.0	91.1	89.4	40.7	53.1	67.8	60.0
5	56.0	77.4	91.1	89.5	41.7	53.5	68.4	60.1
6	56.0	77.7	90.9	89.5	42.0	53.2	68.2	60.2

주 : 2000년부터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바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4〉 산업별 취업자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 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2000	2,243	17	4,293	64	1,580	3,833	1,919	1,068	192	752
2001	2,148	18	4,267	58	1,585	3,931	1,943	1,114	208	760
2002	2,069	18	4,241	52	1,746	3,991	2,007	1,140	231	734
2003	1,950	17	4,205	76	1,816	3,871	1,981	1,084	249	751
2004	1,825	16	4,290	72	1,820	3,805	2,057	1,128	248	738
2001. 4/4	2,131	18	4,302	55	1,679	4,017	1,958	1,141	215	750
2002. 1/4	1,727	20	4,242	53	1,601	3,996	1,996	1,126	220	751
2/4	2,251	19	4,258	56	1,791	3,980	2,024	1,134	230	725
3/4	2,252	16	4,214	50	1,781	4,000	2,018	1,140	238	731
4/4	2,046	17	4,251	50	1,812	3,988	1,989	1,159	238	729
2003. 1/4	1,699	16	4,168	74	1,734	3,972	1,947	1,085	255	754
2/4	2,127	17	4,238	77	1,854	3,890	1,944	1,081	252	768
3/4	2,090	17	4,166	78	1,821	3,801	2,004	1,078	243	744
4/4	1,882	17	4,246	75	1,854	3,821	2,029	1,094	246	738
2004. 1/4	1,609	19	4,274	74	1,762	3,851	2,061	1,102	244	743
2/4	1,967	15	4,308	73	1,864	3,811	2,055	1,129	240	740
3/4	1,933	14	4,278	71	1,790	3,762	2,057	1,135	255	736
4/4	1,789	15	4,296	72	1,864	3,797	2,056	1,144	255	734
2005. 1/4	1,525	18	4,260	71	1,692	3,777	2,058	1,139	263	729
2/4	2,018	19	4,257	72	1,897	3,748	2,049	1,154	272	735
2002. 8	2,237	15	4,190	52	1,718	3,962	2,015	1,133	232	735
9	2,270	16	4,239	46	1,807	3,994	2,002	1,139	237	732
10	2,276	16	4,254	47	1,810	3,985	1,977	1,155	240	729
11	2,094	18	4,257	51	1,822	3,980	1,988	1,159	236	724
12	1,769	17	4,240	53	1,805	4,000	2,001	1,164	237	733
2003. 1	1,596	15	4,144	74	1,704	4,034	1,993	1,084	260	751
2	1,646	15	4,152	73	1,698	3,973	1,947	1,091	254	754
3	1,855	18	4,209	75	1,801	3,908	1,902	1,082	253	755
4	2,076	17	4,238	74	1,844	3,910	1,907	1,084	249	771
5	2,154	16	4,252	78	1,852	3,889	1,956	1,078	253	774
6	2,152	18	4,225	80	1,864	3,870	1,969	1,080	255	759
7	2,102	18	4,220	78	1,843	3,858	2,024	1,075	255	750
8	2,078	16	4,115	78	1,799	3,768	2,004	1,073	240	741
9	2,090	18	4,164	77	1,820	3,776	1,985	1,085	234	741
10	2,112	17	4,236	77	1,834	3,823	1,981	1,089	235	738
11	1,958	16	4,246	75	1,876	3,806	2,040	1,092	252	733
12	1,575	20	4,257	73	1,851	3,836	2,066	1,100	250	744
2004. 1	1,489	20	4,254	74	1,740	3,866	2,073	1,094	249	750
2	1,555	20	4,272	72	1,728	3,842	2,077	1,108	244	741
3	1,781	18	4,309	75	1,817	3,845	2,033	1,105	238	738
4	1,932	17	4,323	74	1,869	3,840	2,033	1,116	236	739
5	1,981	16	4,286	72	1,858	3,791	2,070	1,131	240	744
6	1,989	14	4,316	73	1,865	3,801	2,061	1,141	244	737
7	1,924	13	4,311	71	1,786	3,789	2,099	1,141	256	735
8	1,933	13	4,226	71	1,751	3,713	2,024	1,126	253	734
9	1,942	15	4,297	72	1,832	3,786	2,047	1,138	256	740
10	1,990	16	4,323	73	1,873	3,780	2,031	1,140	255	732
11	1,829	15	4,304	71	1,877	3,814	2,049	1,139	253	732
12	1,549	15	4,261	70	1,843	3,798	2,089	1,153	257	737
2005. 1	1,405	19	4,252	70	1,686	3,782	2,066	1,143	259	730
2	1,462	17	4,255	70	1,632	3,779	2,060	1,128	259	728
3	1,708	19	4,274	71	1,753	3,769	2,408	1,147	272	729
4	1,935	21	4,271	72	1,851	3,725	2,066	1,163	263	735
5	2,061	20	4,249	74	1,909	3,760	2,031	1,146	274	738
6	2,056	17	4,251	71	1,931	3,758	2,048	1,152	280	733

주 : 2000년부터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단위 : 천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351	1,010	758	1,191	428	365	886	186	19
381	1,149	701	1,236	484	393	975	206	16
413	1,251	702	1,335	551	418	1,038	215	18
423	1,303	757	1,484	539	425	994	192	22
453	1,461	768	1,507	594	458	1,169	125	24
399	1,180	691	1,250	505	396	999	222	15
405	1,205	697	1,299	510	413	1,015	220	16
405	1,256	713	1,315	551	425	1,056	218	18
416	1,275	689	1,341	564	423	1,038	212	19
425	1,266	709	1,383	578	412	1,043	211	21
401	1,201	738	1,471	538	415	960	180	24
420	1,261	764	1,489	521	409	973	196	21
427	1,361	761	1,503	542	439	996	205	21
445	1,391	763	1,472	555	437	1,048	188	23
448	1,404	758	1,465	568	451	1,099	144	25
451	1,438	771	1,522	588	457	1,171	118	25
456	1,480	770	1,517	603	461	1,196	111	24
456	1,524	771	1,523	615	465	1,209	125	23
467	1,498	763	1,501	628	483	1,226	126	24
486	1,505	808	1,556	652	501	1,241	132	25
413	1,261	687	1,320	570	423	1,034	206	19
419	1,281	687	1,368	560	420	1,039	215	20
430	1,271	705	1,377	573	417	1,044	213	21
424	1,268	713	1,386	579	412	1,046	212	21
421	1,260	708	1,387	581	408	1,040	206	21
401	1,191	727	1,453	547	418	970	177	23
393	1,171	734	1,489	548	411	951	172	26
408	1,240	752	1,470	518	417	959	191	24
407	1,238	756	1,479	531	404	954	192	24
420	1,267	769	1,491	512	407	982	199	21
433	1,276	767	1,498	520	418	984	196	20
436	1,302	768	1,523	538	444	998	205	21
420	1,370	757	1,486	541	438	986	196	20
424	1,412	758	1,499	547	434	1,004	213	21
446	1,385	764	1,477	548	436	1,020	211	22
440	1,400	766	1,469	559	430	1,058	186	24
450	1,388	760	1,470	556	446	1,065	166	24
452	1,398	741	1,459	559	450	1,086	157	26
448	1,389	762	1,452	570	461	1,104	136	25
443	1,424	772	1,486	576	442	1,106	138	24
448	1,433	782	1,499	589	448	1,136	136	25
452	1,447	770	1,522	585	466	1,174	108	25
454	1,434	762	1,544	590	459	1,204	110	25
457	1,448	772	1,548	598	468	1,199	113	25
447	1,481	760	1,483	597	455	1,184	108	24
464	1,510	778	1,519	616	459	1,204	113	23
458	1,502	768	1,523	621	467	1,206	121	23
455	1,539	772	1,529	612	461	1,204	126	23
456	1,531	774	1,516	612	466	1,216	129	24
464	1,497	756	1,485	618	478	1,218	127	23
461	1,502	758	1,499	626	478	1,225	124	24
477	1,494	775	1,518	638	492	1,234	127	25
474	1,498	799	1,533	650	492	1,230	130	26
486	1,505	820	1,557	656	502	1,253	133	25
499	1,512	805	1,576	650	508	1,241	133	25

〈표 2-5〉 산업별 취업자(여자)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2000	1,072	0	1,535	11	134	1,774	1,304	94	56	405
2001	1,016	1	1,519	14	136	1,847	1,321	98	58	417
2002	984	1	1,518	11	150	1,865	1,364	96	59	397
2003	923	1	1,475	12	148	1,832	1,349	89	78	385
2004	866	1	1,493	13	162	1,795	1,421	104	79	374
2001. 4/4	1,015	1	1,555	15	147	1,893	1,329	99	60	405
2002. 1/4	760	1	1,503	14	141	1,867	1,349	100	59	408
2/4	1,112	1	1,537	13	160	1,868	1,380	93	59	388
3/4	1,100	1	1,511	9	149	1,872	1,377	94	61	395
4/4	963	2	1,521	9	150	1,855	1,349	99	59	399
2003. 1/4	749	1	1,452	9	138	1,880	1,310	87	82	383
2/4	1,041	1	1,496	13	148	1,850	1,322	91	78	396
3/4	1,013	1	1,450	13	154	1,800	1,365	84	76	381
4/4	889	1	1,501	11	151	1,798	1,401	94	74	380
2004. 1/4	717	1	1,485	12	148	1,823	1,421	101	76	383
2/4	961	1	1,506	14	167	1,806	1,420	104	76	377
3/4	934	1	1,482	14	163	1,773	1,426	105	81	365
4/4	851	1	1,501	13	170	1,781	1,419	107	83	370
2005. 1/4	657	2	1,443	13	155	1,759	1,413	104	88	360
2/4	982	1	1,418	12	159	1,745	1,420	110	94	369
2002. 10	1,117	2	1,545	8	146	1,852	1,347	95	62	402
11	955	3	1,519	9	149	1,852	1,347	103	57	396
12	778	2	1,499	9	155	1,860	1,353	99	58	399
2003. 1	687	1	1,437	8	136	1,905	1,336	86	80	380
2	715	0	1,429	9	133	1,873	1,306	86	86	382
3	846	1	1,490	9	143	1,864	1,288	90	79	386
4	1,001	1	1,494	10	147	1,855	1,298	94	76	395
5	1,055	0	1,498	14	147	1,848	1,328	89	79	403
6	1,067	1	1,495	14	150	1,848	1,341	91	79	391
7	1,020	1	1,475	13	157	1,828	1,370	86	81	386
8	1,000	1	1,414	14	153	1,775	1,370	81	75	379
9	1,017	1	1,461	13	154	1,797	1,354	85	72	379
10	1,031	1	1,503	11	148	1,810	1,362	92	73	380
11	943	1	1,511	12	155	1,783	1,408	93	74	379
12	694	2	1,489	10	150	1,800	1,432	96	76	381
2004. 1	639	2	1,471	11	144	1,833	1,423	99	77	386
2	682	1	1,480	12	151	1,821	1,429	103	78	382
3	829	1	1,502	14	149	1,814	1,410	100	74	381
4	931	1	1,518	14	168	1,818	1,411	103	75	382
5	971	1	1,497	14	165	1,801	1,422	106	77	379
6	981	1	1,502	15	168	1,800	1,427	103	76	370
7	923	1	1,497	15	157	1,788	1,456	106	82	367
8	932	1	1,446	13	156	1,740	1,403	102	79	362
9	948	1	1,504	13	176	1,789	1,418	107	81	367
10	981	1	1,524	13	173	1,768	1,399	107	83	371
11	880	1	1,502	12	170	1,791	1,409	106	83	368
12	691	1	1,477	12	166	1,783	1,448	107	82	371
2005. 1	591	1	1,442	12	159	1,771	1,420	105	85	363
2	607	2	1,438	13	151	1,764	1,405	101	86	358
3	774	2	1,449	12	155	1,741	1,412	107	93	359
4	926	2	1,435	13	159	1,729	1,439	108	89	362
5	1,011	1	1,414	13	158	1,753	1,406	111	94	367
6	1,008	0	1,404	12	161	1,753	1,424	111	98	377

주: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단위 : 천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8	321	223	730	304	135	389	183	1
111	365	205	768	349	146	419	200	2
127	402	199	844	394	158	438	212	3
129	399	188	956	385	156	410	188	7
139	451	213	991	419	173	540	121	7
116	389	192	776	370	141	428	217	2
120	398	191	809	366	152	424	217	2
121	406	207	830	397	164	452	215	3
131	399	194	846	401	159	435	208	3
137	405	206	892	413	157	442	208	4
121	371	176	927	384	150	393	176	7
130	388	190	957	380	151	396	191	7
130	414	196	980	384	161	407	201	7
133	422	190	960	393	161	444	184	6
131	428	194	950	401	166	489	141	6
137	445	209	1,006	417	172	543	115	6
145	458	226	998	425	175	560	108	7
143	474	224	1,010	434	179	569	121	7
139	484	216	993	456	188	569	121	7
156	499	243	1,044	485	199	581	128	7
142	407	206	884	407	160	440	210	3
137	405	209	896	414	158	442	210	3
133	402	202	896	417	155	444	203	4
117	373	175	907	387	155	396	173	7
118	356	175	933	389	148	392	169	7
129	386	178	942	375	147	392	186	7
126	385	183	948	388	147	386	186	7
132	389	195	958	374	148	404	196	7
131	389	191	964	378	158	397	192	5
130	398	200	988	385	164	402	201	6
130	412	196	968	382	163	408	193	6
130	431	194	984	384	156	410	208	7
135	423	193	969	389	157	417	206	6
130	423	190	953	397	159	451	183	6
134	419	187	957	393	168	463	164	6
135	420	184	945	394	166	483	155	6
132	425	198	933	403	169	493	134	6
128	440	199	973	405	164	493	134	6
133	443	208	990	417	170	518	132	6
138	451	210	1,007	413	177	546	105	6
140	441	209	1,021	420	169	565	107	6
144	446	220	1,019	421	174	563	109	6
142	460	217	970	419	172	549	105	6
148	467	241	1,004	436	180	567	110	7
148	458	230	1,009	436	177	566	119	7
143	482	223	1,016	429	181	571	122	7
140	483	220	1,006	438	178	571	124	8
136	486	208	977	439	183	570	122	7
132	485	213	986	458	185	564	119	7
149	480	226	1,018	472	197	572	123	7
152	478	239	1,032	483	198	575	125	7
157	505	251	1,045	493	202	586	129	7
159	513	239	1,055	479	199	583	130	7

〈표 2-6〉 직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수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2000	465	1,403	2,074	2,512	2,675	2,826	2,115	2,688	2,292	2,107	
2001	524	1,498	2,079	2,671	2,723	2,933	2,035	2,638	2,332	2,138	
2002	570	1,577	2,115	2,822	2,843	2,952	1,964	2,697	2,373	2,255	
2003	598	1,702	2,140	3,172	2,735	2,835	1,834	2,407	2,387	2,329	
2004	576	1,731	2,324	3,188	2,895	2,749	1,700	2,455	2,490	2,449	
2001.	2/4	525	1,520	2,065	2,702	2,726	2,936	2,247	2,658	2,322	2,138
	3/4	526	1,504	2,096	2,704	2,728	2,950	2,256	2,639	2,321	2,176
	4/4	562	1,506	2,082	2,714	2,764	2,980	2,004	2,700	2,372	2,240
2002.	1/4	573	1,519	2,112	2,764	2,803	2,963	1,644	2,629	2,334	2,170
	2/4	581	1,579	2,107	2,807	2,864	2,943	2,126	2,749	2,381	2,286
	3/4	571	1,598	2,131	2,815	2,859	2,964	2,151	2,709	2,377	2,239
	4/4	555	1,612	2,111	2,902	2,847	2,938	1,937	2,699	2,401	2,324
2003.	1/4	604	1,702	2,029	3,184	2,639	2,918	1,603	2,346	2,380	2,228
	2/4	585	1,707	2,109	3,212	2,696	2,834	2,001	2,437	2,379	2,343
	3/4	601	1,713	2,190	3,160	2,771	2,792	1,976	2,393	2,365	2,333
	4/4	600	1,684	2,234	3,132	2,833	2,798	1,756	2,453	2,424	2,411
2004.	1/4	580	1,697	2,271	3,154	2,873	2,818	1,501	2,110	2,441	2,329
	2/4	580	1,744	2,329	3,181	2,891	2,765	1,827	2,476	2,494	2,457
	3/4	580	1,729	2,330	3,213	2,881	2,712	1,817	2,432	2,508	2,445
	4/4	565	1,754	2,364	3,205	2,933	2,701	1,655	2,474	2,519	2,563
2005.	1/4	567	1,755	2,365	3,214	2,952	2,675	1,437	2,348	2,532	2,403
	2/4	580	1,832	2,357	3,256	2,980	2,653	1,874	2,469	2,581	2,544
2002.	9	566	1,618	2,118	2,831	2,841	2,956	2,162	2,724	2,395	2,278
	10	554	1,613	2,111	2,861	2,849	2,943	2,154	2,719	2,399	2,335
	11	554	1,618	2,106	2,898	2,852	2,921	1,988	2,715	2,403	2,335
	12	555	1,605	2,115	2,949	2,841	2,951	1,668	2,665	2,400	2,302
2003.	1	611	1,707	1,968	3,205	2,654	2,996	1,508	2,332	2,372	2,209
	2	600	1,715	2,037	3,168	2,640	2,924	1,558	2,308	2,383	2,165
	3	601	1,683	2,081	3,179	2,624	2,835	1,742	2,399	2,384	2,309
	4	580	1,702	2,090	3,183	2,641	2,837	1,965	2,436	2,384	2,339
	5	583	1,710	2,105	3,234	2,721	2,839	2,027	2,452	2,375	2,324
	6	591	1,709	2,133	3,220	2,726	2,825	2,010	2,425	2,379	2,365
	7	594	1,726	2,179	3,220	2,802	2,822	1,981	2,397	2,377	2,359
	8	605	1,704	2,184	3,132	2,756	2,772	1,973	2,362	2,354	2,285
	9	605	1,710	2,208	3,130	2,756	2,782	1,973	2,419	2,365	2,354
	10	606	1,695	2,211	3,142	2,767	2,805	1,980	2,430	2,412	2,404
	11	608	1,687	2,231	3,123	2,837	2,787	1,817	2,489	2,414	2,432
	12	586	1,671	2,260	3,131	2,896	2,800	1,470	2,438	2,445	2,398
2004.	1	580	1,683	2,263	3,150	2,875	2,843	1,409	2,407	2,425	2,301
	2	579	1,690	2,246	3,177	2,891	2,816	1,451	2,421	2,438	2,296
	3	581	1,718	2,304	3,135	2,853	2,794	1,644	2,491	2,460	2,391
	4	579	1,731	2,321	3,161	2,878	2,798	1,794	2,498	2,476	2,436
	5	576	1,754	2,326	3,186	2,906	2,753	1,847	2,468	2,485	2,436
	6	580	1,744	2,329	3,181	2,891	2,765	1,827	2,476	2,494	2,457
	7	580	1,751	2,333	3,235	2,926	2,722	1,808	2,417	2,514	2,464
	8	584	1,711	2,303	3,172	2,825	2,694	1,834	2,396	2,496	2,367
	9	576	1,725	2,354	3,232	2,892	2,720	1,809	2,482	2,513	2,505
	10	568	1,749	2,361	3,211	2,896	2,697	1,843	2,490	2,525	2,562
	11	562	1,770	2,367	3,199	2,925	2,703	1,690	2,475	2,517	2,594
	12	565	1,743	2,363	3,205	2,979	2,703	1,433	2,457	2,514	2,533
2005.	1	565	1,727	2,352	3,194	2,953	2,701	1,330	2,340	2,522	2,395
	2	569	1,748	2,370	3,210	2,946	2,671	1,386	2,304	2,515	2,367
	3	567	1,790	2,373	3,239	2,956	2,652	1,595	2,399	2,558	2,446
	4	579	1,812	2,351	3,238	2,991	2,641	1,809	2,432	2,588	2,495
	5	573	1,836	2,372	3,278	2,959	2,666	1,911	2,485	2,570	2,547
	6	589	1,848	2,349	3,251	2,989	2,652	1,902	2,490	2,585	2,591

주 : 2000년 이후의 자료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임(이전자료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7〉 직업별 취업자(여자)

(단위 : 천명)

	고위임직 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수렵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000	23	615	587	1,285	1,815	1,549	984	623	305	983
2001	31	632	627	1,382	1,873	1,618	935	590	308	994
2002	32	669	670	1,476	1,965	1,613	907	540	302	1,051
2003	35	777	729	1,496	1,852	1,535	829	436	305	1,116
2004	40	786	756	1,582	2,006	1,493	764	424	345	1,168
2001. 2/4	30	635	626	1,384	1,887	1,622	1,061	597	312	996
3/4	30	624	633	1,390	1,872	1,628	1,078	576	308	997
4/4	33	638	631	1,425	1,910	1,634	924	597	306	1,054
2002. 1/4	35	644	654	1,440	1,922	1,620	698	558	295	1,016
2/4	35	667	667	1,476	1,987	1,613	1,019	555	298	1,089
3/4	30	668	679	1,475	1,982	1,621	1,027	527	306	1,030
4/4	27	695	682	1,512	1,967	1,598	885	519	312	1,070
2003. 1/4	35	785	707	1,474	1,763	1,567	674	429	303	1,060
2/4	32	790	721	1,500	1,819	1,543	934	446	301	1,138
3/4	36	779	741	1,517	1,877	1,513	921	426	297	1,111
4/4	38	754	746	1,492	1,949	1,516	784	440	319	1,155
2004. 1/4	35	756	746	1,515	1,974	1,538	625	437	335	1,112
2/4	41	796	763	1,577	2,005	1,508	846	431	346	1,169
3/4	41	790	753	1,613	2,008	1,467	841	416	351	1,165
4/4	43	803	763	1,621	2,035	1,459	746	412	349	1,226
2005. 1/4	43	804	753	1,616	2,042	1,438	587	394	340	1,150
2/4	44	861	764	1,631	2,084	1,441	865	383	351	1,228
2002. 9	29	681	677	1,479	1,974	1,635	1,037	531	311	1,057
10	27	693	684	1,493	1,973	1,601	1,028	531	315	1,090
11	27	701	679	1,510	1,966	1,591	919	526	313	1,069
12	27	692	683	1,534	1,961	1,600	709	500	307	1,051
2003. 1	39	784	690	1,481	1,768	1,601	624	421	307	1,033
2	32	791	709	1,463	1,760	1,562	648	423	297	1,018
3	35	780	722	1,478	1,761	1,536	750	444	304	1,128
4	32	790	720	1,469	1,783	1,546	904	451	301	1,132
5	31	793	712	1,512	1,834	1,547	952	448	300	1,135
6	33	786	730	1,520	1,840	1,537	947	439	302	1,148
7	35	790	742	1,540	1,885	1,525	925	429	300	1,122
8	37	770	738	1,504	1,873	1,492	917	417	292	1,078
9	37	776	742	1,506	1,872	1,520	922	432	299	1,132
10	39	762	745	1,509	1,895	1,522	927	435	309	1,164
11	37	749	744	1,490	1,953	1,509	818	452	322	1,176
12	37	752	748	1,478	1,999	1,517	607	434	326	1,124
2004. 1	34	753	744	1,498	1,976	1,558	567	427	328	1,086
2	34	749	737	1,522	1,976	1,536	596	435	340	1,106
3	38	764	757	1,526	1,971	1,520	711	449	338	1,143
4	38	777	766	1,556	1,994	1,525	815	444	349	1,173
5	41	804	760	1,584	2,004	1,504	865	428	341	1,155
6	44	805	762	1,592	2,018	1,495	858	421	348	1,178
7	41	805	758	1,616	2,045	1,478	832	411	345	1,163
8	42	774	735	1,583	1,962	1,449	849	405	349	1,130
9	40	792	767	1,639	2,017	1,474	841	433	359	1,201
10	42	799	764	1,625	2,005	1,453	865	419	355	1,242
11	43	809	764	1,619	2,027	1,459	769	411	351	1,243
12	43	800	762	1,618	2,071	1,466	603	407	351	1,192
2005. 1	43	781	756	1,602	2,041	1,465	532	393	336	1,130
2	44	800	744	1,611	2,027	1,433	548	393	335	1,139
3	43	830	759	1,634	2,058	1,417	681	396	348	1,180
4	44	842	761	1,617	2,086	1,423	824	385	358	1,198
5	43	866	770	1,646	2,072	1,454	890	389	346	1,228
6	46	873	760	1,631	2,094	1,445	882	376	350	1,257

주 : 2000년 이후의 자료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임(이전자료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8〉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 천명)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가족 종사자					
1998	7,641	1,392	4,225	2,025	12,296	6,534	4,043	1,720
1999	7,628	1,351	4,351	1,925	12,663	6,135	4,255	2,274
2000	7,795	1,458	4,407	1,931	13,360	6,395	4,608	2,357
2001	7,913	1,554	4,497	1,863	13,659	6,714	4,726	2,218
2002	7,988	1,617	4,574	1,797	14,181	6,862	4,886	2,433
2003	7,736	1,629	4,413	1,694	14,402	7,269	5,004	2,130
2004	7,663	1,679	4,431	1,553	14,894	7,625	5,082	2,188
2000. 4/4	7,842	1,507	4,432	1,903	13,578	6,551	4,655	2,372
2001. 1/4	7,430	1,504	4,248	1,678	13,197	6,593	4,588	2,017
2/4	8,070	1,558	4,544	1,967	13,769	6,762	4,760	2,247
3/4	8,166	1,558	4,642	1,967	13,734	6,739	4,722	2,273
4/4	7,987	1,596	4,552	1,840	13,936	6,764	4,835	2,237
2002. 1/4	7,647	1,613	4,387	1,646	13,864	6,759	4,821	2,283
2/4	8,168	1,631	4,662	1,876	14,255	6,855	4,908	2,492
3/4	8,190	1,630	4,669	1,892	14,225	6,878	4,889	2,459
4/4	7,944	1,593	4,576	1,775	14,382	6,957	4,927	2,498
2003. 1/4	7,465	1,567	4,298	1,601	14,168	7,176	4,904	2,088
2/4	7,794	1,590	4,433	1,771	14,509	7,250	5,082	2,177
3/4	7,939	1,669	4,502	1,767	14,356	7,268	4,989	2,099
4/4	7,748	1,690	4,421	1,637	14,577	7,383	5,059	2,155
2004. 1/4	7,490	1,676	4,325	1,489	14,614	7,460	5,067	2,087
2/4	7,762	1,676	4,459	1,626	14,983	7,686	5,199	2,197
3/4	7,769	1,684	4,493	1,593	14,878	7,671	5,035	2,172
4/4	7,631	1,680	4,446	1,505	15,102	7,781	5,026	2,295
2005. 1/4	7,391	1,631	4,391	1,368	14,856	7,803	4,968	2,085
2/4	7,772	1,652	4,558	1,562	15,354	7,936	5,112	2,306
2002. 9	8,196	1,621	4,675	1,900	14,294	6,923	4,919	2,452
10	8,192	1,605	4,692	1,896	14,346	6,944	4,899	2,503
11	7,995	1,592	4,607	1,796	14,394	6,950	4,943	2,501
12	7,646	1,582	4,431	1,634	14,405	6,977	4,940	2,489
2003. 1	7,426	1,560	4,272	1,594	14,137	7,142	4,893	2,102
2	7,451	1,571	4,295	1,586	14,047	7,158	4,853	2,035
3	7,518	1,570	4,326	1,622	14,320	7,227	4,966	2,127
4	7,672	1,568	4,378	1,726	14,484	7,237	5,079	2,168
5	7,851	1,592	4,460	1,800	14,519	7,266	5,082	2,171
6	7,859	1,611	4,460	1,788	14,525	7,245	5,086	2,193
7	7,855	1,639	4,439	1,777	14,601	7,239	5,152	2,210
8	7,978	1,680	4,535	1,762	14,149	7,236	4,872	2,041
9	7,983	1,689	4,533	1,761	14,318	7,331	4,942	2,045
10	7,973	1,692	4,510	1,771	14,479	7,350	5,025	2,104
11	7,799	1,702	4,443	1,653	14,627	7,388	5,045	2,194
12	7,472	1,677	4,311	1,485	14,624	7,411	5,048	2,166
2004. 1	7,428	1,676	4,289	1,463	14,508	7,426	5,005	2,077
2	7,456	1,668	4,313	1,475	14,549	7,453	5,044	2,053
3	7,585	1,683	4,374	1,529	14,785	7,501	5,152	2,132
4	7,724	1,673	4,437	1,612	14,948	7,553	5,203	2,192
5	7,797	1,673	4,482	1,641	14,942	7,600	5,167	2,174
6	7,764	1,679	4,460	1,624	15,058	7,606	5,228	2,225
7	7,688	1,666	4,445	1,577	15,063	7,569	5,303	2,191
8	7,797	1,685	4,507	1,606	14,584	7,700	4,813	2,071
9	7,822	1,700	4,527	1,595	14,987	7,744	4,989	2,254
10	7,835	1,699	4,511	1,626	15,066	7,776	4,981	2,310
11	7,673	1,678	4,475	1,521	15,129	7,792	5,020	2,317
12	7,385	1,665	4,352	1,369	15,109	7,776	5,076	2,258
2005. 1	7,283	1,637	4,330	1,317	14,796	7,767	4,946	2,082
2	7,355	1,631	4,383	1,341	14,731	7,774	4,947	2,010
3	7,534	1,627	4,460	1,477	15,041	7,868	5,015	2,163
4	7,675	1,624	4,520	1,526	15,260	7,907	5,084	2,268
5	7,798	1,648	4,573	1,577	15,401	7,971	5,107	2,323
6	7,844	1,679	4,583	1,583	15,401	7,931	5,144	2,32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9〉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여자)

(단위 : 천명)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가족 종사자					
1998	3,345	243	1,304	1,798	4,745	1,650	2,257	839
1999	3,313	248	1,388	1,677	5,025	1,562	2,289	1,174
2000	3,372	263	1,421	1,688	5,397	1,679	2,496	1,222
2001	3,382	296	1,457	1,629	5,609	1,861	2,589	1,159
2002	3,368	304	1,482	1,582	5,857	1,968	2,682	1,207
2003	3,138	290	1,328	1,519	5,970	2,109	2,826	1,036
2004	3,127	321	1,420	1,387	6,237	2,289	2,869	1,079
2000.4/4	3,378	279	1,428	1,671	5,524	1,764	2,539	1,220
2001.1/4	3,111	287	1,359	1,465	5,413	1,802	2,523	1,088
2/4	3,493	300	1,463	1,729	5,659	1,865	2,626	1,168
3/4	3,530	294	1,520	1,717	5,606	1,869	2,574	1,163
4/4	3,394	302	1,485	1,606	5,759	1,908	2,633	1,217
2002.1/4	3,173	303	1,435	1,435	5,708	1,913	2,623	1,173
2/4	3,494	313	1,519	1,662	5,911	1,979	2,695	1,237
3/4	3,482	308	1,504	1,670	5,862	1,977	2,684	1,202
4/4	3,323	293	1,468	1,562	5,944	2,005	2,725	1,215
2003.1/4	2,969	270	1,260	1,439	5,827	2,067	2,733	1,027
2/4	3,192	283	1,309	1,600	6,033	2,070	2,894	1,069
3/4	3,252	303	1,372	1,576	5,966	2,130	2,824	1,011
4/4	3,138	304	1,372	1,463	6,055	2,169	2,851	1,036
2004.1/4	3,002	307	1,367	1,328	6,073	2,188	2,849	1,036
2/4	3,207	319	1,425	1,464	6,274	2,260	2,939	1,075
3/4	3,182	324	1,438	1,420	6,262	2,327	2,844	1,091
4/4	3,117	334	1,449	1,334	6,340	2,379	2,844	1,116
2005.1/4	2,955	326	1,424	1,204	6,211	2,368	2,801	1,041
2/4	3,207	330	1,405	1,392	6,444	2,416	2,904	1,124
2002. 9	3,494	302	1,514	1,678	5,917	1,996	2,714	1,207
10	3,491	295	1,521	1,674	5,944	2,006	2,702	1,236
11	3,357	291	1,477	1,588	5,946	2,001	2,738	1,206
12	3,122	292	1,406	1,424	5,943	2,007	2,735	1,202
2003. 1	2,942	263	1,246	1,434	5,805	2,084	2,680	1,041
2	2,951	276	1,259	1,415	5,754	2,048	2,713	993
3	3,015	273	1,275	1,467	5,923	2,068	2,807	1,048
4	3,111	269	1,277	1,564	6,017	2,054	2,900	1,062
5	3,229	285	1,316	1,628	6,036	2,080	2,894	1,062
6	3,236	296	1,333	1,606	6,047	2,075	2,889	1,083
7	3,224	296	1,343	1,585	6,069	2,085	2,911	1,073
8	3,253	307	1,380	1,566	5,866	2,133	2,762	971
9	3,278	307	1,394	1,576	5,962	2,174	2,799	989
10	3,274	302	1,386	1,586	6,032	2,173	2,848	1,011
11	3,166	307	1,379	1,480	6,085	2,164	2,858	1,063
12	2,973	301	1,350	1,322	6,048	2,170	2,846	1,032
2004. 1	2,959	303	1,358	1,298	6,015	2,168	2,827	1,020
2	2,976	303	1,358	1,315	6,055	2,177	2,837	1,042
3	3,070	314	1,384	1,372	6,148	2,219	2,882	1,046
4	3,176	314	1,411	1,451	6,262	2,248	2,934	1,079
5	3,228	320	1,430	1,478	6,257	2,265	2,930	1,062
6	3,218	323	1,433	1,462	6,302	2,267	2,952	1,082
7	3,155	322	1,424	1,409	6,336	2,262	2,989	1,086
8	3,180	323	1,430	1,427	6,096	2,348	2,708	1,040
9	3,210	327	1,459	1,424	6,352	2,373	2,834	1,146
10	3,235	333	1,462	1,439	6,336	2,376	2,828	1,132
11	3,142	332	1,458	1,352	6,353	2,381	2,845	1,127
12	2,974	336	1,427	1,211	6,330	2,380	2,860	1,090
2005. 1	2,894	326	1,410	1,158	6,184	2,357	2,781	1,046
2	2,921	325	1,424	1,172	6,153	2,356	2,786	1,011
3	3,049	328	1,440	1,282	6,249	2,392	2,837	1,065
4	3,163	324	1,472	1,368	6,376	2,391	2,877	1,108
5	3,221	327	1,487	1,407	6,482	2,422	2,927	1,133
6	3,237	340	1,497	1,401	6,475	2,434	2,909	1,13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10〉 성별·연령대별 실업자

(단위 : 천명)

	남 자						여 자					
	전 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 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98	1,005	404	258	189	120	33	486	251	106	84	35	11
1999	926	355	236	182	119	35	448	219	100	85	35	9
2000	647	258	165	129	73	22	332	172	66	61	24	7
2001	591	242	147	117	64	20	308	171	58	53	22	5
2002	491	218	130	80	45	17	261	144	56	39	16	7
2003	508	228	126	86	52	16	310	172	64	50	19	5
2004	534	235	133	90	56	20	326	177	64	57	22	7
2001.4/4	517	232	126	89	53	18	279	160	51	42	20	6
2002.1/4	570	253	142	94	60	22	329	191	63	48	18	8
2/4	478	209	126	82	44	17	256	135	57	37	19	8
3/4	456	199	123	78	39	16	236	127	52	36	14	6
4/4	459	210	130	68	37	13	222	121	51	34	13	4
2003.1/4	522	248	124	80	57	14	325	196	60	47	16	5
2/4	489	215	120	85	53	16	301	163	67	49	19	4
3/4	501	214	129	91	51	17	300	158	64	52	21	5
4/4	520	237	132	87	46	18	313	172	63	51	19	8
2004.1/4	555	255	125	96	57	21	377	216	68	63	22	8
2/4	504	225	125	79	53	21	328	176	61	59	24	8
3/4	530	219	140	95	57	19	305	155	64	57	21	8
4/4	548	241	140	91	57	19	294	158	61	50	22	3
2005.1/4	603	247	150	115	71	21	371	201	74	66	23	7
2/4	536	204	132	102	65	32	342	173	68	63	29	9
2002. 12	481	234	126	64	44	14	235	129	48	39	15	5
2003. 1	511	247	120	75	52	16	329	203	60	45	17	4
2	535	260	127	81	56	12	323	201	59	45	14	4
3	520	237	124	83	63	13	322	184	62	50	19	8
4	488	218	118	81	53	18	305	161	71	51	19	4
5	484	213	120	86	51	15	300	162	64	50	20	4
6	496	215	123	89	54	16	298	167	65	45	19	3
7	510	229	125	89	48	18	318	180	61	49	23	5
8	507	210	131	99	52	16	303	161	63	56	20	4
9	486	202	131	86	52	16	281	133	67	53	21	6
10	512	225	137	85	47	17	290	142	68	50	21	9
11	504	226	132	84	44	17	322	181	61	55	17	8
12	543	259	128	90	47	20	327	193	60	48	19	7
2004. 1	567	278	131	87	51	20	342	200	62	53	19	8
2	565	256	123	101	63	22	388	226	74	59	22	8
3	532	233	120	101	59	20	400	224	68	76	25	7
4	506	210	134	85	57	21	356	189	70	63	26	8
5	512	234	121	81	54	23	320	179	59	59	22	7
6	492	232	121	71	49	19	307	167	55	55	23	8
7	552	238	143	94	56	21	313	168	60	55	23	8
8	535	212	145	97	62	19	313	158	64	65	18	9
9	502	208	132	94	52	18	290	139	69	51	22	8
10	522	224	139	85	54	20	287	151	61	52	19	4
11	542	233	137	95	56	21	277	146	57	48	23	3
12	581	267	144	93	60	17	318	177	65	50	24	3
2005. 1	615	259	131	117	68	20	365	205	72	61	19	8
2	612	241	154	118	78	20	377	207	78	66	19	7
3	583	240	144	110	67	22	373	191	73	71	30	8
4	550	206	145	107	68	25	354	190	70	59	30	5
5	518	202	125	95	61	36	335	158	71	68	27	10
6	540	206	127	105	66	36	338	171	64	62	30	12

주 : 2000년부터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바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11〉 연령대별·교육수준별 실업률

(단위: %)

	전 체	연 령 대 별					교 육 수 준 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1998	7.0	12.2	5.7	5.6	5.3	2.4	5.9	8.3	8.5	4.9
1999	6.3	10.9	5.3	5.2	5.1	2.3	5.2	7.6	7.6	4.5
2000	4.4	8.1	3.6	3.5	3.2	1.5	3.6	5.1	6.3	3.3
2001	4.0	7.9	3.2	3.0	2.8	1.2	3.0	4.6	5.7	3.3
2002	3.3	7.0	2.9	2.0	1.9	1.1	2.3	3.7	4.9	3.0
2003	3.6	8.0	3.0	2.2	2.2	1.0	2.2	4.3	5.1	3.0
2004	3.7	8.3	3.1	2.3	2.3	1.2	2.5	4.5	4.7	2.9
2002. 1/4	4.0	8.4	3.2	2.4	2.6	1.5	4	2.9	4.6	5.4
2/4	3.2	6.6	2.8	2.0	2.0	1.1	3.2	2.2	3.5	4.8
3/4	3.0	6.4	2.7	1.9	1.7	0.9	3	2	3.4	4.5
4/4	3.0	6.5	2.8	1.7	1.6	0.8	3	1.9	3.3	4.8
2003. 1/4	3.8	8.7	2.9	2.1	2.4	1.0	3.8	2.2	4.5	5.7
2/4	3.4	7.6	2.9	2.2	2.2	0.9	3.4	1.9	4.1	5.3
3/4	3.5	7.4	3.0	2.3	2.2	1.0	3.5	2.3	4.2	4.8
4/4	3.6	8.2	3.1	2.2	2.0	1.2	3.6	2.4	4.5	4.7
2004. 1/4	4.0	9.3	3.0	2.5	2.4	1.4	4	2.7	4.9	5.3
2/4	3.5	8.1	2.9	2.2	2.2	1.2	3.5	2.3	4.2	5.1
3/4	3.6	7.5	3.2	2.4	2.3	1.2	3.6	2.6	4.3	4.4
4/4	3.6	8.1	3.2	2.2	2.2	1.0	3.6	2.4	4.7	3.9
2005. 1/4	4.2	9.0	3.6	2.9	2.7	1.3	4.2	3.1	5.2	5.1
2/4	3.7	7.8	3.2	2.5	2.5	1.6	3.7	2.7	4.3	5.2
2002. 11	2.9	6.3	2.9	1.6	1.5	0.7	2.9	1.9	3.2	4.8
12	3.1	7.1	2.7	1.7	1.9	0.9	3.1	2.3	3.4	5
2003. 1	3.8	8.8	2.8	2.0	2.2	1.1	3.8	2.4	4.7	5.1
2	3.8	9.0	2.9	2.1	2.3	0.9	3.8	2.1	4.7	5.7
3	3.7	8.4	2.9	2.2	2.6	1.0	3.7	2.1	4.1	6.1
4	3.5	7.6	2.9	2.1	2.2	1.0	3.5	1.9	4	5.5
5	3.4	7.6	2.9	2.2	2.1	0.9	3.4	1.9	4	5.4
6	3.4	7.7	2.9	2.2	2.2	0.8	3.4	2	4.2	4.9
7	3.6	7.9	2.9	2.2	2.2	1.0	3.6	2.3	4.5	4.7
8	3.5	7.4	3.1	2.5	2.2	0.9	3.5	2.4	4.1	5.1
9	3.3	6.9	3.1	2.2	2.2	1.0	3.3	2.2	3.9	4.6
10	3.4	7.5	3.2	2.2	2.0	1.1	3.4	2.2	4.3	4.7
11	3.6	8.2	3.0	2.2	1.8	1.1	3.6	2.2	4.4	4.7
12	3.8	8.9	3.0	2.2	2.0	1.3	3.8	2.8	4.8	4.6
2004. 1	4.0	9.3	3.1	2.2	2.2	1.4	4	2.9	5.1	4.6
2	4.2	9.5	3.1	2.6	2.6	1.5	4.2	2.8	4.8	5.6
3	4.0	9.1	2.9	2.8	2.5	1.2	4	2.5	4.7	5.7
4	3.7	8.0	3.2	2.3	2.4	1.2	3.7	2.3	4.2	5.6
5	3.5	8.1	2.8	2.2	2.2	1.3	3.5	2.3	4.1	5.5
6	3.4	8.0	2.7	2.0	2.1	1.1	3.4	2.4	4.1	4.1
7	3.7	7.9	3.2	2.3	2.3	1.2	3.7	2.8	4.5	4.3
8	3.6	7.6	3.3	2.6	2.4	1.2	3.6	2.6	4.3	5
9	3.4	7.0	3.1	2.3	2.1	1.1	3.4	2.3	4.2	3.8
10	3.4	7.6	3.1	2.1	2.1	1.0	3.4	2.2	4.4	4.1
11	3.5	7.7	3.0	2.2	2.2	1.0	3.5	2.5	4.4	3.9
12	3.8	8.9	3.3	2.2	2.4	1.0	3.8	2.5	5.2	3.7
2005. 1	4.2	9.3	3.5	2.8	2.6	1.3	4.2	3.3	5.5	4.2
2	4.3	9.0	3.7	2.9	2.8	1.3	4.3	3	5.2	5.6
3	4.1	8.8	3.4	2.8	2.7	1.3	4.1	2.9	4.8	5.5
4	3.8	8.2	3.4	2.6	2.6	1.2	3.8	2.6	4.4	5.6
5	3.5	7.4	3.1	2.5	2.4	1.8	3.5	2.7	4.1	5
6	3.6	7.8	3.0	2.5	2.5	1.8	3.6	2.7	4.5	5

주: 2000년부터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바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12〉 성별·연령대별 실업률

(단위: %)

	남 자						여 자					
	전 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 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98	7.8	14.1	6.2	6.3	6.6	3.3	5.7	9.9	4.8	4.4	3.1	1.3
1999	7.2	12.8	5.7	5.8	6.5	3.3	5.1	8.8	4.5	4.2	3.0	1.0
2000	5.0	9.4	4.0	3.9	4.0	2.1	3.6	6.7	2.9	2.8	2.0	0.8
2001	4.5	9.1	3.6	3.4	3.5	1.8	3.3	6.6	2.6	2.3	1.8	0.5
2002	3.7	8.4	3.2	2.2	2.3	1.4	2.8	5.6	2.5	1.6	1.3	0.7
2003	3.8	9.2	3.1	2.3	2.6	1.3	3.3	6.8	2.8	2.0	1.5	0.6
2004	3.9	9.7	3.2	2.4	2.7	1.6	3.4	6.9	2.8	2.2	1.7	0.7
2001.4/4	3.9	8.9	3.1	2.5	2.8	1.5	3.0	6.2	2.2	1.8	1.6	0.6
2002.1/4	4.3	9.5	3.5	2.7	3.3	2.0	3.6	7.3	2.8	2.1	1.5	0.9
2/4	3.5	8.0	3.1	2.3	2.3	1.4	2.6	5.3	2.4	1.5	1.5	0.7
3/4	3.4	7.8	3.0	2.2	2.0	1.2	2.5	5.0	2.3	1.5	1.1	0.6
4/4	3.4	8.3	3.1	1.9	1.9	1.0	2.3	4.7	2.3	1.4	1.0	0.4
2003.1/4	3.9	9.8	3.0	2.2	2.9	1.3	3.6	7.6	2.7	2.0	1.4	0.7
2/4	3.6	8.8	2.9	2.3	2.6	1.3	3.2	6.5	2.9	2.0	1.5	0.4
3/4	3.7	8.7	3.1	2.4	2.5	1.3	3.2	6.2	2.9	2.1	1.7	0.5
4/4	3.8	9.6	3.2	2.3	2.3	1.4	3.3	6.9	2.8	2.0	1.5	0.8
2004.1/4	4.1	10.2	3.0	2.6	2.8	1.7	4.0	8.4	3.0	2.5	1.8	0.9
2/4	3.7	9.3	3.0	2.1	2.5	1.6	3.3	6.9	2.7	2.3	1.8	0.7
3/4	3.9	9.1	3.4	2.5	2.7	1.5	3.1	6.0	2.8	2.2	1.6	0.8
4/4	4.0	10.0	3.4	2.4	2.6	1.5	3.0	6.3	2.7	1.9	1.6	0.3
2005.1/4	4.4	10.3	3.7	3.0	3.3	1.7	3.9	7.9	3.3	2.6	1.7	0.8
2/4	3.8	8.8	3.2	2.6	2.8	2.3	3.4	6.9	3.0	2.4	2.0	0.8
2002. 12	3.6	9.2	3.1	1.8	2.3	1.2	2.5	5.0	2.2	1.6	1.3	0.6
2003. 1	3.8	9.7	2.9	2.1	2.7	1.5	3.6	7.9	2.7	1.9	1.5	0.5
2	4.0	10.2	3.1	2.2	2.9	1.1	3.6	7.8	2.6	1.9	1.2	0.6
3	3.9	9.5	3.0	2.3	3.2	1.1	3.5	7.3	2.7	2.1	1.6	0.9
4	3.6	8.8	2.9	2.2	2.6	1.5	3.2	6.5	3.1	2.1	1.5	0.4
5	3.6	8.7	2.9	2.3	2.5	1.2	3.1	6.5	2.8	2.0	1.5	0.4
6	3.6	8.8	3.0	2.4	2.6	1.3	3.1	6.6	2.8	1.8	1.5	0.3
7	3.7	9.0	3.0	2.4	2.4	1.4	3.3	6.9	2.7	2.0	1.8	0.5
8	3.8	8.5	3.2	2.6	2.6	1.3	3.2	6.3	2.9	2.3	1.6	0.4
9	3.6	8.4	3.2	2.3	2.5	1.3	2.9	5.4	3.0	2.1	1.6	0.6
10	3.7	9.2	3.3	2.3	2.3	1.3	3.0	5.8	3.0	2.0	1.6	0.8
11	3.7	9.2	3.2	2.2	2.1	1.4	3.4	7.3	2.7	2.2	1.4	0.8
12	4.0	10.3	3.1	2.4	2.3	1.7	3.5	7.6	2.7	1.9	1.5	0.8
2004. 1	4.2	10.9	3.2	2.3	2.5	1.7	3.7	7.7	2.8	2.1	1.6	1.0
2	4.2	10.3	3.0	2.7	3.1	1.9	4.1	8.7	3.3	2.4	1.8	0.9
3	3.9	9.5	2.9	2.7	2.8	1.6	4.2	8.8	3.0	3.0	2.0	0.7
4	3.7	8.7	3.2	2.2	2.7	1.6	3.6	7.5	3.0	2.4	2.0	0.8
5	3.7	9.6	2.9	2.1	2.6	1.7	3.3	6.8	2.5	2.3	1.7	0.7
6	3.6	9.6	2.9	1.9	2.3	1.4	3.1	6.5	2.4	2.1	1.7	0.7
7	4.0	9.6	3.5	2.5	2.7	1.6	3.2	6.4	2.6	2.2	1.7	0.7
8	3.9	9.0	3.5	2.6	2.9	1.5	3.3	6.3	2.8	2.6	1.4	0.8
9	3.7	8.7	3.2	2.5	2.4	1.4	2.9	5.5	3.0	2.0	1.7	0.8
10	3.8	9.3	3.4	2.2	2.5	1.4	2.9	6.0	2.7	2.0	1.4	0.3
11	3.9	9.6	3.4	2.5	2.6	1.6	2.8	5.8	2.5	1.8	1.7	0.3
12	4.2	11.0	3.5	2.4	2.8	1.4	3.3	6.9	2.9	1.9	1.8	0.4
2005. 1	4.5	10.6	3.7	3.1	3.2	1.6	3.9	7.9	3.2	2.5	1.5	0.9
2	4.5	10.0	3.8	3.1	3.7	1.6	4.0	8.1	3.5	2.6	1.5	0.8
3	4.2	10.1	3.5	2.9	3.0	1.7	3.8	7.5	3.2	2.8	2.2	0.8
4	3.9	8.8	3.5	2.8	3.0	1.8	3.6	7.6	3.1	2.2	2.1	0.5
5	3.7	8.7	3.0	2.4	2.7	2.5	3.3	6.2	3.1	2.6	1.9	0.9
6	3.8	8.8	3.1	2.7	2.9	2.5	3.4	6.8	2.8	2.3	2.0	1.0

주: 2000년부터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바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13〉 성별·교육수준별 실업률

(단위: %)

	남 자				여 자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	대졸이상
1998	8.1	8.9	8.7	5.0	3.9	7.3	8.2	4.8
1999	7.3	8.1	8.1	4.7	3.4	6.8	6.9	4.1
2000	4.9	5.4	7.0	3.3	2.4	4.7	5.6	3.1
2001	4.3	4.8	6.0	3.4	1.9	4.3	5.2	2.9
2002	3.1	3.9	5.1	3.1	1.5	3.3	4.6	3.0
2003	2.8	4.5	5.1	2.8	1.7	4.1	5.0	3.6
2004	3.3	4.7	4.4	2.7	1.8	4.1	5.0	3.4
2002. 1/4	2.9	4.6	5.4	3.5	4.0	4.7	5.3	3.5
2/4	2.2	3.5	4.8	3.1	3.0	3.8	4.9	3.2
3/4	2.0	3.4	4.5	2.8	2.8	3.7	4.8	2.7
4/4	1.9	3.3	4.8	2.9	2.6	3.6	5.6	3.0
2003. 1/4	2.2	4.5	5.7	3.3	2.8	4.7	5.3	3.0
2/4	1.9	4.1	5.3	3.2	2.6	4.2	5.3	2.9
3/4	2.3	4.2	4.8	2.9	2.9	4.3	4.9	2.8
4/4	2.4	4.5	4.7	2.7	2.9	4.7	4.9	2.5
2004. 1/4	2.7	4.9	5.3	3.3	3.5	4.9	4.7	2.9
2/4	2.3	4.2	5.1	3.0	2.9	4.4	4.5	2.7
3/4	2.6	4.3	4.4	2.8	3.6	4.6	4.3	2.7
4/4	2.4	4.7	3.9	2.6	3.3	5.1	4.0	2.4
2005. 1/4	3.1	5.2	5.1	3.1	4.1	5.4	4.8	2.8
2/4	2.7	4.3	5.2	2.8	3.6	4.3	5.3	2.6
2002. 11	2.5	3.5	5.3	3.1	1.3	2.7	4.1	2.2
12	2.8	3.8	5.9	2.9	1.7	2.9	3.8	2.6
2003. 1	2.8	4.8	5.2	2.5	2.0	4.6	5.0	3.5
2	2.8	4.8	5.4	3.1	1.3	4.4	6.1	4.3
3	2.7	4.4	5.4	3.3	1.6	3.7	6.9	4.7
4	2.5	4.0	5.6	3.1	1.4	4.0	5.4	3.8
5	2.5	4.2	5.5	2.8	1.4	3.7	5.3	4.1
6	2.9	4.3	5.0	2.8	1.3	4.1	4.7	3.7
7	2.9	4.5	4.8	2.7	1.7	4.4	4.5	3.1
8	3.2	4.3	4.9	2.9	1.7	3.9	5.2	3.3
9	2.7	4.1	5.0	2.9	1.8	3.6	4.2	2.8
10	2.7	4.5	5.2	2.7	1.7	3.8	4.1	3.1
11	2.7	4.6	4.6	2.5	1.8	4.1	4.9	3.7
12	3.4	5.0	4.9	2.3	2.2	4.5	4.4	2.8
2004. 1	3.6	5.3	4.9	2.5	2.2	4.9	4.2	2.8
2	3.7	4.9	4.6	3.0	1.9	4.6	6.8	5.4
3	3.0	4.6	4.7	3.1	2.0	4.8	6.9	4.8
4	2.7	4.4	4.8	2.8	1.9	3.9	6.6	4.4
5	2.9	4.4	4.9	2.8	1.8	3.7	6.3	3.2
6	3.2	4.2	3.7	2.6	1.7	3.9	4.5	3.0
7	4.0	4.7	4.0	2.7	1.7	4.2	4.6	2.7
8	3.6	4.5	5.0	2.8	1.8	4.0	5.0	3.4
9	3.2	4.4	4.0	2.6	1.6	3.9	3.6	2.7
10	3.1	4.7	4.3	2.5	1.5	3.8	4.0	2.8
11	3.4	5.0	4.1	2.3	1.7	3.5	3.6	2.9
12	3.3	5.7	3.6	2.4	1.7	4.4	3.8	3.2
2005. 1	4.3	5.8	4.0	2.6	2.3	5.0	4.6	3.2
2	4.2	5.5	5.0	2.8	2.0	4.8	6.3	4.0
3	3.8	4.9	5.5	3.0	2.0	4.8	5.6	3.7
4	3.6	4.3	5.7	3.0	1.8	4.5	5.4	3.6
5	3.4	4.2	5.1	2.5	2.0	4.0	5.0	3.0
6	3.7	4.5	5.1	2.3	1.8	4.3	5.0	2.9

주: 2000년부터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바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14〉 주요 노동이동지표

(단위: 천명, %)

	당월입직(입직률)	신규채용(신규채용률)	당월이직(이직률)	퇴직 및 해고 (퇴직 및 해고율)
1998	86.4 (1.78)	64.9 (1.34)	129.7 (2.68)	103.4 (2.13)
1999	155.7 (2.75)	129.9 (2.29)	142.3 (2.51)	105.0 (1.85)
2000	165.6 (2.89)	144.1 (2.52)	152.4 (2.66)	120.6 (2.10)
2001	138.1 (2.34)	123.0 (2.08)	150.4 (2.55)	122.3 (2.07)
2002	152.2 (2.52)	137.0 (2.27)	151.1 (2.50)	122.0 (2.02)
2003	153.5 (2.39)	139.9 (2.18)	158.7 (2.47)	142.8 (2.22)
2001. 1/4	157.6 (2.65)	134.6 (2.26)	165.8 (2.79)	127.1 (2.14)
2/4	137.7 (2.32)	122.5 (2.07)	148.7 (2.51)	120.9 (2.04)
3/4	133.7 (2.27)	121.3 (2.06)	147.6 (2.51)	122.6 (2.08)
4/4	123.4 (2.11)	113.5 (1.94)	139.5 (2.39)	118.5 (2.03)
2002. 1/4	161.3 (2.68)	142.5 (2.37)	158.4 (2.63)	130.7 (2.17)
2/4	156.1 (2.59)	140.3 (2.32)	158.3 (2.62)	123.9 (2.05)
3/4	149.5 (2.48)	134.2 (2.22)	146.8 (2.43)	116.5 (1.93)
4/4	142.1 (2.35)	131.2 (2.17)	140.8 (2.33)	116.9 (1.94)
2003. 1/4	187.2 (2.90)	167.5 (2.60)	186.3 (2.89)	165.0 (2.56)
2/4	154.8 (2.40)	139.7 (2.17)	165.2 (2.56)	146.9 (2.28)
3/4	137.6 (2.14)	126.6 (1.97)	144.0 (2.24)	130.8 (2.04)
4/4	134.6 (2.11)	125.8 (1.97)	139.4 (2.18)	128.4 (2.01)
2004. 1/4	171.6 (2.73)	152.0 (2.42)	172.0 (2.73)	150.6 (2.39)
2/4	132.5 (2.11)	118.4 (1.88)	147.0 (2.34)	130.7 (2.08)
3/4	124.1 (1.99)	109.0 (1.75)	135.3 (2.17)	117.7 (1.89)
4/4	113.2 (1.82)	100.1 (1.61)	123.7 (1.99)	107.5 (1.73)
2002. 7	160.4 (2.66)	145.3 (2.41)	148.0 (2.46)	115.0 (1.91)
2002. 8	145.7 (2.41)	128.5 (2.13)	153.3 (2.54)	121.5 (2.01)
9	142.5 (2.36)	128.6 (2.13)	139.0 (2.30)	113.0 (1.87)
10	151.2 (2.51)	139.0 (2.30)	153.0 (2.53)	126.6 (2.10)
11	150.3 (2.49)	140.0 (2.32)	138.1 (2.29)	116.6 (1.93)
12	124.8 (2.06)	114.7 (1.90)	131.3 (2.17)	107.6 (1.78)
2003. 1	180.7 (2.80)	160.4 (2.49)	177.2 (2.67)	146.6 (2.27)
2	168.4 (2.61)	148.2 (2.30)	179.7 (2.78)	158.9 (2.46)
3	212.4 (3.29)	193.9 (3.01)	207.1 (3.21)	189.5 (2.94)
4	175.6 (2.72)	154.1 (2.39)	170.5 (2.64)	148.0 (2.29)
5	143.6 (2.22)	129.8 (2.01)	169.6 (2.63)	148.0 (2.29)
6	145.1 (2.26)	135.3 (2.10)	155.7 (2.42)	144.5 (2.25)
7	144.9 (2.26)	132.8 (2.07)	146.1 (2.27)	131.8 (2.05)
8	134.9 (2.10)	124.1 (1.93)	146.8 (2.29)	133.4 (2.08)
9	132.9 (2.07)	122.9 (1.92)	139.0 (2.17)	127.3 (1.99)
10	147.2 (2.30)	137.4 (2.15)	154.8 (2.42)	143.0 (2.23)
11	128.9 (2.02)	120.6 (1.89)	139.9 (2.19)	128.1 (2.00)
12	127.7 (2.00)	119.4 (1.87)	123.5 (1.98)	114.2 (1.79)
2004. 1	158.1 (2.51)	140.1 (2.22)	166.1 (2.63)	148.8 (2.36)
2	165.8 (2.63)	145.8 (2.32)	171.5 (2.72)	144.7 (2.30)
3	190.8 (3.03)	170.3 (2.71)	178.5 (2.84)	158.4 (2.52)
4	143.5 (2.28)	128.9 (2.05)	155.8 (2.47)	136.3 (2.16)
5	127.6 (2.03)	116.6 (1.85)	145.2 (2.31)	127.7 (2.03)
6	126.2 (2.01)	109.8 (1.75)	140.2 (2.23)	128.1 (2.04)
7	131.3 (2.10)	115.6 (1.85)	142.6 (2.28)	123.5 (1.97)
8	123.7 (1.98)	106.9 (1.71)	140.6 (2.25)	122.5 (1.96)
9	117.3 (1.88)	104.6 (1.68)	122.7 (1.97)	107.2 (1.72)
10	120.2 (1.93)	106.7 (1.71)	133.3 (2.14)	113.2 (1.82)
11	113.4 (1.83)	100.0 (1.61)	126.3 (2.03)	111.3 (1.79)
12	106.0 (1.71)	93.7 (1.51)	111.4 (1.80)	97.9 (1.58)
2005. 1	128.6 (2.03)	109.8 (1.74)	120.6 (1.91)	104.3 (1.65)
2	127.1 (2.01)	102.2 (1.61)	155.2 (2.45)	130.3 (2.06)
3	209.2 (3.32)	163.9 (2.68)	196.9 (3.12)	160.7 (2.55)
4	170.4 (2.70)	144.9 (2.29)	171.4 (2.71)	144.4 (2.29)

주: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15〉 사업체 규모별 노동이동

(단위: %)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		6규모	
	입직률	이직률										
1999	3.39	3.02	3.15	2.93	3.18	2.73	2.72	2.51	1.91	1.85	1.59	1.60
2000	3.22	2.85	3.25	3.10	3.18	2.94	2.86	2.65	2.05	2.13	2.03	1.72
2001	2.80	2.71	2.76	2.87	2.51	2.83	2.23	2.62	1.54	2.19	1.38	1.56
2002	2.89	2.84	2.90	2.91	2.95	2.84	2.36	2.40	1.93	1.97	1.27	1.28
2003	2.65	2.73	2.96	2.96	2.61	2.84	2.12	2.31	2.13	2.15	1.39	1.31
2001. 1/4	3.23	2.92	3.20	3.01	2.70	2.98	2.41	2.75	1.65	3.18	1.76	2.00
2/4	2.86	2.70	2.81	2.96	2.47	2.80	2.05	2.54	1.42	1.94	1.42	1.36
3/4	2.66	2.67	2.53	2.89	2.56	2.77	2.31	2.71	1.73	2.06	1.23	1.34
4/4	2.48	2.55	2.49	2.60	2.30	2.76	2.16	2.47	1.37	1.55	1.11	1.54
2002. 1/4	3.09	2.91	2.86	2.83	3.14	3.03	2.61	2.54	2.04	2.31	1.54	1.61
2/4	2.91	3.02	3.16	3.23	2.86	2.84	2.36	2.51	1.88	2.02	1.37	1.21
3/4	2.82	2.74	2.80	2.84	3.02	2.82	2.31	2.34	1.89	1.82	1.15	1.17
4/4	2.73	2.67	2.77	2.74	2.77	2.68	2.15	2.21	1.89	1.72	1.01	1.12
2003. 1/4	3.30	3.27	3.42	3.47	3.07	3.27	2.65	2.50	2.68	2.52	1.90	1.70
2/4	2.87	2.92	3.04	2.99	2.61	3.11	2.10	2.42	1.96	2.18	1.24	1.17
3/4	2.16	2.58	2.64	2.65	2.39	2.49	1.92	2.22	2.01	1.90	1.36	1.19
4/4	2.28	2.15	2.74	2.74	2.38	2.47	1.80	2.08	1.85	2.01	1.08	1.17
2004. 1/4	2.84	2.98	3.23	3.36	2.77	2.81	2.44	2.45	2.33	2.18	2.13	1.79
2/4	2.41	2.72	2.37	2.64	2.32	2.53	1.88	2.18	1.81	2.01	1.37	1.43
3/4	2.12	2.38	2.25	2.49	2.00	2.26	1.86	2.18	1.89	1.88	1.56	1.35
4/4	2.01	1.88	2.01	2.18	2.07	2.20	1.58	1.92	1.66	1.86	1.27	1.61
2002. 7	3.11	3.00	3.03	2.82	3.11	2.77	2.48	2.24	2.00	1.73	1.34	1.31
8	2.79	2.54	2.68	3.16	3.07	3.08	2.22	2.41	1.80	1.77	0.99	1.07
9	2.56	2.69	2.69	2.54	2.89	2.61	2.24	2.35	1.88	1.96	1.12	1.14
10	2.88	3.08	2.96	2.98	3.05	2.77	2.16	2.50	1.99	1.84	1.09	1.16
11	3.09	2.44	2.81	2.62	2.98	2.77	2.26	2.18	1.84	1.68	1.06	1.17
12	2.22	2.49	2.54	2.63	2.29	2.49	2.03	1.94	1.85	1.63	0.88	1.02
2003. 1	3.05	3.12	3.47	3.26	2.62	2.93	2.84	2.40	2.80	2.23	1.84	1.48
2	2.98	3.27	3.13	3.21	2.78	3.11	2.33	2.55	2.35	2.49	1.66	1.62
3	3.87	3.42	3.66	3.93	3.80	3.77	2.79	2.56	2.89	2.84	2.21	2.01
4	3.32	3.17	3.34	3.10	2.95	3.08	2.39	2.46	2.10	2.30	1.54	1.22
5	2.69	2.78	2.69	3.03	2.43	3.35	2.09	2.51	1.94	2.09	1.09	1.21
6	2.59	2.80	3.09	2.85	2.45	2.89	1.80	2.28	1.86	2.16	1.10	1.06
7	2.25	2.33	2.91	2.83	2.39	2.49	1.94	2.23	2.16	1.96	1.49	1.29
8	2.01	2.78	2.58	2.63	2.42	2.48	1.88	2.32	1.88	1.90	1.37	1.21
9	2.22	2.63	2.44	2.49	2.35	2.49	1.94	2.11	1.99	1.85	1.22	1.05
10	2.58	2.67	3.09	2.88	2.48	2.75	1.94	2.38	1.78	2.27	1.22	1.18
11	2.02	1.94	2.61	2.92	2.40	2.55	1.77	1.98	1.69	2.03	1.01	1.14
12	2.23	1.85	2.53	2.43	2.26	2.12	1.68	1.88	2.09	1.73	1.00	1.18
2004. 1	2.77	3.04	2.93	3.29	2.55	2.73	2.19	2.23	2.20	2.08	1.90	1.58
2	2.82	2.61	3.33	3.63	2.61	2.63	2.41	2.58	2.02	2.23	1.76	1.80
3	2.92	3.30	3.44	3.15	3.15	3.07	2.72	2.54	2.78	2.24	2.72	2.00
4	2.52	2.88	2.59	2.60	2.56	2.75	2.06	2.49	1.89	2.03	1.44	1.54
5	2.43	2.56	2.26	2.80	2.13	2.46	1.84	2.03	1.78	2.16	1.35	1.35
6	2.27	2.71	2.27	2.52	2.27	2.39	1.73	2.01	1.75	1.83	1.32	1.40
7	2.49	2.58	2.24	2.72	2.11	2.17	1.97	2.22	1.98	2.04	1.60	1.53
8	1.95	2.28	2.36	2.59	1.94	2.51	1.83	2.37	1.96	1.81	1.62	1.30
9	1.93	2.28	2.15	2.16	1.95	2.10	1.79	1.94	1.72	1.80	1.46	1.23
10	2.00	2.05	2.26	2.25	2.14	2.19	1.67	1.81	1.69	2.23	1.38	2.30
11	2.15	1.86	1.91	2.31	2.25	2.41	1.55	1.99	1.45	1.70	1.13	1.37
12	1.88	1.73	1.85	1.98	1.82	2.00	1.52	1.96	1.84	1.65	1.29	1.15
2005. 1	1.53	1.76	1.85	1.04	2.17	2.05	2.14	2.08	2.00	1.85	2.56	1.61
2	1.90	2.41	2.44	2.44	2.09	2.94	1.82	2.52	1.56	2.10	1.62	1.81
3	3.89	3.28	3.70	3.56	3.42	3.56	3.02	2.92	2.42	2.42	2.53	2.03
4	3.41	2.90	2.81	3.32	2.97	2.89	2.36	2.62	2.02	2.22	1.93	1.53

주: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이며, 1규모: 5~9인, 2규모: 10~29인, 3규모: 30~99인, 4규모: 100~299인, 5규모: 300~499인, 6규모: 500~999인을 의미.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16〉 사업체 규모별 노동이동

(단위 : 천명)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		6규모	
	입직자	이직자										
1999	26.2	23.3	41.0	38.2	40.0	34.4	25.0	23.1	5.5	5.3	17.9	18.0
2000	24.3	21.5	43.0	41.0	43.2	39.9	29.1	26.9	5.7	6.0	20.3	17.2
2001	24.9	24.0	39.4	41.0	34.8	39.3	21.6	25.3	3.9	5.6	13.5	15.2
2002	27.0	26.5	43.8	44.0	41.3	39.8	22.7	23.1	5.8	5.9	11.7	11.8
2003	25.2	21.9	44.9	44.9	38.0	41.3	22.8	24.8	7.7	7.8	15.0	14.0
2001. 1/4	28.4	25.7	45.9	43.2	38.0	42.0	23.7	27.0	4.3	8.3	17.3	19.6
2/4	25.4	23.9	40.5	42.8	34.4	39.1	20.0	24.8	3.6	4.9	13.8	13.2
3/4	23.7	23.8	36.1	41.3	35.4	38.3	22.2	26.1	4.3	5.2	12.0	13.1
4/4	22.1	22.7	35.2	36.7	31.6	37.9	20.5	23.5	3.4	3.8	10.7	14.9
2002. 1/4	28.8	27.1	43.3	42.8	43.8	42.2	25.2	24.5	6.1	6.9	14.2	14.8
2/4	27.3	28.3	47.8	48.9	40.0	39.7	22.8	24.2	5.6	6.0	12.6	11.2
3/4	26.4	25.7	42.3	42.8	42.3	39.5	22.3	22.5	5.7	5.4	10.6	10.8
4/4	25.6	25.0	41.8	41.4	39.1	37.8	20.6	21.2	5.7	5.1	9.3	10.3
2003. 1/4	31.4	31.1	51.9	52.7	45.2	48.2	28.7	27.1	9.8	9.2	20.2	18.1
2/4	27.4	27.8	46.0	45.3	38.2	45.5	22.7	26.2	7.2	8.0	13.3	12.5
3/4	20.5	24.5	40.1	40.2	34.5	35.9	20.6	23.8	7.3	6.9	14.6	12.7
4/4	21.4	20.2	41.6	41.6	34.2	35.6	19.1	22.1	6.7	7.3	11.6	12.6
2004. 1/4	28.9	30.3	51.1	53.1	39.4	39.9	24.5	24.7	7.5	7.1	20.1	16.9
2/4	24.4	27.5	37.4	41.7	32.9	35.9	18.9	21.9	5.9	6.5	13.0	13.6
3/4	21.3	23.9	35.2	38.9	28.2	31.9	18.5	21.7	6.1	6.1	14.8	12.9
4/4	20.0	18.8	31.2	33.9	29.0	30.9	15.6	19.0	5.3	6.0	12.0	15.3
2002. 10	27.0	28.9	44.6	44.9	42.9	39.0	20.8	24.0	5.9	5.5	10.1	10.7
11	28.9	22.8	42.4	39.5	42.0	39.0	21.6	20.9	5.5	5.0	9.8	10.8
12	20.9	23.5	38.3	39.7	32.4	35.2	19.5	18.6	5.5	4.9	8.1	9.4
2003. 1	29.0	29.7	52.7	49.4	38.7	43.3	30.6	25.9	10.2	8.1	19.5	15.7
2	28.4	31.1	47.5	48.8	41.0	45.8	25.2	27.6	8.6	9.1	17.6	17.3
3	36.7	32.5	55.6	59.7	55.9	55.4	30.2	27.7	10.6	10.4	23.5	21.4
4	31.7	30.2	50.5	46.9	43.4	45.2	26.0	26.7	7.7	8.4	16.5	13.1
5	25.7	26.6	40.8	46.0	35.7	49.2	22.7	27.3	7.1	7.6	11.7	13.0
6	24.7	26.7	46.7	43.1	35.7	42.1	19.4	24.6	6.8	7.9	11.8	11.3
7	21.4	22.2	44.1	42.9	34.7	36.1	20.9	24.0	7.8	7.1	16.0	13.8
8	19.1	26.4	39.1	39.9	35.0	35.8	20.2	24.8	6.8	6.9	14.7	13.0
9	20.9	24.8	37.0	37.7	33.9	35.9	20.7	22.5	7.2	6.7	13.1	11.3
10	24.2	25.1	46.8	43.7	35.8	39.8	20.7	25.4	6.5	8.3	13.1	12.7
11	19.0	18.2	39.6	44.3	34.5	36.7	18.8	21.0	6.1	7.4	10.9	12.3
12	21.0	17.4	38.4	36.8	32.4	30.4	17.8	19.9	7.5	6.2	10.7	12.7
2004. 1	28.3	30.9	46.5	52.3	36.3	38.8	22.0	22.5	7.1	6.7	17.9	14.9
2	28.7	26.5	52.6	57.4	37.0	37.3	24.3	26.0	6.5	7.2	16.7	17.1
3	29.7	33.6	54.3	49.6	44.8	43.6	27.3	25.5	9.0	7.3	25.7	18.9
4	25.6	29.2	40.9	41.1	36.5	39.1	20.7	25.1	6.1	6.6	13.7	14.7
5	24.6	25.9	35.7	44.3	30.3	34.8	18.5	20.4	5.8	7.0	12.8	12.8
6	22.9	27.4	35.6	39.7	32.1	33.8	17.3	20.2	5.7	5.9	12.5	13.3
7	25.0	25.9	35.2	42.6	29.8	30.7	19.7	22.2	6.4	6.6	15.2	14.6
8	19.6	22.9	36.9	40.5	27.3	35.5	18.2	23.6	6.3	5.8	15.4	12.4
9	19.3	22.9	33.5	33.6	27.3	29.5	17.7	19.2	5.6	5.8	14.0	11.8
10	19.9	20.5	35.2	35.1	29.9	30.7	16.5	17.9	5.5	7.2	13.2	22.0
11	21.4	18.5	29.8	35.9	31.5	33.8	15.3	19.6	4.7	5.5	10.7	13.0
12	18.8	17.3	28.7	30.7	25.4	28.0	14.9	19.3	5.9	5.3	12.2	10.8
2005. 1	15.8	18.1	28.8	30.2	31.8	30.0	21.5	20.9	6.7	6.2	24.2	15.2
2	19.5	24.7	38.0	37.8	30.6	43.0	18.4	25.4	5.2	7.0	15.4	17.2
3	39.7	33.4	57.5	55.4	49.7	51.6	30.2	29.1	8.1	8.0	24.1	19.3
4	34.9	29.7	43.7	51.6	43.0	41.8	23.6	26.2	6.7	7.3	18.4	14.6

주 :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규모: 5~9인, 2규모: 10~29인, 3규모: 30~99인, 4규모: 100~299인, 5규모: 300~499인, 6규모: 500~999인을 의미.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17〉 주요 업종 노동이동

(단위 :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점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1998	1.79	2.90	2.55	3.33	1.87	3.36	1.35	3.15	1.71	2.04	1.38	2.18	2.32	3.07
1999	2.75	2.47	3.38	2.87	3.22	3.06	3.62	3.28	2.33	2.02	2.20	2.06	3.19	3.20
2000	2.88	2.59	3.44	3.36	3.29	3.18	3.16	3.18	2.64	2.13	2.02	2.05	3.81	3.43
2001	2.14	2.45	2.91	3.28	2.82	2.86	2.94	3.15	2.14	2.49	1.76	2.04	3.44	3.27
2002	2.56	2.54	2.93	2.87	2.65	2.70	3.46	3.41	2.26	2.25	1.89	1.84	3.33	3.29
2003	2.38	2.52	2.76	2.68	2.48	2.72	3.11	3.20	1.97	2.31	1.75	1.73	3.36	2.83
2001.1/4	2.28	2.52	3.08	3.98	3.28	2.93	3.33	3.63	2.10	2.68	2.47	2.65	4.08	3.50
2/4	2.20	2.50	2.96	3.47	2.81	2.86	3.07	3.04	2.08	2.38	1.49	1.85	3.23	3.32
3/4	2.07	2.35	2.82	3.10	2.68	2.88	2.33	3.04	2.19	2.50	1.82	1.98	3.33	3.21
4/4	2.00	2.45	2.75	2.55	2.52	2.79	3.04	2.90	2.17	2.38	1.25	1.66	3.14	3.05
2002.1/4	2.39	2.59	3.33	3.29	2.65	2.62	3.37	3.03	2.53	2.21	2.12	2.02	3.62	3.24
2/4	2.56	2.66	3.22	3.18	2.62	2.85	3.67	3.19	2.36	2.28	2.05	1.91	3.46	3.27
3/4	2.57	2.42	2.53	2.66	2.70	2.59	3.40	3.77	2.24	2.31	2.11	1.85	3.21	3.42
4/4	2.53	2.43	2.73	2.48	2.66	2.49	3.12	3.47	2.09	2.13	1.37	1.69	3.18	3.20
2003.1/4	2.76	2.92	3.35	3.18	3.01	2.95	3.19	2.92	2.28	2.25	2.33	2.47	3.67	3.84
2/4	2.42	2.66	2.70	2.73	2.57	2.98	2.83	3.26	1.99	2.50	1.84	1.81	3.53	3.31
3/4	2.15	2.22	2.45	2.39	2.00	2.58	3.15	3.62	1.81	2.07	1.45	1.50	3.58	3.24
4/4	2.18	2.28	2.56	2.43	2.34	2.36	3.27	2.99	1.78	2.42	1.39	1.14	3.15	3.11
2004.1/4	2.55	2.49	3.21	3.23	2.87	3.07	2.72	3.62	1.92	2.09	2.37	2.55	3.17	3.40
2/4	2.13	2.38	2.54	2.87	2.24	2.39	2.86	3.69	1.81	2.16	1.68	1.51	1.86	2.37
3/4	2.03	2.07	2.60	2.39	2.01	2.16	2.69	3.40	1.64	1.91	1.54	1.91	1.76	2.31
4/4	1.93	2.15	2.37	2.09	1.83	2.13	2.63	3.11	1.49	1.60	1.02	1.05	1.73	1.93
2002. 11	2.70	2.43	2.59	2.23	2.87	2.28	2.91	2.32	2.24	2.47	1.62	1.48	3.51	3.20
12	2.23	2.24	2.74	2.59	2.36	2.19	2.46	4.01	1.95	1.94	1.14	1.55	2.75	3.02
2003. 1	2.63	2.71	3.58	2.89	3.34	2.98	2.15	2.79	2.21	2.07	2.51	2.56	4.15	3.77
2	2.50	2.83	3.32	3.21	3.01	2.64	3.12	2.87	2.06	2.36	2.35	2.30	3.61	3.54
3	3.16	3.23	3.15	3.43	2.69	3.23	4.30	3.09	2.56	2.31	2.14	2.55	3.27	4.20
4	2.69	2.66	3.18	3.40	3.12	3.46	3.23	3.44	2.42	2.25	2.64	2.02	3.32	3.27
5	2.22	2.70	3.01	2.89	2.03	2.95	2.73	3.43	1.74	3.03	1.69	2.12	3.36	3.33
6	2.34	2.64	1.92	1.91	2.55	2.54	2.53	2.90	1.82	2.22	1.20	1.30	3.90	3.32
7	2.25	2.19	2.91	3.03	2.28	2.63	2.69	3.40	1.86	2.28	1.59	1.59	3.78	3.33
8	2.15	2.30	2.24	1.95	1.80	2.79	2.81	3.37	1.75	1.91	1.58	1.73	3.85	3.34
9	2.05	2.15	2.19	2.18	1.93	2.30	3.95	4.10	1.80	2.02	1.17	1.17	3.10	3.05
10	2.36	2.49	2.23	2.36	2.94	2.73	2.93	2.75	1.90	2.85	1.85	1.36	3.12	3.04
11	2.20	2.36	2.42	2.36	1.98	2.43	2.52	2.81	1.76	2.37	1.27	1.20	3.67	3.53
12	1.98	2.00	3.02	2.56	2.09	1.91	4.35	3.41	1.67	2.02	1.06	0.88	2.65	2.75
2004. 1	2.29	2.36	3.40	3.80	2.93	3.27	2.48	3.12	1.90	2.19	2.04	2.07	2.85	2.80
2	2.53	2.60	3.13	3.07	3.58	2.50	1.60	4.37	1.92	2.08	2.72	2.96	3.03	5.18
3	2.84	2.50	3.08	2.83	2.12	3.43	4.13	3.37	1.93	2.00	2.34	2.61	3.65	2.19
4	2.30	2.38	2.42	2.92	2.29	2.65	2.92	3.35	2.13	2.68	2.10	2.01	1.67	2.28
5	1.95	2.42	2.41	2.76	2.37	2.05	3.02	4.52	1.76	1.98	1.51	1.27	2.15	3.04
6	2.13	2.32	2.78	2.93	2.07	2.47	2.63	3.20	1.55	1.83	1.42	1.25	1.77	1.79
7	2.12	2.15	2.75	2.81	1.77	2.25	3.25	2.62	1.83	2.10	1.73	2.32	1.92	2.19
8	2.02	2.14	2.65	2.56	2.23	2.10	2.21	3.69	1.49	1.84	1.99	2.42	1.61	2.62
9	1.95	1.93	2.42	1.81	2.04	2.12	2.60	3.88	1.60	1.79	0.90	1.00	1.75	2.14
10	2.06	2.42	1.80	1.96	2.28	2.35	2.83	3.03	1.31	1.78	1.06	1.08	2.11	2.03
11	2.00	2.24	2.55	1.93	1.74	2.29	2.63	3.24	1.46	1.45	1.08	1.15	1.71	2.15
12	1.73	1.78	2.75	2.37	1.47	1.74	2.42	3.07	1.69	1.57	0.92	0.91	1.36	1.60
2005. 1	1.99	1.89	2.37	2.71	2.00	2.11	2.29	2.60	1.75	1.64	1.84	1.39	1.72	2.13
2	1.98	2.44	2.81	3.15	1.76	2.09	1.87	2.63	1.81	2.15	2.21	2.21	1.73	2.30
3	3.02	3.07	4.50	4.15	2.84	2.84	4.16	3.82	2.47	2.37	2.54	2.36	2.14	2.31
4	2.40	2.76	3.97	3.34	2.73	2.81	4.01	4.17	2.56	2.04	2.16	2.37	2.37	2.67

주 :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1999~2001년 6차 산업분류, 2002년 8차 산업분류. 도소매는 1999~2001년에는 도소매 및 자동차용품수리업, 2002년 이후에는 도매 및 소매업을 의미. 부동산임대는 1999~2001년에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002년 이후에는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의미.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1〉 임금총액의 내역별 추이(전산업)

(단위: 천원/월, %)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1999		1,544 ( -)	1,102 ( -)	117 ( -)	325 ( -)
2000		1,668 ( 8.0)	1,182 ( 7.2)	133 (14.1)	352 ( 8.5)
2001		1,752 ( 5.1)	1,257 ( 6.3)	131 (-1.6)	365 ( 3.4)
2002		1,948 (11.2)	1,408 ( 2.1)	126 (-3.9)	413 ( 13.4)
2003		2,127 ( 9.2)	1,532 ( 8.8)	135 ( 7.3)	460 ( 11.4)
2004		2,255 ( 6.0)	1,636 ( 6.8)	137 ( 1.7)	482 ( 4.6)
2003.	1	2,384 (35.3)	1,502 ( 9.0)	128 (10.9)	754 (181.1)
	2	1,962 (-2.7)	1,467 ( 9.0)	124 (11.3)	371 (-33.8)
	3	1,962 ( 8.7)	1,514 ( 9.1)	131 ( 6.3)	317 ( 7.8)
	4	2,012 ( 8.1)	1,503 ( 8.6)	131 ( 4.1)	379 ( 7.5)
	5	1,866 ( 9.0)	1,519 ( 8.5)	138 ( 8.0)	209 ( 13.5)
	6	2,168 ( 8.1)	1,520 ( 8.4)	137 ( 7.7)	511 ( 7.3)
	7	2,072 ( 6.9)	1,531 ( 8.3)	128 ( 0.2)	414 ( 3.8)
	8	2,144 (12.8)	1,536 ( 8.9)	134 ( 4.8)	475 ( 30.5)
	9	2,282 ( 6.6)	1,543 ( 8.6)	139 ( 9.3)	600 ( 1.1)
	10	2,034 ( 7.9)	1,545 ( 8.2)	148 (10.1)	341 ( 5.9)
	11	1,939 ( 9.0)	1,553 ( 9.0)	143 ( 9.7)	243 ( 8.6)
	12	2,710 ( 5.7)	1,652 ( 9.7)	143 ( 5.8)	915 ( -0.9)
2004.	1	2,388 ( 0.2)	1,619 ( 7.8)	131 ( 2.0)	639 (-15.3)
	2	2,088 ( 6.4)	1,571 ( 7.1)	134 ( 7.7)	383 ( 3.3)
	3	2,078 ( 5.9)	1,605 ( 6.1)	131 (-0.2)	341 ( 7.8)
	4	2,109 ( 4.8)	1,598 ( 6.3)	136 ( 4.2)	375 ( -1.0)
	5	1,989 ( 6.6)	1,616 ( 6.4)	142 ( 3.1)	232 ( 10.7)
	6	2,247 ( 3.6)	1,624 ( 6.9)	137 ( 0.1)	486 ( -4.9)
	7	2,256 ( 8.9)	1,639 ( 7.0)	133 ( 4.0)	484 ( 17.1)
	8	2,220 ( 3.5)	1,638 ( 6.6)	136 ( 1.8)	447 ( -5.9)
	9	2,495 ( 9.3)	1,652 ( 7.0)	141 ( 1.6)	702 ( 17.1)
	10	2,145 ( 5.5)	1,653 ( 7.0)	148 ( 0.0)	344 ( 0.9)
	11	2,045 ( 5.5)	1,659 ( 6.8)	142 (-1.0)	245 ( 0.8)
	12	3,007 (11.0)	1,757 ( 6.4)	140 (-2.1)	1,110 ( 21.3)
2005.	1	2,273 (-4.8)	1,752 ( 8.2)	140 ( 6.9)	382 (-40.2)
	2	2,524 (20.9)	1,701 ( 8.3)	138 ( 3.7)	684 ( 78.4)
	3	2,248 ( 8.2)	1,724 ( 7.4)	148 (12.8)	375 ( 9.9)
	4	2,268 ( 7.5)	1,722 ( 7.7)	150 (10.3)	397 ( 5.7)

주: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2〉 임금총액의 내역별 추이(제조업)

(단위: 천원/월, %)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1999	1,443 ( - )	963 ( - )	179 ( - )	301 ( - )	
2000	1,568 ( 8.6)	1,024 ( 6.4)	205 (14.6)	338 ( 12.4)	
2001	1,659 ( 5.8)	1,095 ( 6.9)	204 (-0.6)	361 ( 6.7)	
2002	1,857 (11.9)	1,266 (15.6)	197 (-3.4)	395 ( 9.4)	
2003	2,018 ( 8.7)	1,372 ( 8.4)	205 ( 4.2)	441 ( 11.7)	
2004	2,209 ( 9.5)	1,485 ( 8.3)	219 ( 6.6)	505 ( 14.6)	
2003.	1	2,315 (41.4)	1,348 (10.1)	198 (10.8)	769 (227.3)
	2	1,831 (-5.6)	1,294 ( 8.9)	187 ( 9.8)	351 (-39.7)
	3	1,808 ( 9.2)	1,369 (10.1)	201 ( 0.6)	237 ( 12.5)
	4	1,882 ( 8.0)	1,341 ( 8.5)	201 ( 0.6)	340 ( 10.7)
	5	1,713 ( 6.9)	1,354 ( 7.7)	213 ( 4.9)	146 ( 2.3)
	6	2,033 ( 7.2)	1,356 ( 7.9)	205 ( 3.3)	472 ( 6.8)
	7	1,966 ( 4.9)	1,364 ( 7.6)	190 (-4.7)	412 ( 1.1)
	8	2,059 (12.9)	1,376 ( 8.5)	202 ( 0.0)	482 ( 35.2)
	9	2,146 ( 5.9)	1,385 ( 7.9)	208 ( 6.6)	553 ( 1.1)
	10	1,963 ( 6.9)	1,395 ( 7.0)	228 ( 8.7)	341 ( 5.0)
	11	1,781 (10.8)	1,391 ( 8.5)	216 ( 6.9)	174 ( 41.8)
	12	2,722 ( 3.2)	1,495 ( 8.5)	213 ( 4.0)	1,015 ( -3.8)
2004.	1	2,307 (-0.3)	1,466 ( 8.8)	199 ( 0.1)	642 (-16.5)
	2	2,041 (11.5)	1,410 ( 9.0)	205 ( 9.7)	426 ( 21.5)
	3	1,975 ( 9.2)	1,469 ( 7.3)	210 ( 4.4)	296 ( 24.6)
	4	2,035 ( 8.1)	1,449 ( 8.0)	221 (10.0)	366 ( 7.4)
	5	1,863 ( 8.8)	1,464 ( 8.2)	230 ( 8.1)	169 ( 15.7)
	6	2,175 ( 7.0)	1,470 ( 8.4)	218 ( 6.4)	487 ( 3.2)
	7	2,239 (13.9)	1,474 ( 8.1)	211 (10.8)	554 ( 34.4)
	8	2,131 ( 3.5)	1,483 ( 7.8)	218 ( 8.2)	430 (-10.8)
	9	2,441 (13.8)	1,507 ( 8.8)	227 ( 9.3)	707 ( 27.9)
	10	2,088 ( 6.4)	1,510 ( 8.3)	238 ( 4.5)	340 ( -0.1)
	11	1,916 ( 7.6)	1,511 ( 8.6)	227 ( 5.0)	178 ( 2.3)
	12	3,311 (21.6)	1,612 ( 7.9)	221 ( 3.9)	1,478 ( 45.6)
2005.	1	2,200 (-4.7)	1,606 ( 9.5)	232 (16.8)	362 (-43.7)
	2	2,607 (27.7)	1,539 ( 9.2)	224 ( 9.2)	844 ( 98.1)
	3	2,143 ( 8.5)	1,577 ( 7.4)	243 (15.7)	322 ( 9.1)
	4	2,273 (11.7)	1,577 ( 8.9)	251 (13.5)	445 ( 21.7)

주: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3〉 산업별 임금총액 추이

(단위: 천원/월)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1998	1,427	276	1,284	234	1,502	166	-	-
1999	1,544	325	1,443	301	1,576	245	-	-
2000	1,668	352	1,568	338	1,701	274	-	-
2001	1,752	365	1,659	361	1,687	221	-	-
2002	1,948	413	1,857	395	1,859	251	1,714	305
2003	2,127	460	2,018	441	2,072	278	1,861	349
2004	2,255	482	2,209	505	2,130	274	1,932	339
2003. 1	2,384	754	2,315	769	2,312	591	2,014	563
2	1,962	371	1,831	351	1,947	264	1,700	238
3	1,962	317	1,808	237	1,918	166	1,746	264
4	2,012	379	1,882	340	1,925	174	1,735	257
5	1,866	209	1,713	146	1,826	78	1,640	142
6	2,168	511	2,033	472	2,061	266	1,887	371
7	2,072	414	1,966	412	2,048	258	1,772	265
8	2,144	475	2,059	482	2,067	254	1,923	409
9	2,282	600	2,146	553	2,313	461	2,017	490
10	2,034	341	1,963	341	1,976	127	1,773	246
11	1,939	243	1,781	174	1,979	100	1,677	144
12	2,710	915	2,722	1,015	2,501	593	2,453	797
2004. 1	2,388	639	2,307	642	2,368	453	1,986	419
2	2,088	383	2,041	426	2,102	218	1,752	229
3	2,078	341	1,975	296	1,971	177	1,883	326
4	2,109	375	2,035	366	2,030	225	1,772	211
5	1,989	232	1,863	169	1,924	76	1,718	135
6	2,247	486	2,175	487	2,102	256	1,938	349
7	2,256	484	2,239	554	2,160	308	1,970	379
8	2,220	447	2,131	430	2,019	167	1,825	221
9	2,495	702	2,441	707	2,428	575	2,230	625
10	2,145	344	2,088	340	1,980	115	1,828	219
11	2,045	245	1,916	178	1,964	113	1,765	152
12	3,007	1,110	3,311	1,478	2,508	602	2,529	819
2005. 1	2,273	382	2,200	362	2,024	181	1,874	247
2	2,524	684	2,607	844	2,235	410	2,064	440
3	2,248	375	2,143	322	2,048	233	1,925	276
4	2,268	397	2,273	445	1,972	153	1,938	284

주: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4〉 사업체 규모별 임금추이(비농 전산업)

(단위 : 천원/월)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1999		1,192	(59.0)	1,376	(68.1)	1,439	(71.3)	1,561	(77.3)	1,794	(88.8)	2,019	(100.0)
2000		1,274	(58.0)	1,497	(68.2)	1,567	(71.4)	1,713	(78.0)	1,973	(89.9)	2,195	(100.0)
2001		1,344	(58.1)	1,606	(69.4)	1,680	(72.6)	1,785	(77.2)	2,135	(92.3)	2,313	(100.0)
2002		1,466	(53.9)	1,705	(62.7)	1,856	(68.3)	2,067	(76.0)	2,357	(86.7)	2,718	(100.0)
2003		1,543	(50.7)	1,808	(59.4)	2,005	(65.9)	2,230	(73.3)	2,474	(81.3)	3,043	(100.0)
2004		1,642	(49.3)	1,945	(58.5)	2,124	(63.9)	2,387	(71.8)	2,683	(80.7)	3,327	(100.0)
2003.	1	1,648	(43.5)	1,939	(51.2)	2,252	(59.5)	2,363	(62.4)	2,671	(70.5)	3,786	(100.0)
	2	1,424	(49.2)	1,677	(58.0)	1,761	(60.9)	2,061	(71.3)	2,351	(81.3)	2,892	(100.0)
	3	1,455	(54.1)	1,748	(65.0)	1,884	(70.1)	2,027	(75.4)	2,161	(80.4)	2,689	(100.0)
	4	1,450	(51.8)	1,695	(60.5)	1,880	(67.1)	2,204	(78.7)	2,448	(87.4)	2,802	(100.0)
	5	1,441	(60.9)	1,687	(71.3)	1,827	(77.2)	1,966	(83.1)	2,111	(89.2)	2,366	(100.0)
	6	1,547	(49.6)	1,800	(57.7)	2,037	(65.3)	2,322	(74.5)	2,589	(83.0)	3,119	(100.0)
	7	1,581	(56.5)	1,798	(64.3)	2,002	(71.6)	2,168	(77.5)	2,362	(84.5)	2,797	(100.0)
	8	1,543	(50.0)	1,820	(59.1)	2,010	(65.2)	2,253	(73.1)	2,515	(81.6)	3,082	(100.0)
	9	1,672	(51.3)	1,953	(60.0)	2,173	(66.7)	2,337	(71.8)	2,621	(80.5)	3,257	(100.0)
	10	1,495	(51.5)	1,694	(58.3)	1,901	(65.5)	2,162	(74.4)	2,418	(83.2)	2,905	(100.0)
	11	1,482	(59.6)	1,712	(68.8)	1,864	(74.9)	2,112	(84.9)	2,233	(89.7)	2,488	(100.0)
	12	1,781	(41.1)	2,180	(50.3)	2,468	(56.9)	2,797	(64.5)	3,221	(74.3)	4,338	(100.0)
2004.	1	1,767	(51.4)	2,068	(60.1)	2,327	(67.6)	2,484	(72.2)	2,816	(81.9)	3,440	(100.0)
	2	1,525	(48.1)	1,798	(56.8)	1,907	(60.2)	2,197	(69.3)	2,576	(81.3)	3,168	(100.0)
	3	1,559	(53.4)	1,845	(63.2)	2,008	(68.7)	2,186	(74.8)	2,343	(80.2)	2,921	(100.0)
	4	1,560	(51.8)	1,785	(59.3)	1,993	(66.2)	2,314	(76.8)	2,635	(87.5)	3,012	(100.0)
	5	1,548	(60.6)	1,838	(72.0)	1,925	(75.4)	2,132	(83.5)	2,287	(89.6)	2,553	(100.0)
	6	1,628	(50.1)	1,926	(59.3)	2,133	(65.7)	2,434	(75.0)	2,707	(83.4)	3,247	(100.0)
	7	1,699	(51.4)	1,941	(58.7)	2,144	(64.9)	2,329	(70.5)	2,694	(81.5)	3,304	(100.0)
	8	1,584	(49.2)	2,016	(62.6)	2,040	(63.3)	2,331	(72.4)	2,680	(83.2)	3,221	(100.0)
	9	1,809	(50.1)	2,161	(59.9)	2,404	(66.6)	2,635	(73.0)	2,892	(80.1)	3,610	(100.0)
	10	1,555	(49.6)	1,836	(58.6)	2,018	(64.4)	2,296	(73.2)	2,629	(83.9)	3,135	(100.0)
	11	1,541	(56.9)	1,839	(67.9)	1,984	(73.3)	2,205	(81.4)	2,440	(90.1)	2,708	(100.0)
	12	1,926	(34.3)	2,295	(40.9)	2,617	(46.7)	3,117	(55.6)	3,504	(62.5)	5,610	(100.0)
2005.	1	1,710	(51.5)	2,043	(61.6)	2,152	(64.9)	2,295	(69.2)	2,570	(77.5)	3,317	(100.0)
	2	1,833	(46.4)	2,150	(54.4)	2,283	(57.8)	2,650	(67.1)	2,981	(75.5)	3,949	(100.0)
	3	1,703	(53.5)	1,973	(61.9)	2,170	(68.1)	2,318	(72.8)	2,648	(83.1)	3,186	(100.0)
	4	1,703	(51.9)	1,954	(59.5)	2,125	(64.7)	2,437	(74.2)	2,683	(81.7)	3,283	(100.0)

주 :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 )안은 500인 이상 대비 임금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5〉 성별·내역별 임금 추이

(단위: 천원/월)

	남 자		여 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남성=100)	정액급여	(남성=100)
1998	1,579	1,157	1,006	(63.7)	755	(65.2)
1999	1,735	1,226	1,090	(62.8)	808	(65.9)
2000	1,885	1,320	1,178	(62.5)	870	(65.9)
2001	1,976	1,400	1,257	(63.6)	940	(67.2)
2002	2,193	1,574	1,393	(63.5)	1,035	(65.8)
2003	2,406	1,715	1,501	(62.4)	1,119	(65.3)
2004	2,558	1,830	1,579	(61.8)	1,201	(65.6)
2003. 1	2,684	1,683	1,711	(63.7)	1,095	(65.1)
2	2,226	1,642	1,369	(61.5)	1,073	(65.4)
3	2,220	1,697	1,381	(62.2)	1,101	(64.9)
4	2,278	1,683	1,418	(62.3)	1,099	(65.3)
5	2,100	1,701	1,342	(63.9)	1,111	(65.3)
6	2,450	1,701	1,534	(62.6)	1,114	(65.5)
7	2,334	1,713	1,485	(63.6)	1,123	(65.6)
8	2,433	1,718	1,495	(61.4)	1,126	(65.6)
9	2,576	1,726	1,619	(62.8)	1,133	(65.7)
10	2,298	1,728	1,441	(62.7)	1,133	(65.5)
11	2,188	1,737	1,379	(63.0)	1,139	(65.6)
12	3,094	1,857	1,843	(59.6)	1,189	(64.0)
2004. 1	2,704	1,817	1,686	(62.3)	1,179	(64.9)
2	2,371	1,757	1,458	(61.5)	1,157	(65.8)
3	2,353	1,800	1,464	(62.2)	1,173	(65.2)
4	2,389	1,788	1,487	(62.2)	1,174	(65.7)
5	2,234	1,807	1,444	(64.6)	1,189	(65.8)
6	2,542	1,818	1,587	(62.4)	1,193	(65.6)
7	2,555	1,832	1,589	(62.2)	1,208	(65.9)
8	2,529	1,832	1,532	(60.6)	1,204	(65.7)
9	2,827	1,848	1,753	(62.0)	1,213	(65.6)
10	2,418	1,846	1,534	(63.4)	1,222	(66.2)
11	2,298	1,852	1,479	(64.4)	1,226	(66.2)
12	3,477	1,970	1,949	(56.1)	1,276	(64.8)
2005. 1	2,562	1,964	1,623	(63.3)	1,274	(64.9)
2	2,868	1,901	1,749	(61.0)	1,252	(65.8)
3	2,538	1,926	1,595	(62.9)	1,273	(66.1)
4	2,569	1,922	1,595	(62.1)	1,272	(66.1)

주: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6〉 월평균 근로시간의 내역별 추이(전산업, 노동부 조사)

(단위: 시간/월)

	전 체	정 상	초 과
1999	206.6 ( - )	184.0 ( - )	22.6 ( - )
2000	204.8 ( -0.9)	181.4 ( -1.4)	23.4 ( -3.5)
2001	202.4 ( -1.2)	182.1 ( 0.4)	20.4 ( -12.8)
2002	199.6 ( -1.4)	181.6 ( -0.3)	18.0 ( -11.8)
2003	198.2 ( -0.7)	180.6 ( -0.6)	17.6 ( -2.2)
2004	197.2 ( -0.5)	180.5 ( -0.1)	16.7 ( -5.1)
2003. 1	200.0 ( -3.1)	182.4 ( -3.4)	17.6 ( 1.7)
2	187.2 ( 8.5)	170.8 ( 7.1)	16.4 ( 2.5)
3	200.8 ( -0.4)	182.9 ( -0.2)	17.9 ( -3.2)
4	202.7 ( -0.2)	185.3 ( 0.3)	17.5 ( -5.4)
5	197.9 ( -5.8)	179.6 ( -6.3)	18.3 ( 0.0)
6	196.1 ( 1.4)	178.4 ( 1.8)	17.7 ( -2.2)
7	202.1 ( -0.6)	185.4 ( 0.2)	16.8 ( -8.7)
8	193.8 ( -3.1)	176.7 ( -2.8)	17.1 ( -6.0)
9	186.0 ( -1.8)	168.7 ( -1.7)	17.3 ( -1.7)
10	206.7 ( -0.5)	187.6 ( -0.6)	19.0 ( 0.5)
11	199.3 ( -3.7)	181.3 ( -3.9)	18.0 ( -1.1)
12	205.8 ( 2.7)	188.1 ( 3.4)	17.6 ( -4.9)
2004. 1	182.5 ( -8.8)	166.4 ( -8.8)	16.1 ( -8.5)
2	191.7 ( 2.4)	175.2 ( 2.6)	16.5 ( 0.6)
3	204.8 ( 2.0)	188.1 ( 2.8)	16.7 ( -6.7)
4	198.6 ( -2.0)	181.7 ( -1.9)	16.9 ( -3.4)
5	191.9 ( -3.0)	174.3 ( -3.0)	17.6 ( -3.8)
6	204.4 ( 4.2)	187.7 ( 5.2)	16.7 ( -5.6)
7	202.0 ( 0.0)	185.9 ( 0.3)	16.1 ( -4.2)
8	197.3 ( 1.8)	180.9 ( 2.4)	16.3 ( -4.7)
9	184.3 ( -0.9)	167.8 ( -0.5)	16.5 ( -4.6)
10	199.9 ( -3.3)	182.4 ( -2.8)	17.5 ( -7.9)
11	203.4 ( 2.1)	186.8 ( 3.0)	16.6 ( -7.8)
12	205.4 ( -0.2)	189.2 ( 0.6)	16.3 ( -7.4)
2005. 1	197.1 ( 8.0)	180.0 ( 8.2)	17.0 ( 5.6)
2	166.1 ( -13.4)	150.3 ( -14.2)	15.8 ( -4.2)
3	203.1 ( -0.8)	185.3 ( -1.5)	17.8 ( 6.6)
4	195.9 ( -1.4)	178.0 ( -2.0)	17.9 ( 5.9)

주: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7〉 월평균 근로시간의 내역별 추이(제조업, 노동부 조사)

(단위: 시간/월)

	전 체	정 상	초 과
1999	216.0 ( - )	182.7 ( - )	33.3 ( - )
2000	213.1 ( -1.3)	179.8 ( -1.6)	33.3 ( 0.0)
2001	208.7 ( -2.1)	178.9 ( -0.5)	29.8 ( -10.5)
2002	206.4 ( -1.1)	177.7 ( -0.7)	28.7 ( -3.7)
2003	205.9 ( -0.2)	177.9 ( 0.1)	28.0 ( -2.4)
2004	205.0 ( -0.4)	177.3 ( -0.3)	27.7 ( -1.1)
2003. 1	207.3 ( -2.0)	179.3 ( -3.1)	28.0 ( 6.1)
2	194.0 ( 9.4)	168.0 ( 10.1)	26.0 ( 5.3)
3	209.5 ( 0.4)	180.6 ( 1.2)	28.8 ( -4.3)
4	211.8 ( 0.0)	183.8 ( 1.2)	28.1 ( -6.3)
5	206.5 ( -5.1)	177.2 ( -5.7)	29.3 ( -1.0)
6	204.9 ( 1.6)	177.1 ( 2.5)	27.7 ( -3.8)
7	207.0 ( -1.3)	180.8 ( 0.2)	26.2 ( -10.6)
8	197.8 ( -3.0)	170.8 ( -2.3)	27.0 ( -6.9)
9	193.5 ( -0.9)	166.2 ( -0.7)	27.3 ( -1.8)
10	215.7 ( 0.4)	184.9 ( 0.2)	30.8 ( 1.7)
11	208.9 ( -3.2)	180.0 ( -3.5)	28.9 ( -0.7)
12	214.0 ( 2.6)	186.3 ( 3.8)	27.7 ( -4.8)
2004. 1	189.4 ( -8.6)	163.6 ( -8.8)	25.9 ( -7.5)
2	199.5 ( 2.8)	172.9 ( 2.9)	26.6 ( 2.3)
3	213.4 ( 1.9)	185.2 ( 2.5)	28.3 ( -1.7)
4	207.5 ( -2.0)	178.8 ( -2.7)	28.8 ( 2.5)
5	201.9 ( -2.2)	172.0 ( -2.9)	29.9 ( 2.0)
6	212.1 ( 3.5)	184.3 ( 4.1)	27.8 ( 0.4)
7	209.5 ( 1.2)	182.7 ( 1.1)	26.8 ( 2.3)
8	200.2 ( 1.2)	173.0 ( 1.3)	27.2 ( 0.7)
9	193.1 ( -0.2)	165.4 ( -0.5)	27.6 ( 1.1)
10	208.4 ( -3.4)	178.8 ( -3.3)	29.7 ( -3.6)
11	212.3 ( 1.6)	184.5 ( 2.5)	27.8 ( -3.8)
12	213.0 ( -0.5)	186.3 ( 0.0)	26.7 ( -3.6)
2005. 1	205.6 ( 8.6)	177.4 ( 8.4)	28.2 ( 8.9)
2	171.4 ( -14.1)	145.8 ( -15.7)	25.7 ( -3.4)
3	211.1 ( -1.1)	181.6 ( -1.9)	29.5 ( 4.2)
4	206.5 ( -0.5)	176.4 ( -1.3)	30.1 ( 4.5)

주: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8〉 산업별 취업자 주평균 근로시간 추이(통계청 조사)

(단위: 시간/주)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1999	50.4 ( - )	50.6 ( - )	47.5 ( - )	52.2 ( - )
2000	50.6 ( 0.4 )	51.0 ( 0.8 )	48.3 ( 1.7 )	52.0 ( -0.4 )
2001	50.4 ( -0.4 )	50.6 ( -0.8 )	48.7 ( 0.8 )	51.7 ( -0.6 )
2002	49.8 ( -1.2 )	50.0 ( -1.2 )	48.2 ( -1.0 )	51.2 ( -1.0 )
2003	49.1 ( -1.4 )	49.6 ( -0.8 )	47.2 ( -2.1 )	50.3 ( -1.8 )
2004	48.7 ( -0.8 )	49.6 ( 0.0 )	45.7 ( -3.2 )	49.8 ( -1.0 )
2003. 1	48.8 ( -0.4 )	50.7 ( 0.4 )	47.1 ( 2.0 )	50.5 ( -0.6 )
2	49.1 ( -1.3 )	50.6 ( -0.1 )	47.1 ( 0.8 )	50.9 ( -1.6 )
3	49.6 ( -1.9 )	50.8 ( -0.9 )	47.7 ( -3.0 )	51.3 ( -1.9 )
4	50.1 ( -1.7 )	50.6 ( -1.3 )	48.0 ( -4.2 )	51.4 ( -1.8 )
5	50.8 ( -0.8 )	50.6 ( -1.1 )	49.5 ( 0.4 )	51.4 ( -1.7 )
6	50.6 ( 0.8 )	50.2 ( 2.7 )	48.8 ( -0.9 )	51.4 ( 0.6 )
7	47.4 ( -2.2 )	46.6 ( -2.2 )	43.9 ( -5.5 )	48.8 ( -1.8 )
8	45.2 ( -2.6 )	44.8 ( -3.8 )	43.9 ( -0.5 )	45.8 ( -3.7 )
9	49.3 ( -2.2 )	49.4 ( -2.1 )	47.0 ( -5.1 )	50.3 ( -2.4 )
10	50.1 ( -1.6 )	50.2 ( -1.4 )	49.1 ( -1.2 )	50.8 ( -1.9 )
11	49.4 ( -1.4 )	50.0 ( -1.4 )	47.5 ( -3.8 )	50.8 ( -1.6 )
12	49.0 ( -1.0 )	50.1 ( 0.0 )	46.8 ( -2.9 )	50.7 ( -1.7 )
2004. 1	48.2 ( -1.2 )	50.2 ( -1.0 )	45.5 ( -3.4 )	49.8 ( -1.4 )
2	48.5 ( -1.2 )	49.9 ( -1.4 )	45.5 ( -3.4 )	50.0 ( -1.8 )
3	49.4 ( -0.4 )	50.2 ( -1.2 )	46.4 ( -2.7 )	50.9 ( -0.8 )
4	47.8 ( -4.6 )	47.5 ( -6.1 )	45.9 ( -4.4 )	48.8 ( -5.1 )
5	49.6 ( -2.4 )	49.9 ( -1.4 )	46.4 ( -6.3 )	50.4 ( -1.9 )
6	49.6 ( -2.0 )	49.9 ( -0.6 )	46.2 ( -5.3 )	50.4 ( -1.9 )
7	47.3 ( -0.2 )	47.6 ( 2.1 )	42.1 ( -4.1 )	48.8 ( 0.0 )
8	47.7 ( 5.5 )	49.3 ( 10.0 )	44.2 ( 0.7 )	48.5 ( 5.9 )
9	49.1 ( -0.4 )	50.7 ( 2.6 )	45.6 ( -3.0 )	49.9 ( -0.8 )
10	49.6 ( -1.0 )	50.4 ( 0.4 )	47.2 ( -3.9 )	50.1 ( -1.4 )
11	48.9 ( -1.0 )	49.9 ( -0.2 )	46.8 ( -1.5 )	50.0 ( -1.6 )
12	48.5 ( -1.0 )	49.7 ( -0.8 )	45.8 ( -2.1 )	50.0 ( -1.4 )
2005. 1	47.0 ( -2.5 )	49.1 ( -2.2 )	42.9 ( -5.7 )	48.6 ( -2.4 )
2	47.3 ( -2.5 )	49.5 ( -0.8 )	41.7 ( -8.4 )	49.1 ( -1.8 )
3	48.3 ( -2.2 )	50.0 ( -0.4 )	44.3 ( -4.5 )	49.8 ( -2.2 )
4	49.1 ( 2.7 )	50.2 ( 5.7 )	46.8 ( 2.0 )	50.0 ( 2.5 )
5	49.6 ( 0.0 )	50.1 ( 0.4 )	47.3 ( 1.9 )	50.0 ( -0.8 )

주: 1)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에 대한 평균임.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서비스업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4-1〉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추이

	노동조합수	총연합단체	산별연맹 (노 조)	지 부 분 회		노 동 조합원수
				(단위노조)		
1963	2,150	1	16	313	1,820	224,420
1964	2,463	1	16	341	2,105	271,579
1965	2,634	1	16	362	2,255	301,523
1966	2,735	1	16	359	2,359	336,974
1967	3,022	1	16	386	2,619	377,576
1968	3,134	1	16	385	2,732	412,906
1969	3,373	1	16	417	2,939	444,783
1970	3,500	1	17	419	3,063	473,259
1971	3,525	1	17	446	3,061	497,221
1972	3,409	1	17	430	2,961	515,292
1973	3,286	1	17	403	2,865	548,054
1974	3,802	1	17	432	3,352	655,785
1975	4,091	1	17	488	3,585	750,235
1976	4,389	1	17	517	3,854	845,630
1977	4,598	1	17	538	4,042	954,727
1978	4,875	1	17	552	4,305	1,054,608
1979	4,965	1	17	553	4,394	1,088,061
1980	2,635	1	16	2,618		948,134
1981	2,158	1	16	2,141		966,738
1982	2,208	1	16	2,191		984,136
1983	2,255	1	16	2,238		1,009,881
1984	2,382	1	16	2,365		1,010,522
1985	2,551	1	16	2,534		1,004,398
1986	2,675	1	16	2,658		1,035,890
1987. 6. 30	2,742	1	16	2,725		1,050,201
1987. 12. 31	4,103	1	16	4,086		1,267,457
1988	6,164	1	21	6,142		1,707,456
1989	7,883	1	21	7,861		1,932,415
1990	7,698	1	21	7,676		1,886,884
1991	7,656	1	21	7,634		1,803,408
1992	7,527	1	21	7,505		1,734,598
1993	7,147	1	26	7,120		1,667,373
1994	7,025	1	26	6,998		1,659,011
1995	6,606	1	26	6,579		1,614,800
1996	6,424	1	26	6,397		1,598,558
1997	5,733	1	40	5,692		1,484,194
1998	5,560	1	42	5,517		1,401,940
1999	5,637	2	43	5,592		1,480,666
2000	5,698	2	44	5,652		1,526,995
2001	6,150	2	43	6,103		1,568,723
2002	6,506	2	41	6,463		1,538,499
2003	6,257	2	43	6,112		1,549,949

주: 1) 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동조합수는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단위노동조합, 지부, 분회 및 연합단체를 모두 합한 수치임. 따라서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법외노동단체는 통계에서 제외되었음.

2) 1980년 12월 31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종전의 지부 및 분회가 기업별 단위노조로 통폐합되었음.

자료: 노동부.

〈표 4-2〉 산별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현황(2003년 12월말 현재)

(단위: 개소, 명)

연맹별	조합수	조합원수			
		전체	남자	여자	
총계	6,257	1,549,949	1,223,330	326,619	
소계	3,951	831,660	664,981	166,679	
한국 노동 총 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직할노조)	63	3,891	2,935	956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175	34,457	15,938	18,519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23	5,576	5,283	293
	전국전력노동조합	3	14,421	12,640	1,781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43	20,016	14,587	5,429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58	14,521	12,330	2,191
	전국항공노동조합연맹	59	29,539	28,242	1,297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64	27,833	27,670	16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1	84,083	58,285	25,798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	4	6,469	5,556	913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664	87,585	68,185	19,400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653	113,538	88,919	24,619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638	77,599	60,642	16,957
	전국출판노동조합연맹	60	3,448	2,504	944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556	80,797	79,425	1,372
	전국관광노동조합연맹	155	16,680	10,181	6,499
	전국체신노동조합	3	22,535	16,984	5,551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503	95,958	94,939	1,019
	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	16	8,159	6,965	1,194
	전국철도산업노동조합연맹	4	2,170	1,494	676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	39	16,657	11,226	5,431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40	1,054	975	79	
전국공공건설노동조합연맹	18	7,087	5,691	1,396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	22	16,016	14,502	1,514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11	4,527	1,257	3,270	
전국에너지노동조합연맹	23	2,568	1,720	848	
한국교원노동조합	1	25,060	9,960	15,100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52	9,416	5,946	3,470	
소계	1,332	673,880	523,419	150,461	
민 주 노 총 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직할노조)	131	11,122	7,017	4,105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214	69,393	46,808	22,585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56	19,491	18,261	1,230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16	42,522	12,616	29,906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217	136,868	119,243	17,625
	전국민주화학생유노동조합연맹	188	30,883	27,222	3,661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연맹	13	4,150	3,813	337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연맹	30	1,291	1,146	145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72	26,493	26,359	134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172	175,730	167,605	8,12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95,000	45,600	49,400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20	2,894	253	2,641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106	33,469	32,063	1,406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86	12,243	6,194	6,049
	전국대학노동조합	8	9,848	6,736	3,112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1	1,633	1,633	0
	한국비정규노동조합	1	850	850	0
상급단체 미가입	974	44,409	34,930	9,479	

주: 1) 조합수에는 지부·분회가 포함되어 있으며, 직할노조는 산업별 연맹에는 가입하지 아니하고 노총·민노총 지역본부에만 직접 가입한 노조임.

2) 비가맹노조란 산별연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단위노조를 지칭함.

자료: 노동부.

〈표 4-3〉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단위: %)

	조 직 률(A)			조 직 률(B)			조 직 률(C)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1970	20.0	20.1	19.7	12.6	13.1	11.5	-
1971	19.7	20.0	18.7	12.7	12.9	11.9	-
1972	20.4	20.5	20.1	12.9	12.9	12.9	-
1973	20.4	20.4	20.5	13.2	13.0	13.6	-
1974	22.1	21.4	23.9	14.8	14.2	16.2	-
1975	23.0	21.4	27.4	15.8	14.5	19.3	-
1976	23.3	21.7	27.1	16.5	15.2	19.5	-
1977	24.3	22.7	28.5	16.7	15.6	19.5	-
1978	24.0	22.8	26.8	16.9	15.9	21.2	-
1979	23.6	22.8	25.4	16.8	16.2	18.1	-
1980	20.1	18.5	23.6	14.7	13.6	17.0	-
1981	19.6	18.5	21.8	14.6	13.9	16.3	-
1982	19.1	18.6	20.1	14.4	13.8	15.7	-
1983	18.1	17.8	18.5	14.1	14.2	13.9	-
1984	16.8	16.6	17.2	13.2	13.5	12.8	-
1985	15.7	15.9	15.2	12.4	13.1	11.1	16.9
1986	15.5	16.2	14.2	12.3	13.2	10.5	16.8
1987. 6. 30	14.7	15.6	12.9	11.7	13.0	9.5	15.7
1987. 12. 31	17.3	18.5	15.0	13.8	15.3	11.1	18.5
1988	22.0	23.9	18.1	17.8	20.1	13.7	19.5
1989	23.3	25.8	18.5	18.6	21.8	13.4	19.8
1990	21.5	24.4	16.3	17.2	20.5	12.0	18.4
1991	19.1	21.9	13.8	15.4	18.5	10.4	17.2
1992	17.8	21.1	11.8	14.6	17.9	9.1	16.4
1993	16.9	20.2	11.0	14.0	17.2	8.7	15.6
1994	16.1	19.6	9.9	13.3	16.6	7.9	14.5
1995	15.1	18.5	9.2	12.5	15.7	7.3	13.8
1996	14.5	18.2	8.3	12.1	15.5	6.6	13.3
1997	13.3	17.3	6.9	11.1	14.7	5.5	12.2
1998	13.7	17.6	6.8	11.4	15.2	5.3	12.6
1999	14.7	18.4	8.3	11.7	15.4	6.1	11.9
2000	14.3	18.3	7.6	11.4	15.3	5.7	12.0
2001	14.2	18.5	7.1	11.5	15.7	5.4	12.0
2002	13.5	17.9	6.7	10.8	14.9	5.1	11.0
2003	13.0	17.1	6.8	10.8	14.5	5.5	11.0

주 : 조직률 A=조합원수÷비농가상시고×100

조직률 B=조합원수÷임금근로자×100

조직률 C=1987년 이전은 조합원수÷(상시고-공무원-사립학교 교원)×100

1988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 교원)×100

1999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철도, 체신 등 기능직 공무원과 국공립교원은 제외)×100

조직률 C는 노동부 집계방식.

1991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의 시계열 조정에 따라 수치를 보정함.

자료: 노동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4-4〉 주요 노사분규 지표

	발생건수(건수)	분규참가자수(명)	노동손실일수(일)
1991	234	175,089	3,271,334
1992	235	105,034	1,527,612
1993	144	108,577	1,308,326
1994	121	104,339	1,484,368
1995	88	49,717	392,581
1996	85	79,495	892,987
1997	78	43,991	444,720
1998	129	146,065	1,452,096
1999	198	92,026	1,366,281
2000	250	177,969	1,893,563
2001	235	88,548	1,083,079
2002	322	93,859	1,580,404
2003	320	137,241	1,298,663
2004	462	184,969	1,197,201
2002. 6	207	65,334	764,817
7	234	80,245	1,110,896
8	250	82,841	1,262,183
9	264	86,089	1,380,973
10	279	89,837	1,462,300
11	292	91,664	1,537,918
12	322	93,859	1,580,404
2003. 1	11	1,324	18,445
2	17	2,382	28,041
3	25	5,214	67,195
4	56	9,211	91,460
5	81	13,954	116,564
6	118	58,478	245,832
7	256	123,144	806,964
8	276	124,205	1,084,443
9	290	126,992	1,148,515
10	302	131,363	1,215,811
11	308	131,775	1,270,270
12	320	137,241	1,298,663
2004. 1	7	20,023	32,902
2	10	20,083	54,455
3	18	21,082	67,267
4	27	28,708	88,288
5	75	35,475	138,423
6	337	136,632	408,628
7	402	151,703	876,228
8	413	168,602	1,010,149
9	433	180,940	1,065,694
10	444	182,252	1,114,833
11	453	183,263	1,160,000
12	462	184,969	1,197,201
2005. 1	9	830	15,578
2	13	1,630	34,390
3	23	11,821	66,468
4	31	12,415	107,130
5	41	13,052	126,466
6	73	16,084	161,240

주: 모든 수치는 당해 연도의 누적치이며, 분규참가자수는 분규발생업체의 발생당시 분규참가 인원수임.  
 자료: 노동부.

〈표 4-5〉 원인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건)

	전 체	체불임금	임금인상	해 고	단체협약	기 타
1995	88(100.0)	-( 0.0)	33(37.5)	1(1.1)	49(55.7)	5( 5.7)
1996	85(100.0)	1( 1.2)	19(22.4)	-(0.0)	62(72.9)	3( 3.5)
1997	78(100.0)	3( 3.8)	18(23.1)	-(0.0)	51(65.4)	6( 7.7)
1998	129(100.0)	23(17.8)	28(21.7)	3(2.3)	57(44.2)	10( 7.8)
1999	198(100.0)	22(11.1)	40(20.2)	-(0.0)	89(44.9)	47(23.7)
2000	250(100.0)	7( 2.8)	47(18.8)	2(0.8)	167(66.8)	27(10.8)
2001	235(100.0)	6( 2.6)	59(25.1)	-(0.0)	149(63.4)	21( 8.9)
2002	322(100.0)	2( 0.6)	44(13.7)	8(2.5)	249(77.3)	19( 5.9)
2003	320(100.0)	5( 1.6)	43(13.4)	-(0.0)	249(77.8)	23( 7.2)
2004	462(100.0)	3( 0.6)	56(12.1)	-(0.0)	386(83.5)	17( 3.7)

주: ( )안은 구성비임.  
자료: 노동부.

〈표 4-6〉 사업체규모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건, %)

	전 체	100인 미만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1995	88(100.0)	21(23.9)	27(30.7)	28(31.8)	12(13.6)
1996	85(100.0)	13(15.3)	25(29.4)	23(27.1)	24(28.2)
1997	78(100.0)	19(24.4)	26(33.3)	19(24.4)	14(17.9)
1998	129(100.0)	27(20.9)	35(27.1)	34(26.4)	33(25.6)
1999	198(100.0)	44(22.2)	55(27.8)	38(19.2)	61(30.8)
2000	250(100.0)	72(28.8)	58(23.2)	65(26.0)	55(22.0)
2001	235(100.0)	83(35.3)	66(28.1)	52(22.1)	34(14.5)
2002	322(100.0)	105(32.6)	110(34.2)	64(19.9)	43(13.4)
2003	320(100.0)	94(29.4)	124(38.8)	61(19.1)	41(12.8)
2004	462(100.0)	187(40.5)	150(32.5)	69(14.9)	56(12.1)

주: ( )안은 구성비임.  
자료: 노동부.

〈표 4-7〉 산업대분류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건, %)

	전 산업	제조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기타 산업
1995	88(100.0)	57(64.8)	8( 9.1)	9(10.2)	5( 5.7)	9(10.2)
1996	85(100.0)	56(65.9)	8( 9.4)	5( 5.9)	9(10.6)	7( 8.2)
1997	78(100.0)	42(53.8)	14(17.9)	4( 5.1)	11(14.1)	7( 9.0)
1998	129(100.0)	72(55.8)	37(28.7)	8( 6.2)	9( 7.0)	3( 2.3)
1999	198(100.0)	116(58.6)	26(13.1)	21(10.6)	22(11.1)	13( 6.6)
2000	250(100.0)	121(48.4)	25(10.0)	28(11.2)	54(21.6)	22( 8.8)
2001	235(100.0)	117(49.8)	38(16.2)	17( 7.2)	43(18.3)	20( 8.5)
2002	322(100.0)	136(42.2)	72(22.4)	23( 7.1)	81(25.2)	10( 3.1)
2003	320(100.0)	167(52.2)	66(20.6)	29( 9.1)	41(12.8)	17( 5.3)
2004	462(100.0)	140(30.3)	165(35.7)	32(6.9)	99(21.4)	26( 5.6)

주: ( )안은 구성비임.  
자료: 노동부.

〈표 4-8〉 해결유형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건, %)

	전 체	노사 직접교섭	노동위원회			노조 자체종결	기 타	미해결
			알선	조정	중재			
1995	88(100.0)	76(86.4)	-(0.0)	-(0.0)	2(2.3)	7( 8.0)	1(1.1)	2(2.3)
1996	85(100.0)	79(92.9)	-(0.0)	-(0.0)	2(2.4)	2( 2.4)	-(0.0)	2(2.4)
1997	78(100.0)	55(70.5)	-(0.0)	-(0.0)	-(0.0)	20(25.6)	2(2.6)	1(1.3)
1998	129(100.0)	81(62.8)	-(0.0)	-(0.0)	-(0.0)	37(28.7)	3(2.3)	8(6.2)
1999	198(100.0)	147(74.2)	-(0.0)	-(0.0)	-(0.0)	46(23.2)	1(0.5)	4(2.0)
2000	250(100.0)	189(75.6)	-(0.0)	-(0.0)	1(0.4)	37(14.8)	8(3.2)	15(6.0)
2001	235(100.0)	154(65.5)	-(0.0)	-(0.0)	-(0.0)	57(24.3)	12(5.1)	11(4.7)
2002	322(100.0)	235(73.0)	-(0.0)	-(0.0)	-(0.0)	66(20.5)	11(3.4)	10(3.1)
2003	320(100.0)	200(62.5)	-(0.0)	-(0.0)	1(0.3)	93(29.1)	9(2.8)	17(5.3)
2004	462(100.0)	394(85.3)	-(0.0)	-(0.0)	3(0.6)	46(10.0)	4(0.9)	15(3.2)

주: ( )안은 구성비임.  
미해결은 연도말 현재 분류지속 중인 사업장임.  
자료: 노동부.

〈표 4-9〉 주요 임금교섭 동향

(단위 : 개소,%)

	대상업체수	타결업체수	진도율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통상임금 기준
				임금총액 기준(2002년부터)	
1997	5,754	5,281	91.8	4.3	4.2
1998	5,476	5,156	94.2	-2.7	0.0
1999	5,097	4,744	93.1	2.1	2.1
2000	5,116	4,798	93.8	7.6	7.2
2001	5,218	4,857	93.1	6.0	6.0
2002	5,401	4,991	92.4	6.7	-
2003	5,751	5,292	92.0	6.4	-
2004	5,909	5,514	93.3	5.2	-
2002. 1	5,401	74	1.4	7.4	-
2	5,401	154	2.9	7.0	-
3	5,401	420	7.8	5.5	-
4	5,401	630	11.7	6.1	-
5	5,401	1,435	26.6	6.6	-
6	5,401	2,103	38.9	6.7	-
7	5,401	2,887	53.5	6.9	-
8	5,401	3,517	65.1	6.9	-
9	5,401	4,161	77.0	6.9	-
10	5,401	4,377	81.0	6.9	-
11	5,401	4,655	86.2	6.8	-
12	5,401	4,991	92.4	6.7	-
2003. 1	5,751	107	1.9	5.0	-
2	5,751	214	3.7	5.9	-
3	5,751	413	7.2	6.0	-
4	5,751	718	12.5	6.5	-
5	5,751	1,306	22.7	6.7	-
6	5,751	1,856	32.3	6.7	-
7	5,751	2,491	43.3	6.7	-
8	5,751	3,372	58.6	6.6	-
9	5,751	4,503	78.3	6.5	-
10	5,751	4,700	81.7	6.5	-
11	5,751	4,958	86.2	6.5	-
12	5,751	5,292	92.0	6.4	-
2004. 1	5,909	12	0.2	4.4	-
2	5,909	152	2.6	4.7	-
3	5,909	445	7.5	5.1	-
4	5,909	706	11.9	5.3	-
5	5,909	1,117	18.9	5.1	-
6	5,909	1,770	30.0	5.4	-
7	5,909	2,380	40.3	5.5	-
8	5,909	2,901	49.1	5.5	-
9	5,909	3,482	58.9	5.5	-
10	5,909	4,061	68.7	5.5	-
11	5,909	4,587	77.6	5.5	-
12	5,909	5,514	93.3	5.2	-
2005. 1	6,228	13	0.2	2.3	-
2	6,228	107	1.7	4.4	-
3	6,228	344	5.5	4.0	-
4	6,228	554	8.9	4.6	-
5	6,228	1,105	17.7	4.8	-
6	6,228	1,635	26.3	4.7	-

자료 : 노동부.

〈표 4-10〉 산업재해 발생추이

(단위: 개소, 명, 건수, %)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건수	도수율	강도율	천인율
1965	289	161,150	9,470	-	-	-	-
1966	594	222,456	13,096	-	-	-	-
1967	1,142	336,159	18,207	-	-	-	-
1968	2,389	488,628	22,959	-	-	-	-
1969	3,696	683,377	31,705	-	-	-	-
1970	5,583	779,053	37,752	35,389	15.50	3.20	48.46
1971	7,799	833,441	44,545	43,090	15.44	3.73	53.45
1972	9,375	987,856	46,603	45,673	15.87	3.67	47.18
1973	13,924	1,166,650	59,367	58,485	15.12	2.84	50.89
1974	17,551	1,353,167	70,142	68,864	15.11	2.30	51.84
1975	21,369	1,836,209	81,641	79,819	16.76	3.29	44.46
1976	28,445	2,269,796	97,716	94,847	16.16	2.46	43.05
1977	38,829	2,646,506	118,011	117,077	16.21	2.72	44.60
1978	49,957	3,105,757	139,242	138,182	16.63	2.74	44.83
1979	55,763	3,607,595	130,307	128,457	13.52	2.89	36.12
1980	63,100	3,752,975	113,375	112,111	11.12	2.58	30.21
1981	59,029	3,456,746	117,938	116,698	12.38	2.72	34.12
1982	54,159	3,464,977	137,816	136,952	14.49	2.80	39.77
1983	60,213	3,941,152	156,972	156,116	14.00	2.66	35.99
1984	64,704	4,384,589	157,800	156,479	13.09	2.58	39.83
1985	66,803	4,495,185	141,809	140,218	11.57	2.68	31.55
1986	70,865	4,749,342	142,088	140,404	10.89	2.79	29.92
1987	83,536	5,356,546	142,596	141,495	9.77	2.90	26.62
1988	101,445	5,743,970	142,329	141,517	9.26	2.52	24.78
1989	118,894	6,687,821	134,127	128,138	7.47	2.19	20.06
1990	129,687	7,542,752	132,893	126,966	6.70	2.30	17.62
1991	146,284	7,922,704	128,169	125,755	6.35	2.34	16.18
1992	154,820	7,058,704	107,435	105,330	6.02	2.89	15.22
1993	163,152	6,942,527	90,288	88,817	5.18	2.73	13.01
1994	172,872	7,273,132	85,948	84,480	4.69	2.93	11.82
1995	186,021	7,893,727	78,034	76,388	3.90	2.82	9.89
1996	210,226	8,156,894	71,548	70,188	3.49	2.19	8.77
1997	227,564	8,236,641	66,770	65,732	3.28	2.32	8.11
1998	215,539	7,582,479	51,514	50,561	2.79	2.29	6.79
1999	249,405	7,441,160	55,405	54,534	2.92	2.11	7.45
2000	706,231	9,485,557	68,976	67,930	2.89	1.88	7.27
2001	909,461	10,581,186	81,434	80,433	3.13	2.12	7.70
2002	1,002,263	10,571,279	81,911	80,755	3.19	2.13	7.75
2003	1,006,549	10,599,345	94,924	92,697	3.68	2.35	8.96
2004	1,039,208	10,473,090	88,874	-	-	-	8.49

주: 1) 도수율 =  $\frac{\text{재해건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2) 강도율 =  $\frac{\text{총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

3) 천인율 =  $\frac{\text{재해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0$

4) 2004년의 수치는 노동부 1차집계 자료로서 재해건수, 도수율 및 강도율은 2005년 9월경에 발표될 예정임.  
 자료: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표 4-11〉 산업별 천인을 산업재해 발생추이

	전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1972	47.18	144.96	34.74	50.60	14.11	59.89
1973	50.89	115.99	41.55	48.27	12.53	69.90
1974	51.84	126.84	43.92	45.49	12.03	70.66
1975	44.46	134.09	41.76	38.45	21.25	59.94
1976	43.05	110.29	41.01	42.75	8.55	57.94
1977	44.60	102.31	44.50	34.98	11.32	72.56
1978	44.83	94.37	47.00	37.17	18.62	58.59
1979	36.12	96.55	36.70	31.38	14.58	45.61
1980	30.21	109.92	29.60	24.18	13.82	45.23
1981	34.12	129.23	31.99	33.72	17.72	43.31
1982	39.77	119.60	36.56	53.51	15.59	42.44
1983	39.83	113.40	38.93	47.47	17.57	36.14
1984	35.99	104.49	35.88	37.92	9.79	36.83
1985	31.55	119.77	31.51	31.41	7.52	31.60
1986	29.92	118.97	30.31	28.09	8.73	30.37
1987	26.62	111.21	27.80	22.74	7.75	28.56
1988	24.78	108.77	26.71	20.64	6.38	23.93
1989	20.06	113.99	23.26	14.18	6.05	22.42
1990	17.62	115.53	18.67	15.38	4.88	19.76
1991	16.18	113.18	16.86	16.10	4.01	18.74
1992	15.22	89.91	14.76	18.97	3.84	17.07
1993	13.01	89.82	13.48	14.38	2.84	15.45
1994	11.82	66.71	12.98	12.27	2.46	14.60
1995	9.89	53.53	11.81	10.06	2.83	12.53
1996	8.77	48.57	11.28	8.06	2.29	12.75
1997	8.11	51.69	10.17	7.19	2.52	12.07
1998	6.79	47.63	8.99	7.33	2.53	7.94
1999	7.45	60.40	11.38	6.05	2.59	7.87
2000	7.27	45.11	12.13	6.06	2.67	8.70
2001	7.70	73.52	12.15	6.88	2.57	8.76
2002	7.75	73.16	12.22	7.19	2.88	7.44
2003	8.96	104.53	14.16	8.61	2.82	8.72
2004	8.49	141.87	12.83	9.40	2.55	7.79

주 : 2004년의 수치는 노동부 1차 집계 자료임.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표 5-1〉 산업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수

(단위: 개소, 명)

	전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1996	43,723	4,330,885	248	12,564	194	18,417	17,976	2,158,958	175	52,811
1997	47,427	4,280,430	241	11,423	185	15,990	18,305	2,057,249	180	53,493
1998	400,000	5,267,658	1,108	16,579	784	17,670	97,044	2,224,705	575	53,625
1999	601,394	6,054,479	1,466	18,003	908	17,856	137,659	2,470,361	768	55,170
2000	693,414	6,747,263	1,799	19,705	1,002	17,985	159,200	2,648,856	841	55,440
2001	806,962	6,908,888	2,234	20,567	1,041	16,703	174,510	2,616,162	857	56,545
2002	825,531	7,171,277	2,452	19,667	1,060	16,148	177,064	2,647,553	871	57,148
2003	845,910	7,203,347	2,706	20,391	1,113	16,364	179,713	2,642,385	891	58,697
2004	1,002,638	7,576,856	5,292	26,949	1,281	16,250	195,337	2,733,536	1,333	60,975
2002. 9	803,596	7,085,202	2,394	19,524	1,035	16,208	174,364	2,629,125	871	57,768
10	810,158	7,102,108	2,412	19,716	1,043	16,218	175,358	2,627,182	868	57,318
11	817,460	7,141,024	2,425	19,859	1,055	16,145	176,368	2,635,128	868	57,286
12	825,531	7,171,277	2,452	19,667	1,060	16,148	177,064	2,647,553	870	57,148
2003. 1	824,212	7,158,507	2,450	19,066	1,059	16,107	177,379	2,648,260	882	57,167
2	818,388	7,159,428	2,453	19,369	1,066	16,112	177,055	2,646,988	882	57,493
3	815,022	7,181,595	2,486	19,961	1,067	16,147	177,371	2,646,460	870	57,657
4	809,520	7,215,625	2,511	20,344	1,077	16,179	176,283	2,649,987	876	57,808
5	810,752	7,222,142	2,536	20,618	1,089	16,236	176,145	2,646,065	881	57,824
6	814,244	7,185,525	2,531	20,331	1,078	16,215	176,274	2,633,018	877	57,956
7	813,811	7,160,796	2,562	20,301	1,086	16,341	176,006	2,628,942	871	58,050
8	818,455	7,156,950	2,590	20,429	1,087	16,357	176,355	2,625,852	871	58,406
9	820,612	7,151,033	2,615	20,370	1,093	16,368	176,685	2,621,955	877	58,525
10	832,490	7,158,207	2,648	20,391	1,104	16,315	178,322	2,625,256	890	58,418
11	839,192	7,180,015	2,695	20,564	1,115	16,325	179,198	2,634,020	888	58,505
12	845,910	7,203,347	2,706	20,391	1,113	16,364	179,713	2,642,385	891	58,697
2004. 1	846,735	7,217,414	2,776	20,607	1,134	16,538	179,756	2,646,821	884	58,597
2	848,709	7,293,529	2,909	22,499	1,137	16,669	179,962	2,655,668	896	59,021
3	859,230	7,357,988	3,296	23,670	1,137	16,667	179,776	2,667,087	1,020	59,295
4	870,872	7,418,084	3,656	24,663	1,140	16,712	178,978	2,681,971	1,187	59,421
5	889,094	7,460,088	3,881	24,181	1,144	16,671	178,097	2,688,085	1,345	59,595
6	908,689	7,486,494	4,205	24,796	1,139	16,793	178,358	2,694,667	1,389	59,844
7	922,954	7,489,061	4,562	25,199	1,148	16,773	178,623	2,697,323	1,411	60,310
8	936,690	7,492,299	4,803	25,963	1,148	16,697	179,398	2,700,007	1,427	60,693
9	962,217	7,508,316	5,265	26,421	1,205	16,738	183,967	2,709,152	1,419	61,035
10	1,010,183	7,523,984	5,669	26,963	1,230	16,730	189,583	2,713,010	1,498	61,205
11	1,039,943	7,550,835	6,105	27,646	1,248	16,387	192,188	2,723,940	1,557	60,992
12	1,002,638	7,576,856	5,292	26,949	1,281	16,250	195,337	2,733,536	1,333	60,975
2005. 1	993,772	7,580,688	4,716	26,419	1,278	16,211	196,571	2,740,270	1,217	61,457
2	999,232	7,629,678	4,907	27,345	1,297	16,164	196,552	2,748,254	1,158	61,707
3	1,032,408	7,759,829	5,263	30,172	1,282	16,243	196,277	2,768,242	1,129	62,142
4	1,019,888	7,695,612	5,132	28,499	1,296	16,226	196,783	2,760,506	1,152	61,820
5	1,061,719	7,812,982	5,290	29,118	1,300	16,365	197,104	2,772,440	1,199	62,475

주: 1) 2004년 1월부터 산업분류 바뀜.

2) 고용보험제도 시행초기(1995.7.1)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며, 이후 10인 이상(1998.1.1), 5인 이상(1998.3.1), 1인 이상(1998.10.1)으로 적용확대됨.

3) 기타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월호.

〈표 5-1〉의 계속

(단위: 개소, 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사업장	피보험자									
1996	10,101	235,617	2,368	271,405	591	67,061	3,487	486,924	1,699	394,563	
1997	12,280	233,198	2,635	278,482	625	66,566	3,566	488,499	1,753	394,015	
1998	48,528	364,757	91,968	508,659	30,523	105,923	12,242	529,171	6,971	378,494	
1999	68,282	467,226	150,054	637,669	58,604	150,405	16,789	552,243	7,639	385,299	
2000	85,996	509,958	166,125	724,676	55,348	167,565	21,102	586,293	7,388	389,633	
2001	108,707	529,913	194,997	775,666	70,613	177,902	24,059	578,825	7,619	377,860	
2002	128,295	574,347	195,035	831,718	59,288	175,449	24,726	581,865	8,029	386,099	
2003	138,982	563,120	196,897	827,384	54,044	159,854	25,569	559,901	8,077	386,536	
2004	193,504	576,152	224,123	786,078	61,665	162,020	28,547	569,276	8,756	383,511	
2002.	9	120,969	552,008	190,591	812,940	57,794	176,240	24,172	580,680	7,861	384,215
	10	122,381	559,649	191,876	817,066	58,660	176,736	24,361	581,037	7,948	383,565
	11	125,035	569,346	193,315	824,242	58,821	175,465	24,528	581,593	8,001	285,750
	12	128,295	574,347	195,035	831,718	59,288	175,449	24,726	581,865	8,029	386,099
2003.	1	128,138	571,046	194,621	830,890	58,260	174,788	24,748	582,924	8,020	385,249
	2	124,918	567,163	193,789	832,741	56,808	172,529	24,760	581,358	8,021	386,286
	3	121,370	567,049	193,456	832,734	55,885	171,777	24,796	580,599	8,025	387,546
	4	123,498	572,106	190,691	835,156	53,249	171,212	24,677	580,029	7,970	387,255
	5	124,967	573,190	190,533	836,985	52,274	170,495	24,705	578,092	7,978	386,283
	6	126,799	569,109	191,051	828,318	52,669	164,905	24,783	574,778	8,000	385,453
	7	129,423	562,592	189,830	823,770	51,559	160,340	24,739	571,354	7,939	385,320
	8	132,193	560,176	190,528	823,804	51,274	160,385	24,816	568,319	7,932	385,009
	9	132,589	557,206	190,773	820,840	51,262	159,568	24,923	566,216	7,942	386,555
	10	136,497	557,725	193,344	820,266	52,128	159,551	25,194	559,397	7,987	385,907
	11	138,747	559,543	194,780	823,318	52,510	159,598	25,384	559,685	8,024	385,387
	12	138,982	563,120	196,897	827,384	54,044	159,854	25,569	559,901	8,077	386,536
2004.	1	138,360	564,737	183,954	764,730	54,072	160,173	25,645	561,137	8,085	383,941
	2	139,640	569,625	183,458	772,631	53,298	160,792	25,756	562,399	8,040	384,640
	3	150,884	570,856	182,442	776,878	52,035	161,478	25,751	562,708	7,993	384,702
	4	167,522	572,797	179,736	780,977	50,682	162,413	25,642	564,206	7,902	384,249
	5	185,961	574,166	179,916	783,262	50,681	163,590	25,646	564,959	7,830	384,583
	6	198,800	573,100	181,476	783,513	52,428	164,669	25,744	565,506	7,873	385,059
	7	211,324	573,137	181,477	782,559	52,430	164,161	25,794	565,077	7,860	383,194
	8	222,380	571,849	181,979	778,417	52,369	162,024	25,903	566,405	7,858	384,754
	9	228,433	569,957	187,814	778,582	55,373	161,395	26,652	566,354	8,068	385,083
	10	238,641	569,108	204,457	779,829	59,101	162,190	27,553	566,322	8,456	384,562
	11	250,865	570,039	212,282	781,525	60,973	162,811	27,953	567,319	8,595	383,472
	12	193,504	576,152	224,123	786,078	61,665	162,020	28,547	569,276	8,756	383,511
2005.	1	182,473	560,971	224,591	786,587	61,667	160,179	28,663	573,336	8,737	380,397
	2	186,347	561,523	224,611	793,263	61,638	160,465	28,843	575,800	8,723	382,997
	3	218,572	569,709	222,275	808,105	59,735	163,074	28,886	580,459	8,592	380,219
	4	203,571	565,512	224,309	799,825	61,266	161,181	28,926	578,775	8,690	380,419
	5	238,125	572,798	225,282	817,565	61,844	164,397	29,301	584,202	8,727	380,359

〈표 5-1〉의 계속

(단위: 개소, 명)

	부동산 및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 개인서비스업		기타사업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사업장	피보험자	
1996	4,099	395,955	322	12,387	1,063	122,232	1,277	90,372	114	11,273	
1997	4,697	434,448	325	13,287	1,134	127,369	1,364	94,141	134	12,110	
1998	41,218	617,919	20,290	62,335	31,401	217,833	16,982	149,094	365	20,894	
1999	58,947	751,283	33,344	96,408	37,529	247,929	28,896	182,980	509	21,647	
2000	75,022	905,435	43,832	146,150	40,272	270,642	30,922	209,583	4,565	95,342	
2001	87,848	976,486	48,259	161,251	44,911	299,916	36,325	224,315	4,982	96,777	
2002	94,072	1,030,529	47,201	182,011	47,449	325,781	34,809	239,920	5,175	103,042	
2003	100,317	1,071,172	47,660	192,562	50,533	348,777	33,961	247,716	5,447	108,488	
2004	122,474	1,194,574	46,826	207,095	55,550	387,172	50,563	339,512	7,387	33,756	
2002.	9	91,667	1,015,620	46,037	179,191	46,515	321,944	34,201	237,932	5,125	101,807
	10	92,365	1,018,229	46,476	181,464	46,884	323,077	34,368	238,230	5,140	102,621
	11	93,229	1,026,253	46,925	182,749	47,165	324,878	34,545	239,305	5,157	103,025
	12	94,072	1,030,529	47,201	182,011	47,449	325,781	34,809	239,920	5,175	103,042
2003.	1	94,482	1,031,616	47,089	177,047	47,495	325,735	34,403	238,150	5,186	100,462
	2	94,783	1,035,574	46,912	175,558	47,611	327,938	34,122	238,813	5,208	101,506
	3	95,343	1,038,744	47,183	185,869	47,840	331,788	34,076	241,014	5,254	104,250
	4	95,143	1,048,369	46,909	190,327	48,024	336,544	33,314	244,022	5,297	105,285
	5	95,586	1,054,505	46,975	191,766	48,545	340,308	33,237	244,225	5,301	105,551
	6	95,934	1,054,556	46,841	190,056	48,848	341,538	33,246	243,503	5,313	105,789
	7	95,969	1,054,518	46,561	187,431	49,020	343,147	32,897	243,261	5,349	105,429
	8	96,682	1,056,134	46,542	186,893	49,280	344,391	32,934	244,612	5,371	106,183
	9	97,304	1,057,007	46,673	190,161	49,534	343,872	32,967	244,778	5,373	107,597
	10	98,401	1,063,269	47,206	192,333	50,038	345,220	33,327	245,708	5,404	108,451
	11	99,208	1,067,734	47,431	192,516	50,244	346,802	33,516	247,080	5,431	108,938
	12	100,317	1,071,172	47,660	192,562	50,533	348,777	33,961	247,716	5,447	108,488
2004.	1	100,548	1,078,142	47,168	185,450	51,077	350,890	47,426	316,533	5,850	109,118
	2	101,345	1,106,147	46,984	185,195	51,345	354,563	47,456	323,155	6,483	120,525
	3	102,008	1,124,546	46,741	195,592	51,924	361,016	47,318	328,058	6,888	125,435
	4	101,749	1,142,249	46,370	201,698	52,275	366,940	46,890	331,557	7,143	128,231
	5	101,823	1,156,767	46,087	205,574	52,738	372,018	46,670	334,648	7,275	131,989
	6	103,448	1,168,561	46,098	207,363	53,291	376,448	47,122	336,004	7,318	130,171
	7	104,053	1,174,192	45,899	204,083	53,647	379,544	47,179	335,534	7,547	127,975
	8	104,630	1,174,283	45,889	201,722	53,887	380,660	47,344	336,824	7,675	132,001
	9	106,754	1,173,744	46,560	204,256	54,406	382,734	48,394	337,028	7,907	135,837
	10	114,043	1,178,421	47,048	207,165	54,957	384,278	49,916	336,831	8,031	137,370
	11	116,898	1,185,393	47,206	208,074	55,314	386,079	50,707	328,408	8,052	148,750
	12	122,474	1,194,574	46,826	207,095	55,550	387,172	50,563	339,512	7,387	133,756
2005.	1	123,361	1,201,456	46,665	199,881	55,874	386,127	50,601	338,183	7,358	149,214
	2	123,763	1,209,049	46,647	199,819	56,266	388,828	50,805	342,134	7,675	162,330
	3	124,585	1,229,095	47,058	221,822	59,847	412,023	50,790	351,836	8,117	166,688
	4	124,456	1,219,286	47,299	212,486	58,257	400,752	51,037	347,186	7,714	163,157
	5	126,249	1,242,395	47,032	225,140	60,618	418,898	51,339	356,295	8,309	170,535

〈표 5-2〉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단위: 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 득	상 실
1996	1,519,322	1,395,985
1997	1,345,231	1,392,542
1998	2,963,828	1,975,706
1999	3,330,353	2,499,662
2000	3,695,723	2,981,558
2001	3,435,154	3,234,745
2002	3,692,771	3,404,669
2003	3,449,449	3,394,502
2004	3,764,995	3,364,005
2002.1/4	955,178	873,050
2/4	941,291	848,816
3/4	867,023	844,678
4/4	929,273	838,125
2003.1/4	941,635	925,890
2/4	911,252	900,868
3/4	804,214	832,783
4/4	792,348	734,961
2004.1/4	1,011,402	859,906
2/4	993,762	858,013
3/4	876,309	842,534
2003. 1	294,107	305,396
2	280,359	277,536
3	367,169	342,958
4	341,374	304,880
5	294,602	286,199
6	275,276	309,789
7	305,675	327,997
8	253,373	255,305
9	245,166	249,481
10	287,135	278,796
11	261,507	239,025
12	243,706	217,140
2004. 1	253,211	240,080
2	344,590	272,524
3	413,601	347,302
4	357,811	298,822
5	317,828	272,703
6	318,123	286,488
7	328,403	320,855
8	279,683	272,460
9	268,223	249,219
10	300,352	281,374
11	300,518	269,970
12	282,652	252,208
2005. 1	342,843	335,304
2	279,543	226,848
3	450,474	379,335
4	404,128	335,720
5	380,026	320,779

주: 1) 취득자는 신규, 경력, 기타 취득자의 합.

신규취득자: 학교, 훈련원 등을 졸업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처음으로 신규 채용된 피보험자.

경력취득자: '신규취득자' 이외의 신규채용(경력직).

기타취득자: 일용직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신분이 바뀐 근로자, 새로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월 80시간(주당 18시간) 미만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 등임.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월호.

〈표 5-3〉 고용보험사업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급여사업				
	금액	신청자	인정자	인원	금액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인원	금액	신규수급	인원	금액	
1997	12275	50,991	50,774	199,880	58,873	-	-	-	-	-	
1998	97449	438,465	434,199	588,006	257,670	-	-	-	-	-	
1999	184304	327,929	325,220	1,029,156	418,184	-	-	-	-	-	
2000	113809	260,407	258,727	1,379,987	396,433	-	-	-	-	-	
2001	129233	349,245	347,388	2,154,046	380,222	-	-	-	-	-	
2002	90052	299,215	297,109	2,313,973	457,717	22,711	22,601	3,763	-	3,087	
2003	91573	379,600	375,561	2,228,566	440,114	32,133	33,522	6,816	-	10,576	
2004	-	471,158	467,362	-	-	38,541	41,570	9,304	-	20,803	
2002. 9	6,160	21,890	21,767	160,133	29,979	2,251	2,228	409	926	377	
10	8,464	26,769	26,447	185,047	32,954	2,294	2,266	394	997	415	
11	8,352	26,359	26,027	215,508	32,209	2,222	2,225	424	969	446	
12	5,024	23,262	22,954	574,707	56,869	2,231	2,251	454	1,045	497	
2003. 1	7,861	32,796	32,484	202,576	28,967	2,433	2,469	433	1,072	516	
2	6,731	27,863	27,569	166,251	60,696	2,165	2,219	435	1,038	553	
3	5,970	30,693	30,383	265,354	32,206	2,495	2,574	520	1,199	712	
4	7,375	30,931	30,582	217,954	32,129	2,427	2,478	535	1,225	762	
5	8,223	30,523	29,963	175,974	32,414	2,791	2,876	547	1,237	738	
6	4,874	30,395	30,078	223,774	27,563	3,123	3,256	575	1,384	850	
7	8,339	36,711	36,338	206,442	33,255	3,116	3,270	695	1,629	1,011	
8	9,840	30,800	30,487	210,073	62,869	2,636	2,768	583	1,530	935	
9	7,428	27,874	27,568	201,230	31,234	2,596	2,759	591	1,644	1,039	
10	8,757	35,976	35,686	170,583	27,268	2,702	2,842	642	1,797	1,185	
11	8,736	32,692	32,377	179,328	27,243	2,655	2,822	592	1,648	1,098	
12	7,443	32,346	32,046	261,472	50,584	2,994	3,189	668	1,845	1,178	
2004. 1	6,618	36,737	36,486	144,309	19,674	2,625	2,801	519	1,675	1,053	
2	10,067	40,252	39,917	207,285	26,680	3,189	3,435	591	1,749	1,149	
3	6,469	42,646	42,247	220,649	26,143	3,262	3,458	779	2,016	1,433	
4	7,379	38,857	38,451	182,010	29,511	2,954	3,128	735	1,922	1,499	
5	8,613	36,613	36,297	297,161	36,389	3,392	3,679	782	2,027	1,596	
6	6,999	37,585	37,270	235,509	38,440	3,776	4,006	884	2,283	1,819	
7	7,566	42,864	42,556	165,070	31,700	3,209	3,464	782	2,229	1,660	
8	8,661	37,778	37,487	222,542	32,290	3,133	3,398	736	2,375	1,860	
9	7,690	34,832	34,550	207,158	30,933	2,839	3,088	844	2,463	1,921	
10	8,064	37,304	37,001	164,117	28,879	3,008	3,271	803	2,717	2,152	
11	8,983	40,773	40,488	266,992	37,113	3,431	3,761	870	2,840	2,157	
12	9,898	44,917	44,612	265,917	56,313	3,723	4,081	979	3,143	2,504	
2005. 1	8,461	60,357	60,039	185,749	25,602	3,274	3,572	800	2,948	2,189	
2	9,368	39,879	39,640	210,286	25,068	2,842	3,152	706	2,698	1,960	
3	9,693	56,169	55,908	222,380	27,379	3,744	4,097	946	3,224	2,573	
4	11,866	49,656	49,390	182,292	34,087	3,189	3,514	836	2,907	2,185	
5	17,375	48,825	48,515	265,773	37,601	3,751	4,143	1,013	3,269	2,452	

- 주: 1) 실업급여사업관련 시계열 자료에는 2004년 1월부터 일용직이 포함.
- 2) 2004년 통계 완전히 수집되지 않음.
- 3) 연도별 실적은 매년 말일 기준의 실질지원금액이므로 사업에 따라 12개월간의 월별 지원금액을 합산한 수치와는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출력조건, 기준시점 등의 사유로 인해 타기관 수치와 다를 수 있음.
- 4) 고용안정사업의 시계열을 일치시키기 위해 위의 표에서는 고령자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서 고령자·여성재 고용장려금을 빼서 따로 보고하였음.
- 5) 고용안정사업의 2001년의 경우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 175천원이 포함되어 있음.
- 6) 고용안정사업의 장기구직자고용촉진지원금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명칭 및 지원요건이 변경됨.
- 7) 모성보호급여사업의 금액은 신규수급인원을 포함한 해당기간의 총수급인원에 대한 지급금액임.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월호.